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30-10

ISSN 2288-5315

2014 인권통계

2015. 12. 31.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개 관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7
제1장 인권정책	9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9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10
1. 연도별 현황	10
2. 의견표명	11
3. 의견제출	11
제3절 권고수용 현황	12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16
1. 이주인권	16
2. 여성·성소수자 인권	17
3. 아동 인권	18
4. 장애인 인권	19
5. 북한인권	20
6. 인권교육	21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22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22
2. 정책연구용역	23
제2장 인권상담	24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24
제2절 인권상담	25
1. 인권상담 현황	25
2. 상담신청인 현황	27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28
□ 유형별 상담 현황	28
□ 인권침해 상담 현황	29
□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30
□ 차별행위 상담 현황	34
□ 기타 상담 현황	35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36
5. 면전진정	37
제3절 민원 및 안내	39
1. 민원	39
2. 안내	40
제3장 조사 및 구제	41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41
제2절 진정 접수	42
1. 진정접수 현황	42
2. 진정인 현황	44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45
□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47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1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56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58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59
제3절 진정 처리결과	60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60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63
□ 검찰	70
□ 경찰	72
□ 군	74
□ 구금시설	76

□ 다수인보호시설	79
□ 출입국관리기관	82
□ 각급학교	83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84
□ 성별	89
□ 임신 또는 출산	91
□ 혼인여부	93
□ 나이	95
□ 인종 등	97
□ 용모·신체조건	99
□ 학력	101
□ 병력	103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
□ 사회적 신분	107
□ 기타사유	109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111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113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115
제4절 조사·구제	118
1. 구제율	118
2. 권고수용현황	119
□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121
□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122
□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123
3. 긴급구제	124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124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125
1. 직권조사	125
□ 인권침해 직권조사	127
□ 차별행위 직권조사	128
2. 방문조사	129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132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132
제2절 인권교육	133
1. 인권교육 현황	133
2. 인권교육과정	134
3. 방문프로그램	134
4. 사이버인권교육	135
5. 인권특강	136
제3절 국내외 협력	137
1. 인권현장방문	137
2. 보조금	137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137
제5장 일반행정	139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139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140
1. 심의·의결기구	140
□ 전원위원회	140
□ 상임위원회	140
□ 소위원회	141
□ 조정위원회	143
2. 자문기구	145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145
□ 정책자문위원회	145
□ 전문위원회	146
제3절 일반현황	151
1. 사무처 조직	151
2. 정보공개	155
3. 청문회	157

4. 업무협약	158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159
6. 과태료 및 보상금	160

부 록(별도첨부) 161

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163
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171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174
4.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197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198
6. 인권통계 연구용역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200
7.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소분류별 법적 근거	204
8.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268
가. 이행기제	269
나. 평등권	273
다. 시민·정치적 권리	279
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95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2014년 인권통계’ 중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인권정책,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협력, 일반행정으로 구분하고, 2014년도 통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간순서대로 배치하여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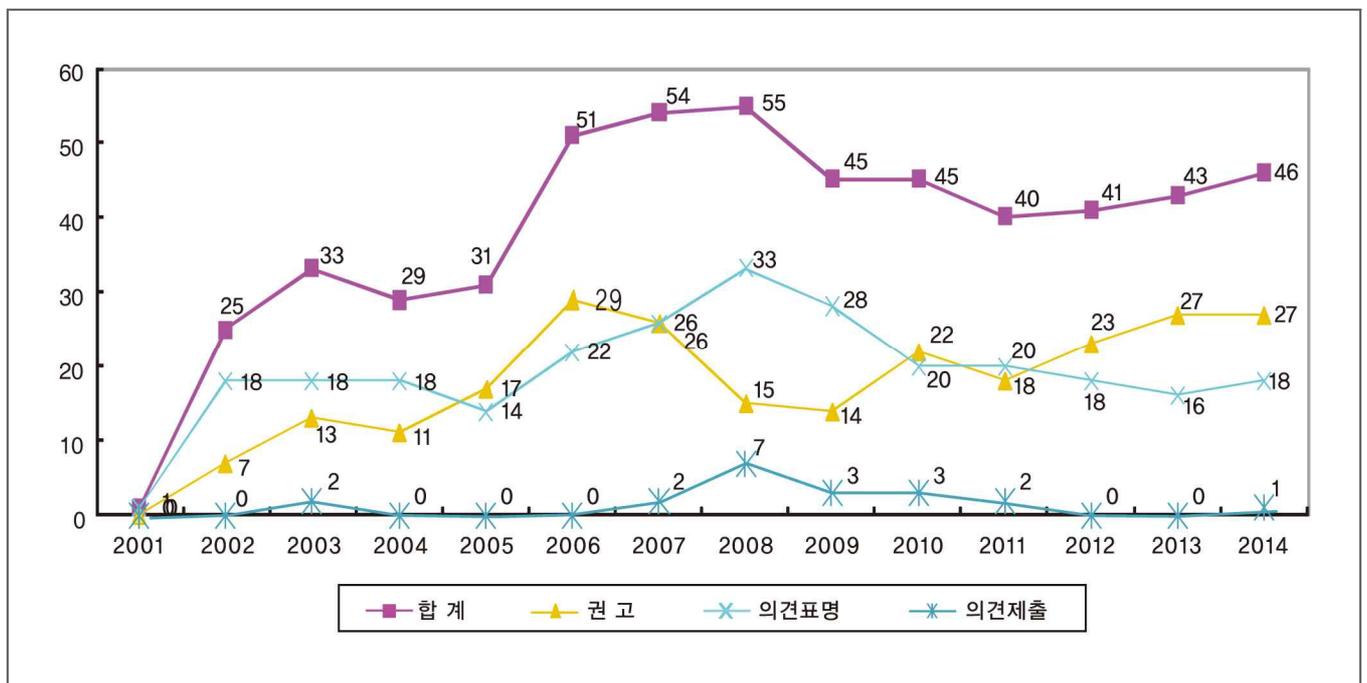
우선 발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아래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핵심업무인 인권정책 권고, 인권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권고수용률 및 인권교육의 영역별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인권정책 권고

2014년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의 개선과 시정을 위한 권고 27건, 의견표명 18건 등 총 46건을 처리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정책권고 27건, 의견표명 16건 등 총 43건

<그림 1> 인권정책 권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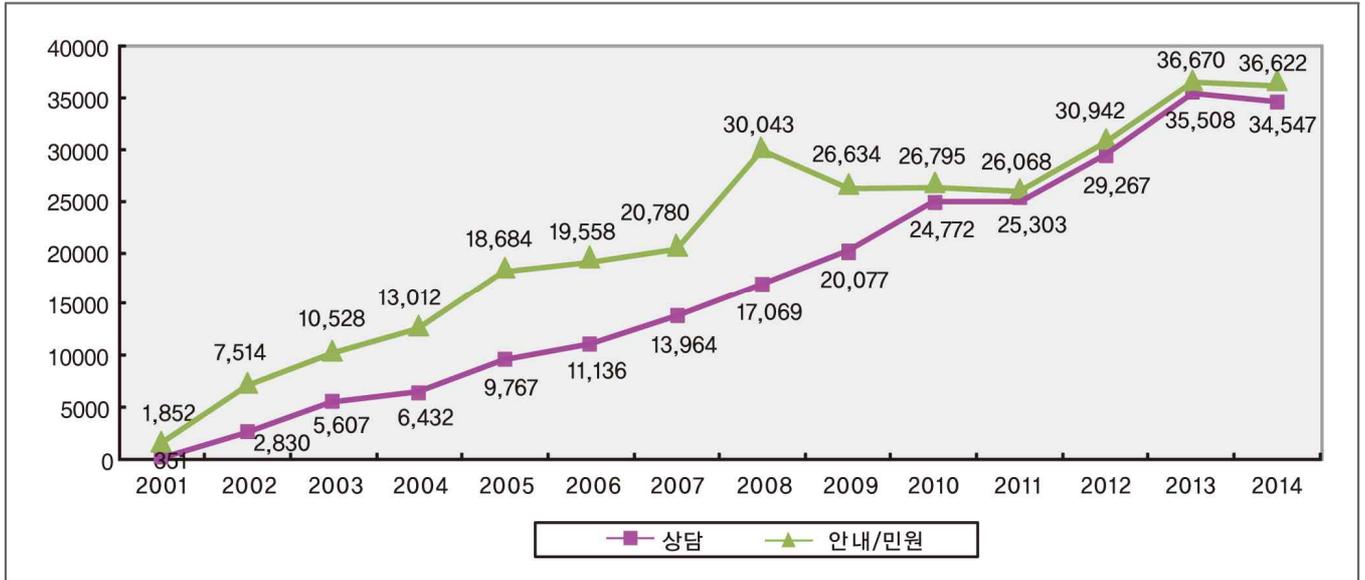


인권상담

2014년 위원회는 인권상담 34,547건(2013년 대비 2.8% 감)을 실시하였고, 민원·안내 36,622건(2013년 대비 0.1% 감)을 처리, 지난해 보다 소폭감소 하였다.

※ 2013년 인권상담 35,508건 실시, 민원안내 36,670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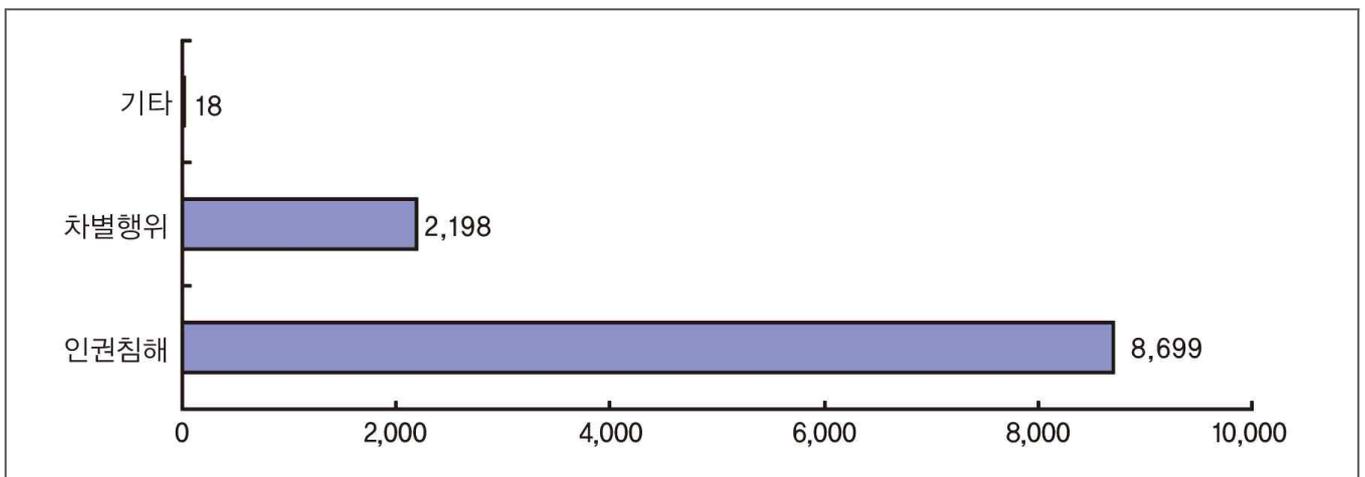
〈그림 2〉 인권상담, 민원·안내 추이



진정접수 및 처리

2014년 진정사건은 10,915건(인권침해 8,699건, 차별행위 2,198건, 기타 18건)을 접수하였고, 10,338건을 처리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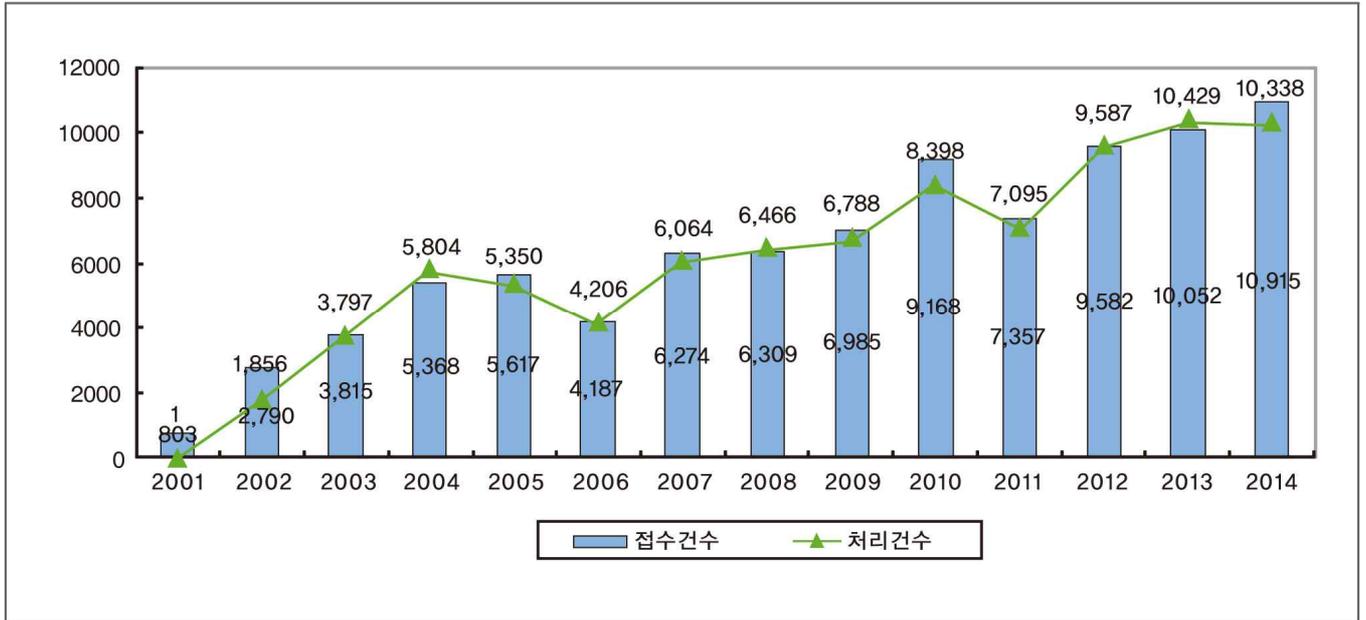
〈그림 3〉 유형별 진정 구성비



특히, 인용건수는 491건(권고 142건, 고발 등 25건, 합의종결 324건)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며, 그중 권고건수가 지난해 보다 75건 감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13년 진정사건 10,056건 접수, 진정사건 10,430건 처리, 그중 인용 576건(권고 217, 고발 등 6건, 합의종결 353건) 처리

<그림 4> 진정 접수 및 처리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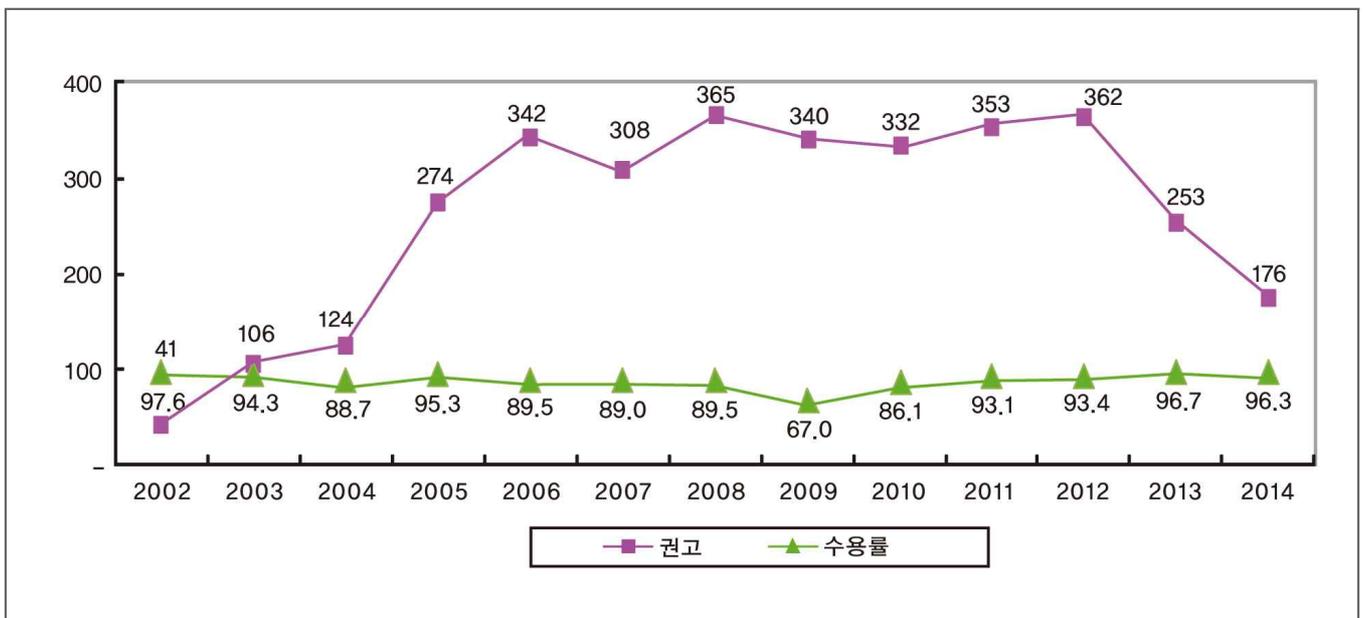


권고수용률 등

2014년 위원회는 176건(인권정책 권고 27건, 진정사건 권고 142건, 직권·방문조사 권고 7건)의 권고결정, 그 중 81건(수용 68건, 일부수용 10건, 불수용 3건)의 이행계획을 회신 받아 권고수용률은 96.3%이고, 피권고기관의 90일 이내 회신율은 64.0%로 나타났다.

※ 2013년 권고수용률 96.7%, 피권고기관의 90일 이내 회신율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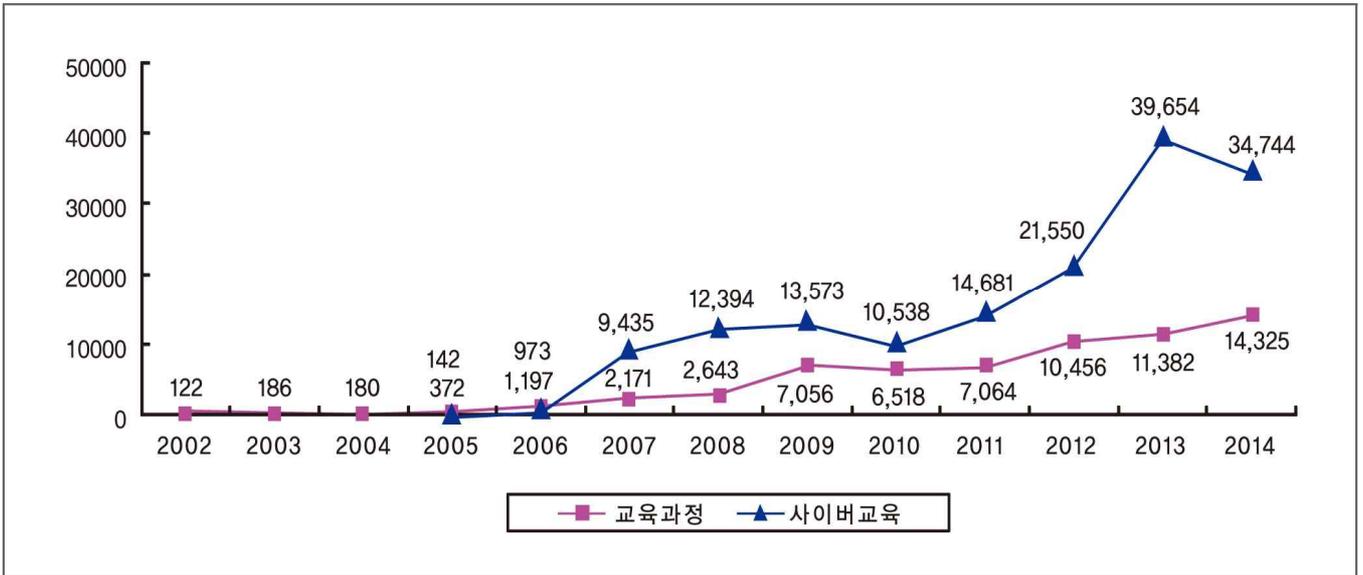
<그림 5>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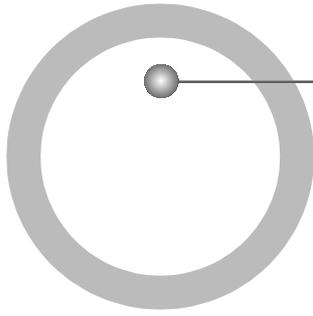


인권교육

2014년 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총 180,558명(지난해 대비 0.1% 증가)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형태별로 살펴보면, 인권교육과정 14,325명(334회), 방문프로그램 4,926명(206회), 사이버 인권교육 34,744명(288회), 인권특강 110,080명(1,506회), 콘텐츠 공동활용 교육 16,483명(169회)을 실시하였다.

<그림 6>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 추이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1장 인권정책

제2장 인권상담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5장 일반행정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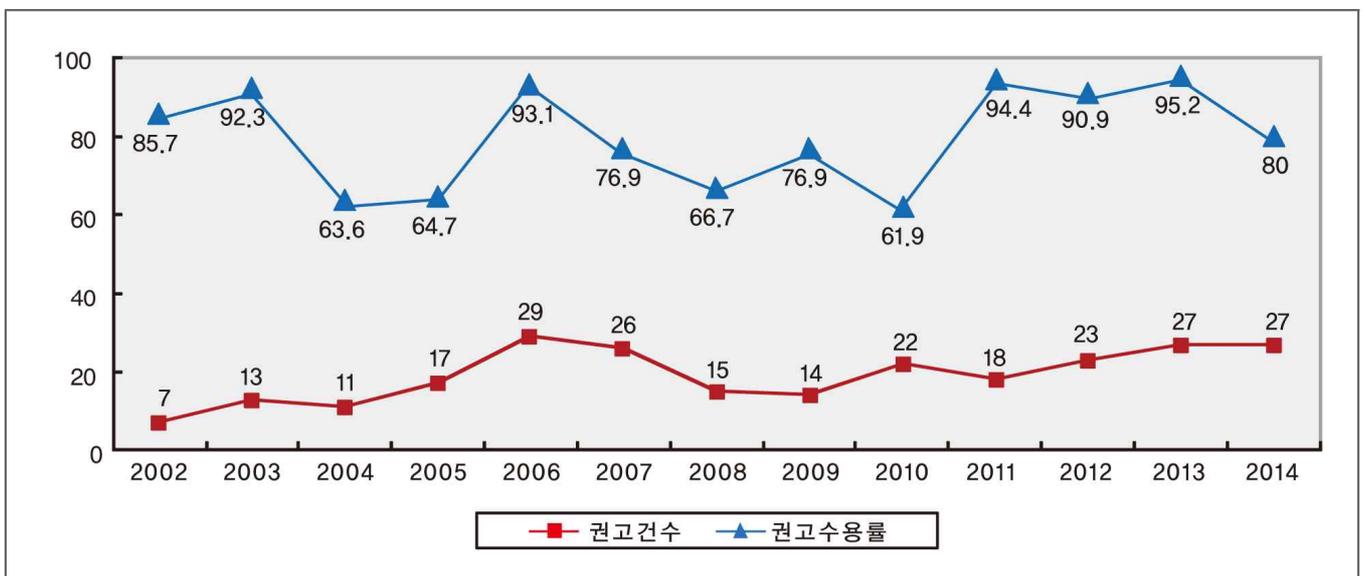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제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조회, 청문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그림 1> 인권정책 권고건수와 수용률 추이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1)

1. 연도별 현황

<표 1-1-1> 인권정책 권고 등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538	248	269	21
2014	46	27	18	1
2013	43	27	16	-
2012	42	24	18	-
2011	40	18	20	2
2010	44	21	20	3
2009	45	14	28	3
2008	55	15	32	8
2007	53	25	26	2
2006	51	29	22	-
2005	31	17	14	-
2004	29	11	18	-
2003	33	13	18	2
2002	25	7	18	-
2001	1	-	1	-

1)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권고는 i)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 ii)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있으며, 위원회는 전자는 인권정책 분야에서, 후자는 조사구체 분야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의견표명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권 이사회	자유권 규약 ²⁾	사회권 규약 ³⁾	인종차별 철폐협약 ⁴⁾	고문방지 협약 ⁵⁾	여성차별 철폐협약 ⁶⁾	아동권리 협약 ⁷⁾	강제실종 금지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⁸⁾
누계	16	1	2	1	3	3	3	2	-	1
2014	-	-	-	-	-	-	-	-	-	-
2013	-	-	-	-	-	-	-	-	-	-
2012	2	1	-	-	-	1	-	-	-	-
2011	2	-	1	-	1	-	-	-	-	-
2010	1	-	-	-	-	-	-	-	-	1
2009	1	-	-	-	-	-	1	-	-	-
2008	1	-	-	-	-	-	-	1	-	-
2007	-	-	-	-	-	-	-	-	-	-
2006	3	-	-	1	1	-	-	1	-	-
2005	1	-	-	-	-	-	1	-	-	-
2004	1	-	1	-	-	-	-	-	-	-
2003	2	-	-	-	-	1	1	-	-	-
2002	2	-	-	-	1	1	-	-	-	-

3. 의견제출⁹⁾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1	-	2	-	-	-	2	8	3	3	2	-	-	1
법원	8	-	-	-	-	-	-	5	-	1	1	-	-	1
헌법재판소	13	-	2	-	-	-	2	3	3	2	1	-	-	-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9) 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절 권고수용 현황

<표 1-2-1>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4	248	218	98	79	41	30	81.2
2013	221	194	89	66	39	27	79.9
2012	194	179	85	55	39	15	78.2

※ 연도별 권고수용현황은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¹⁰⁾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48	218	98	79	41	30	81.2
2014	27	5	1	3	1	22	80.0
2013	27	21	8	12	1	6	95.2
2012	24	22	8	12	2	2	90.9
2011	18	18	9	8	1	-	94.4
2010	21	21	4	9	8	-	61.9
2009	14	14	6	5	3	-	78.6
2008	15	15	4	6	5	-	66.7
2007	25	25	9	10	6	-	76.0
2006	29	29	24	3	2	-	93.1
2005	17	17	7	4	6	-	64.7
2004	11	11	4	3	4	-	63.6
2003	13	13	10	2	1	-	92.3
2002	7	7	4	2	1	-	85.7

10)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권고수용률 = $\frac{(\text{수용} + \text{일부수용}) \text{건수}}{(\text{수용} + \text{일부수용} + \text{불수용}) \text{건수}} * 100$

<표 1-2-3> 2014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218	6	1	4	1	212	83.3
경찰청	4	1	-	1	-	3	100.0
고용노동부	3	-	-	-	-	3	-
교육부	2	-	-	-	-	2	-
국무총리	2	1	-	1	-	1	100.0
국토교통부	1	-	-	-	-	1	-
국회	5	1	-	1	-	4	100.0
금융위원회	2	1	-	1	-	1	100.0
대통령	1	-	-	-	-	1	-
대법원	1	-	-	-	-	1	-
미래창조과학부	2	1	-	-	1	1	0.0
방송통신위원회	1	-	-	-	-	1	-
법무부	2	-	-	-	-	2	-
보건복지부	6	1	1	-	-	5	100.0
지방자치단체	66	-	-	-	-	66	-
행정자치부	3	-	-	-	-	3	-
기타	117	-	-	-	-	117	-

<표 1-2-4> 2014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36	-	-	-	-	36	-
서울특별시	3	-	-	-	-	3	-
부산광역시	2	-	-	-	-	2	-
대구광역시	2	-	-	-	-	2	-
인천광역시	2	-	-	-	-	2	-
광주광역시	2	-	-	-	-	2	-
대전광역시	2	-	-	-	-	2	-
울산광역시	2	-	-	-	-	2	-
경기도	3	-	-	-	-	3	-
강원도	2	-	-	-	-	2	-
충청북도	2	-	-	-	-	2	-
충청남도	2	-	-	-	-	2	-
세종특별자치시	2	-	-	-	-	2	-
전라북도	2	-	-	-	-	2	-
전라남도	2	-	-	-	-	2	-
경상북도	2	-	-	-	-	2	-
경상남도	2	-	-	-	-	2	-
제주특별자치도	2	-	-	-	-	2	-

<표 1-2-5> 2014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30	-	-	-	-	30	-
서울특별시	26	-	-	-	-	26	-
경기도	4	-	-	-	-	4	-

<표 1-2-6> 연도별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 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¹¹⁾
			90일 이내(C)	90일 초과		
2014	218	206	9	3	-	75
2013	265	182	36	45	2	43.4
2012	578	55	133	254	136	25.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¹²⁾ 2012.3.21.개정(2012년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 작성기간은2012.3.21.~2012.12.31.)

$$11) 90일\ 이내\ 회신율 = \left(\frac{90일\ 이내\ 회신\ 건수}{피권고\ 기관수 - 검토중(90일내)\ 건수} \right) * 100$$

12) 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③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1. 이주인권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36	26	10	-
2014	1	1	-	-
2013	5	4	1	-
2012	3	3	-	-
2011	7	5	2	-
2010	5	2	3	-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6	23	8	12	3	2	87.0
2014	1	-	-	-	-	1	-
2013	4	4	2	1	1	-	75.0
2012	3	2	1	1	-	1	100.0
2011	5	5	1	3	1	-	80.0
2010	2	2	1	1	-	-	100.0

<표 1-3-3> 2014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	-	-	-	-	1	-
법무부	1	-	-	-	-	1	-

2. 여성·성소수자 인권

<표 1-3-4>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1	4	6	1
2014	3	1	2	-
2013	2	1	1	-
2012	2	1	1	-
2011	-	-	-	-
2010	4	1	2	1

<표 1-3-5>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4	2	2			2	100.0
2014	1	-	-	-	-	1	-
2013	1	-	-	-	-	1	-
2012	1	1	1	-	-	-	100.0
2011	-	-	-	-	-	-	-
2010	1	1	1	-	-	-	100.0

<표 1-3-6> 2014년 피권고기관별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	-	-	-	-	1	-
고용노동부	1	-	-	-	-	1	-

3. 아동 인권

<표 1-3-7> 아동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50	13	36	1
2014	4	1	3	-
2013	5	1	4	-
2012	3	-	3	-
2011	3	-	3	-
2010	4	4	-	-

<표 1-3-8>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13	12	2	7	3	1	75.0
2014	1	-	-	-	-	1	-
2013	1	1	-	1	-	-	100.0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4	4	-	3	1	-	75.0

<표 1-3-9> 2014년 피권고기관별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7	-	-	-	-	7	-
서울시	1	-	-	-	-	1	-
경기도	1	-	-	-	-	1	-
안양시	1	-	-	-	-	1	-
부천시	1	-	-	-	-	1	-
평택시	1	-	-	-	-	1	-
시흥시	1	-	-	-	-	1	-
서울시 서대문구청	1	-	-	-	-	1	-

4. 장애인 인권

<표 1-3-10>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37	23	13	1
2014	5	2	2	1
2013	7	6	1	-
2012	4	3	1	-
2011	5	2	3	-
2010	6	-	6	-

<표 1-3-1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3	19	9	10	-	4	100.0
2014	2	-	-	-	-	2	-
2013	6	5	3	2	-	1	100.0
2012	3	2	-	2	-	1	100.0
2011	2	2	-	2	-	-	100.0
2010	-	-	-	-	-	-	-

<표 1-3-12> 2014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2	-	-	-	-	2	-
국토교통부	1	-	-	-	-	1	-
경찰청	1	-	-	-	-	1	-

5. 북한인권

<표 1-3-13> 북한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21	10	11	-
2014	2	1	1	-
2013	3	1	2	-
2012	2	-	2	-
2011	3	3	-	-
2010	3	2	1	-

<표 1-3-14>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10	9	6	2	1	88.9	
2014	1	-	-	-	-	-	
2013	1	1	-	1	-	100.0	
2012	-	-	-	-	-	-	
2011	3	3	3	-	-	100.0	
2010	2	2	-	1	1	50.0	

<표 1-3-15> 2014년 피권고기관별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	-	-	-	-	1	-
국회의장	1	-	-	-	-	1	-

6. 인권교육

<표 1-3-16> 인권교육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2	6	5	1
2014	2	-	1	1
2013	1	1	-	-
2012	5	2	3	-
2011	1	1	-	-
2010	1	1	-	-

<표 1-3-17>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6	6	1	5	-	-	100.0
2014	-	-	-	-	-	-	-
2013	1	-	-	1	-	-	100.0
2012	2	2	-	2	-	-	100.0
2011	1	1	1	-	-	-	100.0
2010	1	1	-	1	-	-	100.0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¹³⁾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89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6
예산액	5,910	750	750	700	700	550	350	300	330	280	300	300	300	300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189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6
인권기준·정책 일반(NAP포함)	47	4	8	23	1	-	4	1	-	1	3	-	2	-
구금·보호시설	9	3	3	-	-	2	-	-	-	1	-	-	-	-
군·경찰	12	3	3	-	2	3	-	-	-	-	-	1	-	-
여성	5	-	-	-	-	1	1	1	1	-	-	1	-	-
장애·병력	20	7	-	2	4	3	1	1	1	-	-	-	-	1
아동	17	5	-	-	1	4	3	1	1	2	-	-	-	-
노인	9	3	-	-	-	1	1	-	1	-	-	1	1	1
이주·난민	10	1	3	-	1	-	-	1	-	2	-	1	1	-
차별일반· 전과 등 차별	10	1	1	1	2	2	-	-	1	-	1	1	-	-
비정규직· 노동권	12	-	2	-	1	2	1	1	-	-	1	2	1	1
건강권·주거권· 사회보장권	10	-	2	-	3	2	-	1	1	-	-	-	-	1
인권교육	8	1	-	-	-	2	1	2	-	-	1	-	-	1
정보인권	8	1	1	-	1	1	-	-	1	1	1	1	-	-
기업인권	4	-	-	-	-	-	-	2	1	-	1	-	-	-
북한인권	3	-	-	-	1	-	1	-	-	-	-	-	1	-
국제인권	5	-	-	-	-	1	1	-	-	-	-	-	2	1

13) 법 제19조 제4호

2. 정책연구용역

<표 1-4-3> 연구용역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167	2	4	10	8	18	17	21	18	10	14	13	12	20
인권정책(일반)	9	-	-	-	-	1	-	-	-	-	2	1	2	3
정보인권	3	-	-	-	-	-	-	-	1	1	-	-	1	-
기업인권	4	-	-	-	-	-	-	-	-	-	-	1	1	2
북한인권	7	-	-	1	-	-	-	1	2	1	-	1	-	1
국제인권	1	-	-	-	-	-	1	-	-	-	-	-	-	-
인권교육	101	2	4	9	8	17	16	14	14	5	3	2	1	6
이주	6	-	-	-	-	-	-	-	-	-	2	1	2	1
차별	3	-	-	-	-	-	-	-	-	-	1	1	-	1
여성	5	-	-	-	-	-	-	-	-	-	1	1	2	1
장애	28	-	-	-	-	-	-	6	1	3	5	5	3	5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 등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리면, 즉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을 받는다.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매년 구금·보호 시설에 설치된 진정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인권 취약계층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인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권순회상담을 하기도 한다.

<표 2-1-1> 인권상담·민원/안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인권상담		민원/안내	
누계	543,225	100.0	236,630	43.6	306,595	56.4
2014	71,169	100.0	34,547	48.5	36,622	51.5
2013	72,178	100.0	35,508	49.2	36,670	50.8
2012	60,209	100.0	29,267	48.6	30,942	51.4
2011	51,371	100.0	25,303	49.3	26,068	50.7
2010	51,568	100.0	24,772	48.0	26,796	52.0
2009	46,712	100.0	20,077	43.0	26,635	57.0
2008	47,118	100.0	17,069	36.2	30,049	63.8
2007	34,744	100.0	13,964	40.2	20,780	59.8
2006	30,694	100.0	11,136	36.3	19,558	63.7
2005	28,500	100.0	9,767	34.3	18,733	65.7
2004	19,464	100.0	6,432	33.0	13,032	67.0
2003	16,586	100.0	5,607	33.8	10,979	66.2
2002	10,708	100.0	2,830	26.4	7,878	73.6
2001	2,204	100.0	351	15.9	1,853	84.1

제2절 인권상담

1. 인권상담 현황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인권상담센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누계	236,630	100.0	184,291	77.9	20,396	8.6	16,554	7.0	15,138	6.4	251	0.1
2014	34,547	100.0	27,394	79.3	1,948	5.6	2,411	7.0	2,543	7.4	251	0.7
2013	35,508	100.0	27,947	78.7	2,656	7.5	2,245	6.3	2,660	7.5	-	-
2012	29,267	100.0	21,668	74.0	3,172	10.8	2,178	7.4	2,249	7.7	-	-
2011	25,303	100.0	18,864	74.6	2,183	8.6	2,159	8.5	2,097	8.3	-	-
2010	24,772	100.0	18,926	76.4	2,107	8.5	1,776	7.2	1,963	7.9	-	-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36,630	24,772	25,303	29,267	35,508	34,547	
인권 상담 센터	소계	184,291	18,926	18,864	21,668	27,947	27,394
	전화	154,575	16,642	17,021	19,653	25,860	25,345
	대면	18,807	1,850	1,566	1,763	1,637	1,594
	인터넷	209	5	-	-	-	27
	면접상담	10,700	429	277	252	450	428
부 산	소계	20,396	2,107	2,183	3,172	2,656	1,948
	전화	13,634	1,422	1,569	2,442	1,991	1,505
	대면	2,178	209	183	232	304	166
	면접상담	4,584	476	431	498	361	277
광 주	소계	16,554	1,776	2,159	2,178	2,245	2,411
	전화	11,029	1,148	1,615	1,617	1,794	2,019
	대면	2,264	255	278	257	258	238
	인터넷	1	1	-	-	-	-
	면접상담	3,260	372	266	304	193	154
대 구	소계	15,138	1,963	2,097	2,249	2,660	2,543
	전화	10,487	1,133	1,598	1,828	2,203	2,102
	대면	1,035	107	112	109	139	149
	면접상담	3,616	723	387	312	318	292
대 전	소계	251	-	-	-	-	251
	전화	196	-	-	-	-	196
	대면	23	-	-	-	-	23
	면접상담	32	-	-	-	-	32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실시횟수	처리결과		
		합 계	진정접수	상 담
누 계	201	5,648	680	4,968
2014	31	693	2	691
2013	31	323	12	311
2012	18	548	32	516
2011	28	686	11	675
2010	23	544	33	511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처리결과	소 계	5,648	544	686	548	323	693
		진정접수	680	33	11	32	12	2
		상담	4,968	511	675	516	311	691
	순회상담 횟수		201	23	28	18	31	31
서 울	처리결과	소 계	3,425	297	419	285	72	77
		진정접수	617	22	10	30	8	2
		상담	2,808	275	409	255	64	75
	순회상담 횟수		87	11	9	7	12	9
부 산	처리결과	소 계	632	40	36	35	88	298
		진정접수	19	2	-	1	1	-
		상담	613	38	36	34	87	298
	순회상담 횟수		38	4	5	3	8	11
광 주	처리결과	소 계	904	139	71	78	116	141
		진정접수	34	9	1	1	3	-
		상담	870	130	70	77	113	141
	순회상담 횟수		37	6	5	4	3	3
대 구	처리결과	소 계	687	68	160	150	47	177
		진정접수	10	-	-	-	-	-
		상담	677	68	160	150	47	177
	순회상담 횟수		39	2	9	4	8	8

2. 상담신청인 현황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누 계	236,630	11,107	3,591	1,914	3,580	1,542	884	725	7,228	1,210
2014	34,547	336	130	63	385	107	43	68	221	36
2013	35,508	372	164	76	384	180	23	72	229	46
2012	29,267	531	184	131	265	170	50	70	469	118
2011	25,303	628	90	114	393	114	39	21	459	69
2010	24,772	682	221	111	326	89	67	36	580	66

구 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등록 ¹⁴⁾
누 계	957	861	42	2,585	4,126	1,598	2,289	657	191,734
2014	18	45	3	337	570	84	211	71	31,819
2013	21	29	1	285	525	239	272	78	32,512
2012	51	66	3	168	311	190	231	49	26,210
2011	34	66	1	195	593	109	90	78	22,210
2010	49	81	1	210	293	75	164	62	21,659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미등록
누 계	236,630	169,200	58,225	9,205
2014	34,547	23,651	10,642	254
2013	35,508	23,944	10,121	1,443
2012	29,267	18,157	7,399	3,711
2011	25,303	15,842	6,577	2,884
2010	24,772	19,012	5,688	72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236,630	588	4,625	10,127	13,824	9,143	5,710	192,613
2014	34,547	52	375	937	1,477	1,455	924	29,327
2013	35,508	39	331	866	1,420	1,347	806	30,699
2012	29,267	44	335	832	1,416	1,197	693	24,750
2011	25,303	167	333	763	1,197	852	521	21,470
2010	24,772	62	459	971	1,578	1,055	566	20,081

14) 상담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담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 미등록 통계가 높게 나온 것이며(이하 같음), 면전진정 상담의 경우 지역별 통계가 상담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닌 구급·보호시설로 처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상담신청인의 지역별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등록으로 일괄 처리함.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유형별 상담 현황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¹⁵⁾		면전진정 상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236,630	100.0	87,092	36.8	20,829	8.8	106,517	45.0	22,192	9.4
2014	34,547	100.0	13,859	40.1	2,974	8.6	16,531	47.9	1,183	3.4
2013	35,508	100.0	13,787	38.8	2,978	8.4	17,421	49.1	1,322	3.7
2012	29,267	100.0	11,823	40.4	2,529	8.6	13,549	46.3	1,366	4.7
2011	25,303	100.0	8,957	35.4	2,293	9.1	12,692	50.1	1,361	5.4
2010	24,772	100.0	8,806	35.6	2,141	8.6	11,825	47.7	2,000	8.1
2009	20,077	100.0	6,738	33.6	1,974	9.8	8,721	43.4	2,644	13.2
2008	17,069	100.0	5,391	31.6	1,607	9.4	6,812	39.9	3,259	19.1
2007	13,964	100.0	4,843	34.7	1,170	8.4	5,247	37.6	2,704	19.3
2006	11,136	100.0	3,687	33.1	978	8.8	4,045	36.3	2,426	21.8
2005	9,767	100.0	3,610	37.0	995	10.2	3,764	38.5	1,398	14.3
2004	6,432	100.0	2,426	37.7	518	8.1	2,142	33.3	1,346	20.9
2003	5,607	100.0	2,015	35.9	446	8.0	2,268	40.4	878	15.7
2002	2,830	100.0	1,032	36.5	202	7.1	1,294	45.7	302	10.7
2001	351	100.0	118	33.6	24	6.8	206	58.7	3	0.9

15) 기타 상담의 주요 내용은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참조

□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87,092	8,806	8,957	11,823	13,787	13,859
검찰	3,801	392	291	339	323	282
경찰	20,132	2,368	1,849	2,021	2,236	2,236
국정원	206	13	12	15	26	6
특사경	108	10	-	-	-	-
지방자치단체	6,113	717	679	666	573	673
사법기관	1,468	206	140	194	180	154
입법기관	61	5	1	1	4	5
기타국가기관	6,898	688	568	565	583	630
구금시설	2,535	243	219	232	325	266
다수인보호시설	35,723	3,250	4,119	5,774	7,591	7,463
군	3,094	254	337	366	337	502
각급학교	3,401	334	453	868	815	931
출입국관리기관	204	-	53	65	48	38
보호시설	164	7	-	-	-	-
공직유관단체	1,028	-	-	300	350	378
기타	2,156	319	236	417	396	295

□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801	392	291	339	323	282
도·감청 등	11	-	2	1	2	2
압수수색(신체)	50	6	3	2	-	5
집회, 시위	8	2	-	-	1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22	2	1	1	-	3
임의동행	12	-	-	1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	-	1	1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56	9	9	10	6	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624	90	72	56	58	53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59	9	3	6	2	4
체포, 구속, 감금	115	8	12	3	13	6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457	151	59	103	96	63
공소권 남용	299	33	24	30	31	20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81	13	23	28	23	31
알권리/정보공개	88	11	5	10	13	4
생명권 침해	4	-	-	1	2	1
압수수색(주거) 등	8	-	2	1	2	3
종교의 자유	1	-	1	-	-	-
기타	695	58	75	85	73	82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0,132	2,368	1,849	2,021	2,236	2,236
불심검문/ 임의동행	537	90	27	36	28	33
도·감청 등	71	9	7	4	16	4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559	94	32	22	39	22
집회, 시위	271	57	9	8	13	12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444	44	36	42	44	7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8	4	3	1	3	1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4,523	589	368	425	555	556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294	454	377	362	390	411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617	58	49	54	60	62
체포, 구속, 감금	742	65	68	73	67	85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4,945	531	330	422	450	431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973	58	107	152	146	170
알권리/ 정보공개	208	14	28	28	24	24
생명권 침해	34	-	7	8	11	8
압수수색(주거) 등	48	-	15	8	16	9
종교의 자유	1	-	-	1	-	-
인터넷	5	-	1	1	3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24	-	4	7	5	8
기타	2,798	301	381	367	366	330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094	254	337	366	337	502
부당한 사건분류	4	1	-	-	-	-
법정질환관리 부실	1	-	-	-	-	-
면담불허	1	1	-	-	-	-
외부통신 제한	3	-	-	-	-	-
불심검문/임의동행	3	2	1	-	-	-
도·감청 등	4	-	1	-	-	1
압수수색(신체)	8	1	2	1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4	1	-	1	-	2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96	6	11	5	14	17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661	53	63	54	36	9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	-	-	-	1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94	29	58	54	55	106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554	42	81	84	70	82
체포, 구속, 감금	16	-	3	3	2	1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67	2	6	16	20	18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	31	4	3	6	5	12
생명권 침해	212	8	25	32	21	32
부당한 제도 및 처분	482	66	24	42	59	48
압수수색(주거)	4	-	-	1	-	3
종교의 자유	4	-	1	-	3	-
인터넷	2	-	-	-	2	-
영창관련 인권침해	20	-	5	4	4	7
기타	522	38	53	63	46	74

<표 2-1-14> 구급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535	243	219	232	325	266
건강/의료	846	64	61	102	102	96
외부교통 권리제한	163	14	14	11	10	6
조사/징벌/계구	232	27	21	15	32	21
폭행/가혹행위	468	55	41	36	75	46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339	38	38	29	43	34
시설/환경	123	17	9	10	8	11
기타	364	28	35	29	55	52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5,723	3,250	4,119	5,774	7,591	7,463
불법/강제수용	12,245	1,350	1,335	1,729	2,421	2,378
폭행/가혹행위	3,067	302	363	376	525	440
외부교통권 제한	2,285	188	283	397	478	378
의료조치 미흡	1,428	96	136	236	283	342
강제노동	403	54	34	62	78	62
인권격 침해	2,161	82	256	553	432	497
시설/환경	1,270	132	135	164	249	227
퇴원요청	7,913	645	1,061	1,518	2,004	1,798
기타	4,951	401	516	739	1,121	1,341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¹⁶⁾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04	-	53	65	48	38
육설/ 반말	8	-	4	-	2	2
폭행/ 가혹행위	7	-	1	4	-	2
출입국 제한	68	-	17	15	18	18
사생활 비밀 침해	8	-	1	2	4	1
알권리 침해	5	-	1	2	2	-
적법절차 준수 위반	8	-	1	1	2	4
위법/ 부당한 처분	29	-	11	5	8	5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30	-	8	18	3	1
기타	41	-	9	18	9	5

<표 2-1-17> 각급 학교¹⁷⁾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401	334	453	868	815	931
인격권 침해	1,695	334	217	370	342	432
체벌	254	-	71	61	75	47
징계부당	295	-	24	112	74	85
기타	1,157	-	141	325	324	367

16) 2011년부터 출입국관리기관으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함

17) 2010년부터 각급학교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함

□ 차별행위 상담 현황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0,829	2,141	2,293	2,529	2,978	2,974
검찰	502	25	2	6	7	6
경찰	149	-	31	45	42	31
구급시설	46	8	2	3	4	6
군대	149	14	18	23	19	18
기타국가기관	1,617	159	122	149	167	159
지방자치단체	1,357	144	118	158	157	131
보호시설	254	10	29	47	45	61
교육기관	1,976	181	183	234	292	299
공공기관	1,465	136	156	218	215	176
사법인	5,535	744	613	437	554	652
개인회사	3,692	247	393	571	777	773
단체	487	67	70	66	67	68
사인(개인)	2,674	320	409	424	476	473
요양시설	70	2	15	13	18	22
기타	856	84	132	135	138	99

<표 2-1-19>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0,829	2,141	2,293	2,529	2,978	2,974
성별	632	39	61	68	78	72
종교	148	11	22	15	11	17
장애	6,752	851	833	937	1,112	1,072
나이	1,477	217	142	158	197	155
사회적신분	1,853	136	157	198	231	213
출신지역	154	9	8	14	10	18
출신국가	547	78	55	42	64	69
출신민족	31	2	3	2	5	3
용모, 신체조건	309	27	27	27	39	55
혼인여부	119	8	16	8	11	12
임신, 출산	315	34	31	45	45	47
가족상황	154	15	15	16	17	23
인종	33	1	2	4	8	5
피부색	14	2	-	2	4	2
사상, 정치적의견	78	6	5	4	3	6
전과	305	16	22	42	44	39
성적지향	36	-	4	4	5	12
병력	630	63	67	71	75	83
학벌/학력	288	31	28	30	38	24
성희롱	5,030	491	661	602	764	819
기타	1,924	104	134	240	217	228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0,829	2,141	2,293	2,529	2,978	2,974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7,867	775	679	813	1,083	1,078
	모집	799	92	50	84	89	85
	채용	1,494	128	143	146	184	172
	배치	677	63	45	68	94	84
	교육	78	7	5	8	13	10
	승진	299	25	26	25	42	28
	임금지급	763	62	62	104	128	150
	임금외 금품지급	264	34	25	26	41	35
	자금용자	6	-	-	-	1	1
	정년	188	30	10	38	35	15
	퇴직	301	30	28	29	49	37
	해고	1,092	116	125	102	116	143
	기타	1,906	188	160	183	291	318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4,602	500	499	567	716	665
	용역의 공급이용	1,432	160	152	152	209	224
	재화의 공급이용	1,831	173	158	241	329	274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491	76	68	59	47	51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580	70	89	83	82	78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45	20	28	30	49	35
	토지의 공급이용	23	1	4	2	-	3
교육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939	98	104	101	112	129
	교육시설의 이용	844	85	92	90	93	113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95	13	12	11	19	16
기타	7,421	768	1,011	1,048	1,067	1,102	

□ 기타 상담 현황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06,517	11,825	12,692	13,549	17,421	16,531
사인간침해	21,161	2,378	2,733	2,367	3,126	2,482
회사	11,706	1,323	1,375	1,456	1,789	1,804
기타단체	2,580	344	301	227	255	300
재산권	3,919	482	452	467	615	390
법령제도개선	2,013	150	95	209	252	211
입법/재판	3,582	392	466	375	451	316
국가기관	5,749	754	615	851	913	439
인권위업무 문의	13,190	927	985	2,081	3,061	3,525
위원회업무불만	3,402	383	327	388	473	424
법률문의	5,391	611	453	659	898	859
인권위관련 제안	984	94	106	110	93	69
차별영역외	478	-	211	121	107	39
사립학교 ¹⁸⁾	141	-	122	19	-	-
기타	32,221	3,987	4,451	4,219	5,388	5,673

18) 법 제30조제1항1호가 개정(각급학교 추가, 2012.3.21.)되어 사립학교가 조사대상에 포함됨.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기 타
누 계	236,630	19,748	197,328	13,381	6,173
2014	34,547	4,049	27,224	2,283	991
2013	35,508	3,410	28,418	2,294	1,386
2012	29,267	2,922	23,077	2,063	1,205
2011	25,303	2,089	21,010	1,350	854
2010	24,772	2,268	20,369	1,624	511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36,630	24,772	25,303	29,267	35,508	34,547	
인권상담 센터	소 계	184,291	18,926	18,864	21,668	27,947	27,394
	진정접수	14,263	1,728	1,406	1,985	2,264	2,883
	상담종결	156,367	15,556	16,241	17,600	23,152	22,047
	타기관안내	9,804	1,220	861	1,458	1,734	1,835
	기타	3,857	422	356	625	797	629
부산	소 계	20,396	2,107	2,183	3,172	2,656	1,948
	진정접수	2,327	272	266	414	428	352
	상담종결	16,095	1,714	1,759	2,357	1,862	1,296
	타기관안내	1,470	106	77	242	258	230
	기타	504	15	81	159	108	70
광주	소 계	16,554	1,776	2,159	2,178	2,245	2,411
	진정접수	2,147	216	325	366	388	508
	상담종결	11,358	1,314	1,134	1,221	1,216	1,495
	타기관안내	1,600	194	333	253	251	178
	기타	1,449	52	367	338	390	230
대구	소 계	15,138	1,963	2,097	2,249	2,660	2,543
	진정접수	983	52	92	157	330	278
	상담종결	13,297	1,785	1,876	1,899	2,188	2,175
	타기관안내	503	104	79	110	51	36
	기타	355	22	50	83	91	54
대전	소 계	251	-	-	-	-	251
	진정접수	28	-	-	-	-	28
	상담종결	211	-	-	-	-	211
	타기관안내	4	-	-	-	-	4
	기타	8	-	-	-	-	8

5. 면진진정

<표 2-1-24> 면진진정¹⁹⁾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46,121	45,908	100.0	11,457	25.0	12,259	26.7	22,192	48.3
2014	2,874	2,836	100.0	966	34.1	687	24.2	1,183	41.7
2013	3,068	3,095	100.0	992	32.1	781	25.2	1,322	42.7
2012	3,070	3,069	100.0	989	32.2	714	23.3	1,366	44.5
2011	3,117	3,055	100.0	1,019	33.4	675	22.1	1,361	44.5
2010	3,949	3,916	100.0	1,129	28.8	787	20.1	2,000	51.1

<표 2-1-25> 부서별 면진진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46,121	45,908	100.0	11,457	25.0	12,259	26.7	22,192	48.3	
2014	소 계	2,874	2,836	100.0	966	34.1	687	24.2	1,183	41.7
	서 울	1,039	1,012	100.0	355	35.1	229	22.6	428	42.3
	부 산	645	647	100.0	180	27.8	190	29.4	277	42.8
	광 주	497	498	100.0	175	35.1	169	34.0	154	30.9
	대 구	603	614	100.0	244	39.7	78	12.7	292	47.6
	대 전	90	65	100.0	12	18.5	21	32.3	32	49.2
2013	소 계	3,068	3,095	100.0	992	32.1	781	25.2	1,322	42.7
	서 울	978	1,045	100.0	354	33.8	241	23.1	450	43.1
	부 산	867	852	100.0	251	29.4	240	28.2	361	42.4
	광 주	527	518	100.0	157	30.3	168	32.4	193	37.3
	대 구	696	680	100.0	230	33.8	132	19.4	318	46.8
2012	소 계	3,070	3,069	100.0	989	32.2	714	23.3	1,366	44.5
	서 울	871	826	100.0	435	52.7	139	16.8	252	30.5
	부 산	977	978	100.0	237	24.2	243	24.9	498	50.9
	광 주	639	664	100.0	131	19.7	229	34.5	304	45.8
	대 구	583	601	100.0	186	31.0	103	17.1	312	51.9
2011	소 계	3,117	3,055	100.0	1,019	33.4	675	22.1	1,361	44.5
	서 울	987	983	100.0	501	51.0	205	20.8	277	28.2
	부 산	797	782	100.0	182	23.3	169	21.6	431	55.1
	광 주	613	577	100.0	121	21.0	190	32.9	266	46.1
	대 구	720	713	100.0	215	30.1	111	15.6	387	54.3
2010	소 계	3,949	3,916	100.0	1,129	28.8	787	20.1	2,000	51.1
	서 울	1,372	1,316	100.0	656	49.8	231	17.6	429	32.6
	부 산	766	776	100.0	144	18.6	156	20.1	476	61.3
	광 주	707	718	100.0	131	18.3	215	29.9	372	51.8
	대 구	1,104	1,106	100.0	198	17.9	185	16.7	723	65.4

19) 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표 2-1-26> 구금·보호시설²⁰⁾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종결처리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합 계	46,121	45,908	11,457	12,259	22,192
	교정시설	40,973	40,788	10,096	11,474	19,218
	경찰서 유치장 등	80	80	25	25	30
	군 구금시설	57	57	31	4	22
	다수인 보호시설	5,011	4,983	1,305	756	2,922
2014	소 계	2,874	2,836	966	687	1,183
	교정시설	2,244	2,194	747	594	853
	경찰서 유치장 등	2	2	1	-	1
	군 구금시설	9	9	6	1	2
	다수인 보호시설	619	631	212	92	327
2013	소 계	3,068	3,095	992	781	1,322
	교정시설	2,300	2,343	746	663	934
	경찰서 유치장 등	4	4	2	1	1
	군 구금시설	9	12	2	-	10
	다수인 보호시설	755	736	242	117	377
2012	소 계	3,070	3,069	989	714	1,366
	교정시설	2,269	2,258	737	627	894
	경찰서 유치장 등	5	5	1	1	3
	군 구금시설	18	15	14	1	-
	다수인 보호시설	778	791	237	85	469
2011	소 계	3,117	3,055	1,019	675	1,361
	교정시설	2,438	2,395	826	577	992
	경찰서 유치장 등	5	5	4	-	1
	군 구금시설	8	9	6	-	3
	다수인 보호시설	666	646	183	98	365
2010	소 계	3,949	3,916	1,129	787	2,000
	교정시설	3,165	3,123	960	664	1,499
	경찰서 유치장 등	6	6	1	1	4
	군 구금시설	3	2	1	-	1
	다수인 보호시설	775	785	167	122	496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3,916	3,055	3,069	3,095	2,836
평균 소요일수	19.9일	20.9일	27.9일	22.3일	20.9일

20) 법 제2조(정의)제2호

제3절 민원 및 안내

1. 민원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14,092	11	835	2,455	4,546	8,627	8,151	8,843	8,937	9,616	11,371	10,974	12,212	13,222	14,292
진정접수 절차안내	15,165	-	68	214	659	1,140	1,574	1,069	1,321	1,825	1,513	1,723	1,411	1,147	1,501
조사대상안내	38,351	-	184	697	1,265	3,147	3,216	2,781	3,273	3,543	4,561	4,120	3,289	4,360	3,915
진정내용 보완요구	1,281	-	32	97	245	175	30	123	76	105	68	73	6	210	41
진정사건 처리안내	1,028	-	39	199	71	96	88	75	79	84	50	50	15	72	110
법령등 자료송부	670	-	23	59	89	148	85	124	92	29	14	3	-	4	-
질의회신	784	-	45	76	206	433	24	-	-	-	-	-	-	-	-
면전진정 안내	422	-	1	53	131	132	36	5	15	20	4	9	2	5	9
타기관 이송	258	-	13	54	3	4	3	22	21	13	61	26	7	13	18
타기관 안내	699	-	-	52	140	106	107	34	21	13	79	75	3	52	17
진정접수 안내	23,430	-	187	225	422	1,214	855	1,894	1,749	1,859	2,271	2,137	2,688	2,801	5,128
민원인취하	667	-	-	-	-	3	115	126	20	40	117	65	66	31	84
공람종결	1,326	-	-	101	81	221	15	60	131	176	293	167	46	16	19
처리종결(회신무)	12,638	-	36	108	462	748	818	1,842	1,271	993	957	904	1,495	1,628	1,376
민원회신	10,713	-	-	-	-	-	-	-	-	-	1,070	1,579	3,146	2,870	2,048
기타	6,660	11	207	520	772	1,060	1,185	688	868	916	313	43	38	13	26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본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누계	114,092	100.0	111,620	97.8	1,173	1.0	596	0.5	691	0.6	12	0.1
2014	14,292	100.0	13,851	96.9	247	1.7	86	0.6	96	0.7	12	0.1
2013	13,222	100.0	13,019	98.5	80	0.6	69	0.5	54	0.4		
2012	12,212	100.0	11,963	98.0	70	0.6	112	0.9	67	0.5		
2011	10,974	100.0	10,618	96.8	139	1.3	114	1.0	103	0.9		
2010	11,371	100.0	11,099	97.6	109	1.0	68	0.6	95	0.8		

2. 안내

<표 2-2-3> 안내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92,503	1,842	7,043	8,524	8,486	10,106	11,407	11,937	21,112	17,019	15,425	15,094	18,730	23,448	22,330
위원회 업무안내	31,494	-	-	1,240	1,563	2,466	2,695	2,936	2,276	2,357	3,231	2,353	2,563	3,688	4,126
전화번호/ 주소안내	13,599	-	-	1,043	885	1,054	1,341	1,239	1,394	1,383	1,406	1,152	719	1,065	918
잘못 걸린 전화	37,941	-	-	608	542	463	1,214	922	8,947	4,768	2,659	4,003	5,007	5,134	3,674
직원안내	43,887	-	-	2,490	2,230	2,771	2,327	2,808	3,736	3,799	4,381	3,707	4,150	5,771	5,717
진정접수 여부 확인	5,718	-	-	451	346	371	487	555	525	486	448	305	435	691	618
타기관/ 단체 안내	17,923	-	-	758	971	1,119	1,482	1,613	1,599	2,325	1,661	1,209	1,171	1,926	2,089
타부서 안내	6,341	-	-	587	310	302	453	431	736	490	488	427	540	874	703
진정예정	339	-	-	-	-	-	-	-	-	-	42	13	47	153	84
기타	35,261	1,842	7,043	1,347	1,639	1,560	1,408	1,433	1,899	1,411	1,109	1,925	4,098	4,146	4,401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본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누계	192,503	100.0	150,495	78.1	11,023	5.7	23,083	12.0	7,850	4.1	52	0.1
2014	22,330	100.0	16,373	73.3	598	2.7	3,320	14.9	1,987	8.9	52	0.2
2013	23,448	100.0	18,674	79.6	607	2.6	3,343	14.3	824	3.5		
2012	18,730	100.0	13,821	73.8	478	2.6	4,043	21.6	388	2.1		
2011	15,094	100.0	9,873	65.4	1,566	10.4	3,323	22.0	332	2.2		
2010	15,425	100.0	10,853	70.4	1,353	8.8	1,747	11.3	1,472	9.5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업무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의 차별행위이다.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性的)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연령차별을 조사한다.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손해배상 등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진정 접수

1. 진정접수 현황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 ²¹⁾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89,226	100.0	68,263	76.5	18,792	21.1	2,171	2.4
2014	10,915	100.0	8,699	79.7	2,198	20.1	18	0.2
2013	10,056	100.0	7,457	74.2	2,496	24.8	103	1.0
2012	9,582	100.0	6,946	72.5	2,549	26.6	87	0.9
2011	7,357	100.0	5,425	73.7	1,803	24.5	129	1.8
2010	9,168	100.0	6,460	70.5	2,681	29.2	27	0.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7
2006	4,187	100.0	3,335	79.7	824	19.7	28	0.6
2005	5,617	100.0	4,199	74.8	1,081	19.2	337	6.0
2004	5,368	100.0	4,627	86.2	389	7.2	352	6.6
2003	3,815	100.0	3,041	79.7	358	9.4	416	10.9
2002	2,790	100.0	2,214	79.3	136	4.9	440	15.8
2001	803	100.0	619	77.1	53	6.6	131	16.3

21) 기타 진정의 주요 내용은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참조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전화	대면	면전	홈페이지	인터넷	우편	FAX	이첩
누 계	89,226	15,107	13,423	12,496	13,842	5,039	24,041	1,886	3,392
2014	10,915	3,689	907	718	2,451	127	2,129	147	747
2013	10,056	2,921	1,295	832	2,053	115	1,970	133	737
2012	9,582	2,492	1,381	751	2,016	44	2,142	146	610
2011	7,357	1,759	989	701	1,358	374	1,597	128	451
2010	9,168	1,889	1,719	819	1,743	29	2,248	184	537
2009	6,985	960	813	1,319	1,553	43	1,840	223	234
2008	6,309	369	1,084	1,179	1,524	153	1,802	122	76
2007	6,274	186	913	1,251	1,144	754	1,875	151	-
2006	4,187	107	673	797	-	1,039	1,439	132	-
2005	5,617	157	732	1,168	-	1,397	2,010	153	-
2004	5,368	122	1,670	1,274	-	458	1,728	116	-
2003	3,815	76	555	1,129	-	295	1,605	155	-
2002	2,790	177	445	553	-	173	1,368	74	-
2001	803	203	247	5	-	38	288	22	-

2. 진정한 현황

<표 3-1-3> 진정한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누계	89,226	15,671	4,456	2,709	2,969	3,665	2,129	861	12,173	1,948
2014	10,915	1,357	423	404	303	370	214	106	1,287	185
2013	10,056	1,347	374	257	321	353	200	89	1,187	184
2012	9,582	1,373	396	281	268	386	218	72	1,354	211
2011	7,357	1,046	285	235	221	274	127	65	966	124
2010	9,168	1,739	334	259	186	250	151	90	1,125	132

구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등록
누계	1,462	2,080	58	2,740	3,374	4,020	2,996	580	25,335
2014	132	291	9	282	411	261	303	97	4,480
2013	139	197	10	267	416	350	292	66	4,007
2012	153	217	9	350	462	318	309	71	3,134
2011	93	151	4	246	347	200	193	56	2,724
2010	140	171	2	227	259	285	207	73	3,538

<표 3-1-4> 진정한 성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남	여	미등록
누계	89,226	49,525	11,188	28,513
2014	10,915	6,849	2,137	1,929
2013	10,056	6,063	1,709	2,284
2012	9,582	3,961	1,187	4,434
2011	7,357	3,513	922	2,922
2010	9,168	4,131	1,084	3,953

<표 3-1-5> 진정한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계	89,226	1,039	7,392	14,054	15,143	8,470	3,411	39,717
2014	10,915	146	628	1,237	1,604	1,271	408	5,621
2013	10,056	143	669	1,124	1,634	1,177	382	4,927
2012	9,582	137	671	1,337	1,799	1,300	440	3,898
2011	7,357	83	600	1,132	1,412	928	361	2,841
2010	9,168	83	496	942	1,002	553	204	5,888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표 3-1-6> 헌법상 기본권²²⁾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간의 존엄성 (10조)		평등권 (11조)		신체의 자유 (12조)		형벌불소급 (13조)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직업선택의 자유 (15조)		주거의 자유 (16조)	
누 계	68,263	100.0	35,975	52.7	1,371	2.0	20,539	30.1	31	0.1	267	0.4	225	0.3	103	0.1
2014	8,699	100.0	3,298	37.9	184	2.1	3,673	42.2	9	0.1	23	0.2	32	0.4	14	0.2
2013	7,457	100.0	2,989	40.1	205	2.8	2,863	38.4	1	0.0	22	0.3	24	0.3	18	0.2
2012	6,946	100.0	3,084	44.4	307	4.4	2,251	32.4	9	0.1	42	0.6	22	0.3	12	0.2
2011	5,425	100.0	2,638	48.6	188	3.5	1,835	33.8	1	0.0	12	0.2	8	0.2	6	0.1
2010	6,460	100.0	3,905	60.4	33	0.5	1,746	27.0	1	0.0	8	0.1	8	0.1	5	0.1
2009	5,282	100.0	3,340	63.2	49	0.9	1,271	24.1	2	0.0	16	0.3	18	0.3	6	0.1
2008	4,892	100.0	3,212	65.7	43	0.9	1,060	21.7	2	0.0	14	0.3	15	0.3	3	0.1
2007	5,067	100.0	2,960	58.4	96	1.9	1,279	25.2	1	0.0	13	0.3	30	0.6	16	0.3
2006	3,335	100.0	2,030	60.9	39	1.2	731	21.9	-	0.0	10	0.3	21	0.6	8	0.2
2005	4,199	100.0	2,343	55.8	19	0.5	1,145	27.3	-	0.0	36	0.9	18	0.4	4	0.1
2004	4,627	100.0	3,411	73.7	6	0.1	977	21.1	1	0.0	33	0.7	7	0.2	1	0.0
2003	3,041	100.0	1,685	55.4	57	1.9	867	28.5	2	0.1	22	0.7	12	0.4	3	0.1
2002	2,214	100.0	863	39.0	85	3.8	701	31.7	2	0.1	13	0.6	2	0.1	5	0.2
2001	619	100.0	217	35.1	60	9.7	140	22.6	-	0.0	3	0.5	8	1.3	2	0.3

구 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자유 (18조)		양심의 자유 (19조)		종교의 자유 (20조)		언론의 자유 (21조)		학문예술의 자유 (22조)		기타	
누 계	2,452	3.6	1,958	2.9	114	0.2	164	0.2	465	0.7	87	0.1	4,512	6.6
2014	424	4.9	270	3.1	16	0.2	30	0.3	66	0.8	8	0.1	652	7.5
2013	352	4.7	320	4.3	18	0.2	13	0.2	46	0.6	5	0.1	581	7.8
2012	349	5.0	256	3.7	8	0.1	29	0.4	35	0.5	9	0.1	533	7.7
2011	244	4.5	188	3.5	8	0.2	13	0.2	20	0.4	2	0.0	262	4.8
2010	219	3.4	209	3.2	5	0.1	13	0.2	39	0.6	6	0.1	263	4.1
2009	172	3.3	141	2.7	2	0.0	7	0.1	33	0.6	2	0.0	223	4.2
2008	127	2.6	93	1.9	11	0.2	15	0.3	43	0.9	7	0.1	247	5.0
2007	160	3.2	74	1.5	8	0.2	19	0.4	26	0.5	8	0.2	377	7.4
2006	115	3.4	60	1.8	8	0.2	11	0.3	16	0.5	9	0.3	277	8.3
2005	126	3.0	108	2.6	7	0.2	7	0.2	42	1.0	18	0.4	326	7.8
2004	58	1.3	92	2.0	-	0.0	-	0.0	33	0.7	4	0.1	4	0.1
2003	44	1.4	94	3.1	4	0.1	4	0.1	41	1.3	6	0.2	200	6.6
2002	55	2.5	46	2.1	19	0.9	3	0.1	25	1.1	3	0.1	392	17.7
2001	7	1.1	7	1.1	-	0.0	-	0.0	-	0.0	-	0.0	175	28.3

22) 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제1항제1호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 찰		경 찰		국정원		특사경		지방 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 기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68,263	100.0	2,393	3.5	14,189	20.8	225	0.3	169	0.3	3,226	4.7	916	1.3	56	0.1
2014	8,699	100.0	189	2.2	1,540	17.7	11	0.1	-	0.0	387	4.5	83	1.0	3	0.0
2013	7,457	100.0	157	2.1	1,330	17.9	16	0.2	-	0.0	343	4.6	74	1.0	6	0.1
2012	6,946	100.0	147	2.1	1,221	17.6	16	0.2	-	0.0	335	4.8	85	1.2	-	0.0
2011	5,425	100.0	139	2.6	1,107	20.4	15	0.3	-	0.0	247	4.6	71	1.3	3	0.1
2010	6,460	100.0	234	3.6	1,582	24.5	17	0.3	8	0.1	295	4.6	156	2.4	14	0.2
2009	5,282	100.0	142	2.7	1,210	22.9	17	0.3	8	0.2	214	4.1	50	0.9	5	0.1
2008	4,892	100.0	172	3.5	1,106	22.6	25	0.5	17	0.3	323	6.6	70	1.4	2	0.0
2007	5,067	100.0	226	4.5	1,131	22.3	36	0.7	12	0.2	449	8.9	62	1.2	8	0.2
2006	3,335	100.0	136	4.1	797	23.9	12	0.4	4	0.1	177	5.3	56	1.7	2	0.1
2005	4,199	100.0	214	5.1	937	22.3	11	0.3	37	0.9	194	4.6	63	1.5	2	0.0
2004	4,627	100.0	164	3.5	688	14.9	11	0.2	26	0.6	115	2.5	41	0.9	8	0.2
2003	3,041	100.0	174	5.7	701	23.1	5	0.2	26	0.9	81	2.7	35	1.2	2	0.1
2002	2,214	100.0	194	8.8	705	31.8	15	0.7	31	1.4	26	1.2	16	0.7	-	0.0
2001	619	100.0	105	17.0	134	21.6	18	2.9	-	0.0	40	6.5	54	8.7	1	0.2

구 분	기타 국가기관		구급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군		각급학교		출입국 관리기관		공직유관 단체		기 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6,142	9.0	22,251	32.6	13,700	20.1	1,392	2.0	1,803	2.6	118	0.2	542	0.8	1,141	1.7
2014	392	4.5	1,630	18.7	3,463	39.8	182	2.1	490	5.6	18	0.2	230	2.7	81	0.9
2013	315	4.2	1,688	22.6	2,728	36.6	141	1.9	412	5.5	23	0.3	179	2.4	45	0.6
2012	424	6.1	1,731	24.9	2,115	30.5	184	2.7	480	6.9	27	0.4	133	1.9	48	0.7
2011	530	9.8	1,360	25.1	1,555	28.7	132	2.4	199	3.7	40	0.7			27	0.5
2010	486	7.5	1,885	29.2	1,372	21.2	116	1.8	218	3.4	10	0.2			67	1.0
2009	452	8.6	2,027	38.4	490	9.3	96	1.8	4	0.1					567	10.7
2008	307	6.3	1,946	39.8	685	14.0	89	1.8							150	3.1
2007	327	6.5	2,004	39.6	586	11.6	80	1.6							146	2.9
2006	394	11.8	1,427	42.8	255	7.6	65	1.9							10	0.3
2005	525	12.5	1,918	45.7	234	5.6	64	1.5								
2004	1,553	33.6	1,835	39.7	126	2.7	60	1.3								
2003	201	6.6	1,686	55.4	57	1.9	73	2.4								
2002	124	5.6	1,026	46.3	25	1.1	52	2.3								
2001	112	18.1	88	14.2	9	1.5	58	9.4								

□ 주요 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393	234	139	147	157	189
도·감청 등	5	-	1	-	2	-
압수수색(신체)	53	16	-	2	1	2
집회, 시위	3	1	-	-	-	1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36	2	3	1	2	1
임의동행	6	2	-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3	2	1	1	3	2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123	18	10	3	1	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97	57	27	23	32	43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49	6	4	7	4	2
체포, 구속, 감금	144	12	9	6	13	14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831	54	34	65	54	61
공소권 남용	193	8	-	3	3	7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79	2	19	12	8	11
알권리/정보공개	43	7	-	2	7	3
생명권 침해	6	-	-	1	3	2
압수수색(주거) 등	6	-	1	-	1	4
인터넷	1	-	1	-	-	-
기타	395	47	29	21	23	31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4,189	1,582	1,107	1,221	1,330	1,540
불심검문/ 임의동행	395	61	18	7	19	23
도·감청 등	26	3	8	-	1	1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414	68	13	33	27	19
집회, 시위	325	34	35	5	20	23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481	74	45	26	34	5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9	9	11	1	3	12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3,870	465	286	280	348	347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493	351	214	236	246	299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658	66	44	71	61	64
체포, 구속, 감금	972	65	85	92	140	182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2,388	187	152	278	196	262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492	52	66	72	82	110
알권리/정보공개	50	8	7	2	4	5
생명권 침해	9	-	1	1	3	4
압수수색(주거) 등	48	-	18	7	14	9
종교의 자유	3	-	-	2	1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60	-	24	16	12	8
인터넷	2	-	-	-	1	1
기타	1,404	139	80	92	118	118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92	116	132	184	141	182
불심검문/ 임의동행	3	-	-	-	-	-
도·감청 등	6	1	2	-	-	-
압수수색(신체)	9	2	1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1	-	-	-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91	4	5	12	8	6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262	27	29	33	17	3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1	-	-	-	2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179	8	20	25	34	31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29	29	34	43	24	25
체포, 구속, 감금	19	2	2	3	2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30	1	4	8	4	12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	11	2	1	1	1	3
생명권 침해	121	3	6	5	5	7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95	13	11	36	19	46
압수수색(주거) 등	3	-	2	-	-	-
종교의 자유	6	-	1	2	1	2
인터넷	2	-	-	2	-	-
영창관련 인권침해	30	3	2	2	9	6
기타	192	20	12	12	17	9

<표 3-1-11> 구급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2,251	1,885	1,360	1,731	1,688	1,630
건강/의료	5,063	407	339	410	445	382
외부교통 권리제한	2,177	250	103	125	104	75
조사/징벌/계구	3,263	269	165	233	238	280
폭행/가혹행위	2,103	184	148	180	161	166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4,846	328	455	574	576	507
시설/환경	2,658	223	72	104	92	81
기타	2,141	224	78	105	72	139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700	1,372	1,555	2,115	2,728	3,463
불법/ 강제 수용	7,375	753	786	1,064	1,453	2,051
폭행/ 가혹행위	1,863	213	244	282	373	362
외부교통권 제한	1,113	123	134	217	270	256
의료조치 미흡	658	56	75	98	118	182
강제노동	218	29	14	43	52	38
인격권 침해	613	47	67	93	116	190
시설/ 환경	473	35	40	59	93	81
퇴원요청	690	61	126	146	116	137
기타	697	55	69	113	137	166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18	10	40	27	23	18
욕설/ 반말	2	-	1	-	-	1
폭행/ 가혹행위	11	-	4	2	2	3
출입국 제한	16	-	7	6	1	2
사생활 비밀 침해	3	-	1	-	-	2
적법절차 준수 위반	2	-	1	-	1	-
위법/ 부당한 처분	42	2	9	10	18	3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29	8	14	6	1	-
기타	13	-	3	3	-	7

<표 3-1-14> 각급 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803	218	199	480	412	490
인격권 침해	991	210	76	251	205	247
체벌	133	-	34	43	35	21
징계부당	125	1	12	49	30	33
기타	554	7	77	137	142	189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대		기타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보호시설	
누 계	18,792	100.0	146	0.8	488	2.6	227	1.2	136	0.7	3,324	17.7	2,434	12.9	38	0.2
2014	2,198	100.0	9	0.4	39	1.8	16	0.7	8	0.4	266	12.1	210	9.6	11	0.5
2013	2,496	100.0	9	0.4	44	1.7	15	0.6	12	0.5	357	14.3	198	8.0	4	0.2
2012	2,549	100.0	1	0.0	41	1.6	23	0.9	10	0.4	332	13.0	455	17.9	4	0.2
2011	1,803	100.0	7	0.4	38	2.1	15	0.8	19	1.1	223	12.4	283	15.7	4	0.2
2010	2,681	100.0	4	0.1	109	4.1	17	0.6	14	0.5	538	20.1	450	16.8	1	0.0
2009	1,685	100.0	12	0.7	56	3.3	16	0.9	11	0.7	269	16.0	184	10.9	6	0.4
2008	1,380	100.0	21	1.5	27	2.0	15	1.1	13	0.9	223	16.2	184	13.3	1	0.1
2007	1,159	100.0	14	1.2	23	2.0	2	0.2	25	2.2	227	19.6	140	12.1	2	0.2
2006	824	100.0	6	0.7	21	2.5	6	0.7	11	1.3	224	27.2	124	15.0	4	0.5
2005	1,081	100.0	11	1.0	50	4.6	47	4.3	10	0.9	398	36.8	126	11.7	1	0.1
2004	389	100.0	14	3.6	19	4.9	27	6.9	1	0.3	125	32.1	39	10.0	-	0.0
2003	358	100.0	26	7.3	5	1.4	26	7.3	-	0.0	81	22.6	23	6.4	-	0.0
2002	136	100.0	11	8.1	11	8.1	1	0.7	2	1.5	41	30.1	15	11.0	-	0.0
2001	53	100.0	1	1.9	5	9.4	1	1.9	-	0.0	20	37.7	3	5.7	-	0.0

구 분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누 계	2,071	11.0	1,317	7.0	4,360	23.2	1,252	6.7	391	2.1	1,420	7.6	80	0.4	1,108	5.9
2014	247	11.2	81	3.7	491	22.3	291	13.2	58	2.6	237	10.8	19	0.9	215	9.8
2013	253	10.1	88	3.5	509	20.4	251	10.1	90	3.6	445	17.8	18	0.7	203	8.1
2012	265	10.4	192	7.5	688	27.0	159	6.2	50	2.0	141	5.5	24	0.9	164	6.4
2011	167	9.3	120	6.7	461	25.6	153	8.5	40	2.2	160	8.9	19	1.1	94	5.2
2010	200	7.5	340	12.7	554	20.7	119	4.4	59	2.2	181	6.8			95	3.5
2009	224	13.3	103	6.1	483	28.7	76	4.5	22	1.3	119	7.1			104	6.2
2008	191	13.8	89	6.4	323	23.4	72	5.2	21	1.5	77	5.6			123	8.9
2007	198	17.1	67	5.8	288	24.8	67	5.8	20	1.7	22	1.9			64	5.5
2006	120	14.6	59	7.2	176	21.4	24	2.9	6	0.7	13	1.6			30	3.6
2005	107	9.9	79	7.3	202	18.7	15	1.4	18	1.7	10	0.9			7	0.6
2004	46	11.8	40	10.3	58	14.9	8	2.1	5	1.3	4	1.0			3	0.8
2003	40	11.2	47	13.1	96	26.8	7	2.0	1	0.3	3	0.8			3	0.8
2002	13	9.6	8	5.9	23	16.9	6	4.4	1	0.7	2	1.5			2	1.5
2001	-	0.0	4	7.5	8	15.1	4	7.5	-	0.0	6	11.3			1	1.9

<표 3-1-16> 사유²³⁾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신체조건		혼인 여부	
누계	18,792	100.0	578	3.1	141	0.7	8,336	44.4	1,305	6.9	1,700	9.1	119	0.6	324	1.7	15	0.1	261	1.4	86	0.5
2014	2,198	100.0	64	2.9	15	0.7	1,140	51.9	103	4.7	158	7.2	19	0.8	48	2.2	3	0.1	21	1.0	6	0.3
2013	2,496	100.0	64	2.6	11	0.4	1,312	52.6	142	5.7	146	5.9	13	0.5	35	1.4	-	0.0	31	1.2	5	0.2
2012	2,549	100.0	45	1.8	12	0.5	1,340	52.6	166	6.5	185	7.3	6	0.2	9	0.4	1	0.0	40	1.6	6	0.2
2011	1,803	100.0	35	1.9	10	0.6	886	49.1	146	8.1	127	7.0	10	0.6	27	1.5	1	0.1	19	1.1	5	0.3
2010	2,681	100.0	45	1.7	14	0.5	1,695	63.2	196	7.3	81	3.0	7	0.3	27	1.0	3	0.1	24	0.9	5	0.2
2009	1,685	100.0	83	4.9	14	0.8	725	43.0	138	8.2	91	5.4	5	0.3	16	0.9	3	0.2	23	1.4	7	0.4
2008	1,380	100.0	42	3.0	13	0.9	640	46.4	62	4.5	103	7.5	4	0.3	28	2.0	2	0.1	15	1.1	5	0.4
2007	1,159	100.0	50	4.3	14	1.2	256	22.1	108	9.3	117	10.1	9	0.8	38	3.3	1	0.1	20	1.7	3	0.3
2006	824	100.0	28	3.4	8	1.0	116	14.1	69	8.4	208	25.2	10	1.2	28	3.4	-	0.0	11	1.3	22	2.7
2005	1,081	100.0	53	4.9	11	1.0	121	11.2	87	8.0	297	27.5	23	2.1	19	1.8	-	0.0	45	4.2	9	0.8
2004	389	100.0	24	6.2	8	2.1	54	13.9	57	14.7	64	16.5	6	1.5	10	2.6	-	0.0	6	1.5	7	1.8
2003	358	100.0	33	9.2	5	1.4	18	5.0	24	6.7	75	20.9	2	0.6	19	5.3	1	0.3	4	1.1	4	1.1
2002	136	100.0	10	7.4	4	2.9	20	14.7	6	4.4	31	22.8	2	1.5	12	8.8	-	0.0	2	1.5	2	1.5
2001	53	100.0	2	3.8	2	3.8	13	24.5	1	1.9	17	32.1	3	5.7	8	15.1	-	0.0	-	0.0	-	0.0

구분	임신/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벌/학력		성희롱		기타	
누계	196	1.0	138	0.7	89	0.5	11	0.1	34	0.2	179	0.9	67	0.4	345	1.8	539	2.9	1,782	9.5	2,547	13.5
2014	14	0.6	15	0.7	18	0.8	2	0.1	-	0.0	13	0.6	11	0.5	28	1.3	36	1.6	235	10.7	249	11.3
2013	18	0.7	23	0.9	18	0.7	1	0.0	4	0.2	19	0.8	8	0.3	39	1.6	124	5.0	240	9.6	243	9.7
2012	27	1.1	8	0.3	1	0.0	1	0.0	2	0.1	20	0.8	15	0.6	34	1.3	47	1.8	228	8.9	356	14.0
2011	19	1.1	17	0.9	4	0.2	-	0.0	1	0.1	17	0.9	3	0.2	30	1.7	52	2.9	216	12.0	178	9.9
2010	39	1.5	8	0.3	12	0.5	4	0.2	1	0.0	13	0.5	6	0.2	41	1.5	40	1.5	210	7.8	210	7.8
2009	17	1.0	14	0.8	22	1.3	-	0.0	3	0.2	10	0.6	2	0.1	39	2.3	77	4.6	166	9.9	230	13.6
2008	14	1.0	10	0.7	7	0.5	-	0.0	3	0.2	16	1.2	3	0.2	19	1.4	23	1.7	151	10.9	220	15.9
2007	15	1.3	13	1.1	4	0.3	1	0.1	2	0.2	18	1.6	3	0.3	31	2.7	28	2.4	165	14.2	263	22.7
2006	9	1.1	8	1.0	1	0.1	-	0.0	2	0.2	13	1.6	4	0.5	30	3.6	24	2.9	107	13.0	126	15.3
2005	5	0.5	15	1.4	1	0.1	1	0.1	5	0.5	23	2.1	5	0.5	21	1.9	48	4.4	60	5.6	232	21.5
2004	4	1.0	4	1.0	-	0.0	-	0.0	-	0.0	7	1.8	1	0.3	7	1.8	12	3.1	1	0.3	117	30.1
2003	15	4.2	2	0.6	-	0.0	-	0.0	7	2.0	3	0.8	2	0.6	16	4.5	28	7.8	2	0.6	98	27.4
2002	-	0.0	-	0.0	1	0.7	-	0.0	3	2.2	6	4.4	3	2.2	8	5.9	-	0.0	1	0.7	25	18.4
2001	-	0.0	1	1.9	-	0.0	1	1.9	1	1.9	1	1.9	1	1.9	2	3.8	-	0.0	-	0.0	-	0.0

23) 법 제2조(정의)제3호

<표 3-1-17> 영역²⁴⁾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금 용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 계	18,792	5,868	1,095	1,232	319	79	219	673	204	6	218	168	567	1,088
2014	2,198	575	65	123	47	14	27	72	41	1	14	15	70	86
2013	2,496	617	56	158	41	9	15	46	27	2	30	11	53	169
2012	2,549	773	125	138	27	11	21	112	35	1	58	23	44	178
2011	1,803	480	75	114	28	7	14	57	16	-	14	16	49	90
2010	2,681	578	118	112	33	5	16	66	8	1	32	18	43	126
2009	1,685	532	162	91	15	7	12	45	13	-	27	21	41	98
2008	1,380	467	101	59	30	11	15	67	17	-	4	12	50	101
2007	1,159	498	124	98	27	6	20	51	13	1	17	12	58	71
2006	824	387	101	97	21	2	14	52	8	-	13	18	26	35
2005	1,081	503	90	148	17	6	36	50	12	-	3	10	45	86
2004	389	175	51	22	18	-	9	12	4	-	3	5	17	34
2003	358	209	21	54	14	-	11	26	4	-	3	6	61	9
2002	136	55	6	14	1	1	7	11	3	-	-	-	8	4
2001	53	19	-	4	-	-	2	6	3	-	-	1	2	1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훈련 기관	
누 계	7,246	2,643	3,282	580	533	186	22	1,104	1,034	70	4,574
2014	890	402	286	101	81	18	2	108	105	3	625
2013	969	377	449	40	83	20	-	106	98	8	804
2012	1,094	473	420	56	107	37	1	179	170	9	503
2011	768	440	180	64	57	23	4	82	76	6	473
2010	1,467	184	1,146	75	40	21	1	106	96	10	530
2009	659	292	201	84	61	18	3	122	116	6	372
2008	551	199	149	115	62	21	5	102	98	4	260
2007	288	124	110	17	22	15	-	103	96	7	270
2006	165	50	91	15	3	6	-	87	83	4	185
2005	270	87	151	9	13	5	5	56	51	5	252
2004	54	10	40	2	1	1	-	26	24	2	134
2003	33	2	29	-	1	-	1	17	14	3	99
2002	27	3	20	1	2	1	-	10	7	3	44
2001	11	-	10	1	-	-	-	-	-	-	23

24) 법 제2조(정의)제3호가목내지 다목

<표 3-1-18> 2014년 영역 및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합 계	2,198	575	65	123	47	14	27	72	41	1	14	15	70	86
성별	64	26	3	16	2	-	-	2	2	-	-	-	1	-
종교	15	12	2	3	-	-	-	-	-	-	-	-	4	3
장애	1,140	116	16	23	15	9	4	12	1	-	-	4	18	14
나이	103	70	18	31	2	2	-	3	1	-	1	5	6	1
사회적 신분	158	100	2	9	6	2	6	27	13	-	8	1	6	20
출신지역	19	14	2	10	-	1	-	1	-	-	-	-	-	-
출신국가	48	19	-	2	1	-	-	3	3	-	-	1	3	6
출신민족	3	2	-	1	-	-	-	-	-	-	-	-	1	-
용모/신체조건	21	14	3	7	-	-	-	-	-	-	-	-	4	-
혼인여부	6	4	1	-	1	-	-	-	-	-	-	1	1	-
임신/출산	14	13	-	1	3	-	1	-	1	-	-	1	3	3
가족상황	15	4	1	1	1	-	-	-	-	-	-	-	-	1
인종	18	3	1	-	-	-	-	-	-	-	-	-	2	-
피부색	2	-	-	-	-	-	-	-	-	-	-	-	-	-
사상/정치적의견	-	-	-	-	-	-	-	-	-	-	-	-	-	-
전과	13	7	-	4	-	-	-	1	-	-	-	-	1	1
성적지향	11	-	-	-	-	-	-	-	-	-	-	-	-	-
병력	28	10	3	1	1	-	1	-	-	-	-	-	3	1
학벌/학력	36	13	4	4	1	-	1	2	-	-	-	-	-	1
성희롱	235	13	-	1	2	-	-	-	-	-	-	1	5	4
기타	249	135	9	9	12	-	14	21	20	1	5	1	12	31

(단위 : 건)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수단	주거시설	토지	소계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합계	890	286	402	101	81	18	2	108	105	3	625
성별	17	7	6	1	3	-	-	11	10	1	10
종교	1	-	1	-	-	-	-	-	-	-	2
장애	716	229	327	95	50	14	1	47	46	1	261
나이	20	8	7	-	5	-	-	9	9	-	4
사회적신분	37	14	15	1	6	1	-	8	8	-	13
출신지역	2	-	1	-	-	-	1	-	-	-	3
출신국가	16	2	11	-	2	1	-	2	2	-	11
출신민족	1	-	1	-	-	-	-	-	-	-	-
용모/신체조건	3	-	2	-	-	1	-	3	3	-	1
혼인여부	1	-	-	-	1	-	-	1	1	-	-
임신/출산	-	-	-	-	-	-	-	1	1	-	-
가족상황	9	5	3	-	-	1	-	1	1	-	1
인종	7	-	-	-	7	-	-	-	-	-	8
피부색	-	-	-	-	-	-	-	-	-	-	2
사상/정치적의견	-	-	-	-	-	-	-	-	-	-	-
전과	2	-	2	-	-	-	-	-	-	-	4
성적지향	3	1	2	-	-	-	-	-	-	-	8
병력	12	3	9	-	-	-	-	3	3	-	3
학벌/학력	4	2	2	-	-	-	-	8	8	-	11
성희롱	3	-	2	-	1	-	-	-	-	-	219
기타	36	15	11	4	6	-	-	14	13	1	64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²⁵⁾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검찰	경찰	구급시설	군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누계	1,782	15	22	15	15	45	75	6	215	70	605	291	60	236	18	94
2014	235	1	2	1	1	7	12	1	36	5	67	45	6	37	1	13
2013	240	-	2	1	5	4	9	-	25	6	42	37	18	69	4	18
2012	228	-	3	3	-	3	10	-	21	12	120	24	5	9	8	10
2011	216	2	1	3	4	7	5	-	17	6	64	32	7	57	5	6
2010	210	1	4	1	-	7	11	-	24	12	78	38	9	18	-	7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 금 자 용 자	정 년	퇴 직	해 고	기 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누계	1,782	406	30	11	6	1	0	1	2	0	1	9	25	320	23	11	1	1	8	2	0	17	13	4	1,336
2014	235	13		1	2							1	5	4	3	2			1						219
2013	240	14	-	1	-	-	-	2	-	-	-	1	10	2	-	-	-	2	-	-	-	-	-	-	224
2012	228	106	-	1	1	-	-	-	-	-	1	6	97	1	1	-	-	-	-	-	1	1	-	-	120
2011	216	40	-	3	1	-	-	-	-	-	3	4	29	5	2	1	-	2	-	-	3	3	-	-	168
2010	210	50	3	-	-	-	-	-	-	-	-	1	46	6	3	-	1	1	1	-	4	4	-	-	150

25) 법 제2조(정의)제3호라목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여 성	남 성	미등록
누 계	피해자	1,782	737	110	935
	피진정인	1,782	52	792	938
2014	피해자	235	148	22	65
	피진정인	235	19	189	27
2013	피해자	240	169	30	41
	피진정인	240	19	200	21
2012	피해자	228	146	9	73
	피진정인	228	9	198	21
2011	피해자	216	143	29	44
	피진정인	216	3	54	159
2010	피해자	210	43	8	159
	피진정인	210	2	38	170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1,782	35	265	234	156	58	15	1,019
2014	235	3	48	57	31	17	3	76
2013	240	10	67	67	38	14	4	40
2012	228	11	59	37	30	15	3	73
2011	216	5	62	53	36	7	3	50
2010	210	1	6	6	6	1	-	190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²⁶⁾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접수건수	7,683	1,695	886	1,340	1,312	1,140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누 계	7,683	2,439	1,527	548	943	944	61	332	889
2014	1,140	402	290	93	112	104	13	55	71
2013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2012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2011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2010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표 3-1-25>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7,683	507	434	4,705	294	147	965	631
2014	1,140	94	66	676	42	19	123	120
2013	1,312	75	45	706	30	41	303	112
2012	1,340	82	96	808	36	57	111	150
2011	886	64	62	487	77	3	105	88
2010	1,695	82	55	1,269	26	13	176	74

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사인간침해		회사		기타단체		재산권		법령제도 개선		입법/재판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누 계	2,171	100.0	665	30.6	10	0.5	4	0.2	71	3.3	623	28.7	7	0.3	791	36.4
2014	18	100.0	10	55.5	2	11.1	-	0.0	2	11.1	1	5.6	1	5.6	2	11.1
2013	103	100.0	92	89.3	1	1.0	-	0.0	-	0.0	1	1.0	1	1.0	8	7.7
2012	87	100.0	63	72.4	2	2.3	2	2.3	2	2.3	-	0.0	2	2.3	16	18.4
2011	129	100.0	10	7.8	5	3.9	2	1.6	2	1.6	6	4.7	3	2.3	101	78.3
2010	27	100.0	17	63.0	-	0.0	-	0.0	-	0.0	3	11.1	-	0.0	7	25.9
2009	18	100.0	11	61.1	-	0.0	-	0.0	-	0.0	2	11.1	-	0.0	5	27.8
2008	37	100.0	27	73.0	-	0.0	-	0.0	-	0.0	4	10.8	-	0.0	6	16.2
2007	48	100.0	41	85.4	-	0.0	-	0.0	-	0.0	1	2.1	-	0.0	6	12.5
2006	28	100.0	21	75.0	-	0.0	-	0.0	1	3.6	4	14.3	-	0.0	2	7.1
2005	337	100.0	61	18.1	-	0.0	-	0.0	6	1.8	86	25.5	-	0.0	184	54.6
2004	352	100.0	73	20.7	-	0.0	-	0.0	6	1.7	151	42.9	-	0.0	122	34.7
2003	416	100.0	57	13.7	-	0.0	-	0.0	12	2.9	188	45.2	-	0.0	159	38.2
2002	440	100.0	114	25.9	-	0.0	-	0.0	23	5.2	165	37.5	-	0.0	138	31.4
2001	131	100.0	68	51.9	-	0.0	-	0.0	17	13.0	11	8.4	-	0.0	35	26.7

제3절 진정 처리결과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표 3-2-1-1> 진정 처리결과²⁷⁾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계	86,180	4,994	27	5	26	2,877	92	100	18	10	1,837	2	81,013	53,917	1,175	25,487	434	173	
2014	10,338	491	3	-	1	138	20	4	1	-	324	-	9,769	6,463	57	3,249		78	
2013	10,430	576	-	-	2	214	2	3	2	-	353	-	9,812	6,292	29	3,491		42	
2012	9,587	480	3	-	2	325	-	3	2	1	144	-	9,054	5,791	24	3,239		53 ²⁸⁾	
2011	7,095	532	4	-	2	317	7	4	2	-	196	-	6,563	3,843	40	2,648	32		
2010	8,398	538	3	-	1	301	6	3	1	1	222	-	7,860	5,157	153	2,457	93		
2009	6,788	534	2	-	2	313	3	5	-	1	208	-	6,254	3,868	88	2,226	72		
2008	6,466	427	-	-	2	301	12	32	1	2	75	2	6,039	3,977	113	1,884	65		
2007	6,064	392	1	-	3	259	12	17	2	-	98	-	5,672	4,105	138	1,387	42		
2006	4,206	355	-	-	10	279	17	2	1	-	46	-	3,851	2,622	81	1,122	26		
2005	5,350	317	2	-	-	217	4	6	2	1	85	-	5,033	3,376	155	1,452	50		
2004	5,804	181	2	-	1	110	4	2	4	-	58	-	5,623	4,028	154	1,387	54		
2003	3,797	130	5	2	-	88	4	3	-	2	26	-	3,667	2,766	116	785	-		
2002	1,856	40	1	3	-	15	1	16	-	2	2	-	1,816	1,629	27	160	-		
2001	1	1	1	-	-	-	-	-	-	-	-	-	-	-	-	-	-	-	

27)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제1항 및 제2항, 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법 제40조(합의의 권고),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2011.12.8. 폐지), 제26조(합의)(이하 같음)

2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의2 제4항(2011.12.8. 신설)에 의거 2012년 통계작성시부터 조사중지를 종결건수로 보지 않음(이하 같음)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계	25,487	100.0	10,308	40.4	10,650	41.8	4,529
2014	3,249	100.0	1,356	41.7	1,398	43.0	495	15.3
2013	3,491	100.0	1,362	39.0	1,394	40.0	735	21.0
2012	3,239	100.0	1,223	37.7	1,246	38.5	770	23.8
2011	2,648	100.0	1,036	39.1	987	37.3	625	23.6
2010	2,457	100.0	994	40.5	1,042	42.4	421	17.1
2009	2,226	100.0	856	38.5	977	43.9	393	17.7
2008	1,884	100.0	739	39.2	834	44.3	311	16.5
2007	1,387	100.0	588	42.4	576	41.5	223	16.1
2006	1,122	100.0	399	35.6	581	51.8	142	12.7
2005	1,452	100.0	634	43.7	645	44.4	173	11.9
2004	1,387	100.0	651	46.9	593	42.8	143	10.3
2003	785	100.0	386	49.2	328	41.8	71	9.0
2002	160	100.0	84	52.5	49	30.6	27	16.9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계	53,917	100.0	9,282	17.2	1,101	2.0	1,093	2.0	1,946	3.6	3,463	6.4	81	0.2	1,458	2.7	34,490	64.0	617	1.1	302	0.6	84	0.2
2014	6,463	100.0	830	12.8	53	0.8	128	2.0	167	2.6	213	3.3	7	0.1	110	1.7	4,861	75.2	56	0.9	3	0.1	35	0.5
2013	6,292	100.0	1,114	17.7	78	1.2	163	2.6	125	2.0	264	4.2	6	0.1	222	3.5	4,235	67.3	79	1.3	2	0.0	4	0.1
2012	5,791	100.0	897	15.5	93	1.6	137	2.4	134	2.3	265	4.6	19	0.3	201	3.5	3,991	68.9	47	0.8	4	0.1	3	0.1
2011	3,843	100.0	548	14.3	83	2.2	82	2.1	108	2.8	169	4.4	6	0.2	102	2.7	2,684	69.8	58	1.5	3	0.1	-	0.0
2010	5,157	100.0	802	15.6	85	1.6	114	2.2	189	3.7	267	5.2	6	0.1	172	3.3	3,433	66.6	58	1.1	29	0.6	2	0.0
2009	3,868	100.0	475	12.3	65	1.7	79	2.0	117	3.0	231	6.0	7	0.2	96	2.5	2,736	70.7	54	1.4	2	0.1	6	0.2
2008	3,977	100.0	643	16.2	97	2.4	96	2.4	119	3.0	239	6.0	13	0.3	150	3.8	2,556	64.3	43	1.1	19	0.5	2	0.1
2007	4,105	100.0	536	13.1	118	2.9	79	1.9	148	3.6	287	7.0	7	0.2	184	4.5	2,658	64.8	58	1.4	13	0.3	17	0.4
2006	2,622	100.0	345	13.2	73	2.8	50	1.9	81	3.1	215	8.2	1	0.0	80	3.1	1,706	65.1	52	2.0	8	0.3	11	0.4
2005	3,376	100.0	551	16.3	117	3.5	66	2.0	165	4.9	352	10.4	3	0.1	106	3.1	1,915	56.7	79	2.3	19	0.6	3	0.1
2004	4,028	100.0	1,712	42.5	41	1.0	38	0.9	157	3.9	298	7.4	1	0.0	32	0.8	1,709	42.4	22	0.6	18	0.5	-	0.0
2003	2,766	100.0	324	11.7	150	5.4	44	1.6	255	9.2	337	12.2	4	0.1	1	0.0	1,553	56.2	10	0.4	87	3.2	1	0.0
2002	1,629	100.0	505	31.0	48	2.9	17	1.0	181	11.1	326	20.0	1	0.1	2	0.1	453	27.8	1	0.1	95	5.8	-	0.0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누계	86,180	109.7	4,994	176.6	81,186	105.6
2014	10,338	88.3	491	107.6	9,847	87.4
2013	10,430	96.1	576	122.9	9,854	94.5
2012	9,587	135.3	480	259.1	9,107	128.8
2011	7,095	117.4	532	189.8	6,563	111.5
2010	8,398	85.8	538	131.1	7,860	82.7
2009	6,788	97.2	534	128.1	6,254	94.5
2008	6,466	104.1	427	207.1	6,039	96.8
2007	6,064	90.0	392	212.8	5,672	81.5
2006	4,206	122.6	355	200.8	3,851	115.4
2005	5,350	110.1	317	203.9	5,033	104.2
2004	5,804	124.0	181	269.2	5,623	119.3
2003	3,797	180.2	130	256.5	3,667	177.4
2002	1,856	162.4	40	106.3	1,816	163.7
2001	1	31.0	1	31.0	-	-

※ 미인용 종결건수는 조사중지 포함 건수임.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65,880	3,175	25	5	2	1,726	82	92	18	10	1,213	2	62,603	41,343	1,054	19,854	352	102	
2014	8,099	329	3	-	-	76	18	2	1	-	229	-	7,720	5,176	49	2,495		50	
2013	7,453	360	-	-	-	113	1	2	2	-	242	-	7,072	4,543	18	2,511		21	
2012	6,938	264	2	-	-	155	-	1	2	1	103	-	6,643	4,392	22	2,229		31	
2011	5,158	260	3	-	1	130	3	4	2	-	117	-	4,898	2,935	35	1,908	20		
2010	6,264	331	3	-	-	198	3	3	1	1	122	-	5,933	3,907	130	1,831	65		
2009	5,108	365	2	-	1	235	3	5	-	1	118	-	4,743	2,974	78	1,637	54		
2008	5,288	308	-	-	-	213	12	30	1	2	48	2	4,980	3,177	99	1,644	60		
2007	4,757	239	1	-	-	147	12	16	2	-	61	-	4,518	3,152	116	1,215	35		
2006	3,250	207	-	-	-	164	17	2	1	-	23	-	3,043	2,019	70	933	21		
2005	4,132	244	2	-	-	156	4	6	2	1	73	-	3,888	2,378	147	1,318	45		
2004	4,931	145	2	-	-	79	4	2	4	-	54	-	4,786	3,306	148	1,280	52		
2003	3,137	94	5	2	-	55	4	3	-	2	23	-	3,043	2,210	116	717	-		
2002	1,364	28	1	3	-	5	1	16	-	2	-	-	1,336	1,174	26	136	-		
2001	1	1	1	-	-	-	-	-	-	-	-	-	-	-	-	-	-	-	

<표 3-2-2-2> 2014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계	8,099	329	3	-	-	76	18	2	1	-	229	-	7,720	5,176	49	2,495	50
검찰	158	3	-	-	-	3	-	-	-	-	-	-	154	95	7	52	1
경찰	1,318	45	-	-	-	7	-	-	-	-	38	-	1,243	614	16	613	30
국정원	13	-	-	-	-	-	-	-	-	-	-	-	13	12	-	1	-
지방 자치단체	423	10	-	-	-	6	-	-	-	-	4	-	412	257	1	154	1
사법기관	70	2	-	-	-	2	-	-	-	-	-	-	66	53	-	13	2
입법기관	4	-	-	-	-	-	-	-	-	-	-	-	4	3	-	1	-
기타 국가기관	360	6	-	-	-	4	-	-	-	-	2	-	352	244	-	108	2
구급시설	1,556	8	2	-	-	4	-	-	-	-	2	-	1,547	926	18	603	1
다수인 보호시설	3,248	212	1	-	-	36	17	2	1	-	155	-	3,029	2,315	4	710	7
군	138	12	-	-	-	5	-	-	-	-	7	-	123	89	2	32	3
각급학교	495	22	-	-	-	7	-	-	-	-	15	-	470	332	1	137	3
출입국관리 기관	12	1	-	-	-	-	1	-	-	-	-	-	11	8	-	3	-
공직 유관단체	231	8	-	-	-	2	-	-	-	-	6	-	223	162	-	61	-
기타	73	-	-	-	-	-	-	-	-	-	-	-	73	66	-	7	-

<표 3-2-2-3> 2014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8,099	329	3	-	-	76	18	2	1	-	229	-	7,720	5,176	49	2,495	50
인간의존엄성 (10조)	3,088	92	1	-	-	20	-	1	1	-	69	-	2,984	1,849	18	1,117	12
평등권 (11조)	159	4	-	-	-	2	-	-	-	-	2	-	155	111	1	43	-
신체의자유 (12조)	3,347	178	1	-	-	37	17	1	-	-	122	-	3,150	2,171	20	959	19
형벌불소급 (13조)	7	1	-	-	-	-	-	-	-	-	1	-	6	2	-	4	-
거주이전의자유 (14조)	22	1	-	-	-	-	-	-	-	-	1	-	21	11	-	10	-
직업선택의자유 (15조)	25	-	-	-	-	-	-	-	-	-	-	-	25	17	-	8	-
주거의자유 (16조)	19	2	-	-	-	-	-	-	-	-	2	-	17	11	1	5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17조)	417	21	-	-	-	10	-	-	-	-	11	-	388	211	1	176	8
통신의자유 (18조)	259	17	-	-	-	4	-	-	-	-	13	-	242	181	-	61	-
양심의자유 (19조)	19	-	-	-	-	-	-	-	-	-	-	-	18	11	-	7	1
종교의자유 (20조)	31	1	-	-	-	-	-	-	-	-	1	-	30	22	-	8	-
언론의자유 (21조)	62	3	-	-	-	1	-	-	-	-	2	-	57	33	-	24	2
학문예술회의자유 (22조)	6	-	-	-	-	-	-	-	-	-	-	-	6	5	-	1	-
기타	638	9	1	-	-	2	1	-	-	-	5	-	621	541	8	72	8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건수	100.0	건수	100.0	건수	100.0	건수	100.0
누계	19,854	100.0	9,333	47.0	8,613	43.4	1,908	9.6
2014	2,495	100.0	1,185	47.5	1,114	44.6	196	7.9
2013	2,511	100.0	1,213	48.3	1,154	46.0	144	5.7
2012	2,229	100.0	1,068	47.9	1,005	45.1	156	7.0
2011	1,908	100.0	898	47.1	709	37.2	301	15.8
2010	1,831	100.0	874	47.7	826	45.1	131	7.2
2009	1,637	100.0	775	47.3	727	44.4	135	8.2
2008	1,644	100.0	697	42.4	741	45.1	206	12.5
2007	1,215	100.0	565	46.5	487	40.1	163	13.4
2006	933	100.0	373	40.0	436	46.7	124	13.3
2005	1,318	100.0	610	46.3	565	42.9	143	10.8
2004	1,280	100.0	637	49.8	521	40.7	122	9.5
2003	717	100.0	368	51.3	286	39.9	63	8.8
2002	136	100.0	70	51.5	42	30.9	24	17.6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계	41,343	100.0	5,940	14.4	926	2.2	866	2.1	1,605	3.9	2,790	6.7	56	0.1	1,101	2.7	27,352	66.2	383	0.9	254	0.6	70	0.2
2014	5,176	100.0	615	11.9	37	0.7	107	2.1	136	2.6	154	3.0	5	0.1	86	1.7	3,966	76.6	41	0.8	1	0.0	28	0.5
2013	4,543	100.0	644	14.2	64	1.4	119	2.6	107	2.3	190	4.2	5	0.1	157	3.5	3,194	70.3	59	1.3	1	0.0	3	0.1
2012	4,392	100.0	685	15.6	86	2.0	116	2.6	104	2.4	198	4.5	14	0.3	173	3.9	2,974	67.7	36	0.8	4	0.1	2	0.0
2011	2,935	100.0	370	12.6	74	2.5	58	2.0	92	3.1	130	4.4	4	0.1	77	2.6	2,096	71.4	34	1.2	-	0.0	-	0.0
2010	3,907	100.0	450	11.5	80	2.1	98	2.5	156	4.0	220	5.6	5	0.1	138	3.5	2,691	68.9	41	1.1	27	0.7	1	0.0
2009	2,974	100.0	285	9.6	59	2.0	64	2.2	101	3.4	189	6.4	5	0.2	72	2.4	2,164	72.8	31	1.0	1	0.0	3	0.1
2008	3,177	100.0	463	14.6	87	2.7	85	2.7	92	2.9	216	6.8	10	0.3	124	3.9	2,046	64.4	34	1.1	18	0.6	2	0.1
2007	3,152	100.0	359	11.4	101	3.2	54	1.7	137	4.3	251	8.0	1	0.0	141	4.5	2,032	64.5	47	1.5	13	0.4	16	0.5
2006	2,019	100.0	237	11.7	64	3.2	32	1.6	73	3.6	178	8.8	-	0.0	49	2.4	1,347	66.7	24	1.2	4	0.2	11	0.5
2005	2,378	100.0	173	7.3	85	3.6	47	2.0	136	5.7	291	12.2	2	0.1	64	2.7	1,539	64.7	23	1.0	15	0.6	3	0.1
2004	3,306	100.0	1,375	41.6	21	0.6	30	0.9	126	3.8	240	7.3	-	0.0	18	0.5	1,477	44.7	9	0.3	10	0.3	-	0.0
2003	2,210	100.0	85	3.9	129	5.8	42	1.9	185	8.4	253	11.5	4	0.2	1	0.0	1,437	65.0	4	0.2	69	3.1	1	0.0
2002	1,174	100.0	199	17.0	39	3.3	14	1.2	160	13.6	280	23.9	1	0.1	1	0.1	389	33.1	-	0.0	91	7.8	-	0.0

<표 3-2-2-6>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본부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54,263	2,466	25	5	2	1,426	71	87	17	10	821	2	51,704	35,082	895	15,406	321	93
2014	6,000	175	3	-	-	42	12	2	1	-	115	-	5,778	3,915	32	1,831		47
2013	5,391	190	-	-	-	65	1	1	2	-	121	-	5,183	3,493	12	1,678		18
2012	4,983	133	2	-	-	85	-	1	2	1	42	-	4,822	3,295	17	1,510		28
2011	3,712	164	3	-	1	86	-	2	1	-	71	-	3,548	2,183	23	1,323	19	
2010	4,582	259	3	-	-	146	2	2	1	1	104	-	4,323	3,028	96	1,161	38	

<표 3-2-2-7>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산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3,945	277	-	-	-	129	4	2	-	-	142	-	3,663	2,036	27	1,596	4	5
2014	710	65	-	-	-	18	1	-	-	-	46	-	644	378	1	265		1
2013	691	52	-	-	-	13	-	1	-	-	38	-	636	320	1	315		3
2012	731	51	-	-	-	18	-	-	-	-	33	-	679	395	-	284		1
2011	426	27	-	-	-	17	3	-	-	-	7	-	399	219	1	179	-	
2010	487	36	-	-	-	27	-	1	-	-	8	-	451	269	1	177	4	

<표 3-2-2-8>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광주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4,013	243	-	-	-	99	3	3	1	-	137	-	3,769	2,018	44	1,705	2	1
2014	713	40	-	-	-	10	1	-	-	-	29	-	672	390	5	277		1
2013	720	56	-	-	-	13	-	-	-	-	43	-	664	336	4	324		-
2012	716	48	-	-	-	28	-	-	-	-	20	-	668	390	2	276		-
2011	530	37	-	-	-	15	-	2	1	-	19	-	493	230	1	262	-	
2010	492	27	-	-	-	18	1	-	-	-	8	-	465	240	8	215	2	

<표 3-2-2-9>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구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627	189	-	-	-	72	4	-	-	-	113	-	3,435	2,175	88	1,147	25	3
2014	644	49	-	-	-	6	4	-	-	-	39	-	594	461	11	122		1
2013	651	62	-	-	-	22	-	-	-	-	40	-	589	394	1	194		-
2012	508	32	-	-	-	24	-	-	-	-	8	-	474	312	3	159		2
2011	490	32	-	-	-	12	-	-	-	-	20	-	458	303	10	144	1	
2010	703	9	-	-	-	7	-	-	-	-	2	-	694	370	25	278	21	

<표 3-2-2-10>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전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2	-	-	-	-	-	-	-	-	-	-	-	32	32	-	-		-
2014	32	-	-	-	-	-	-	-	-	-	-	-	32	32	-	-		-

<표 3-2-2-1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평균 소요일수	본 부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종결 건수	평균 소요일수								
누 계	65,880	103.2	54,263	111.3	3,945	65.5	4,013	58.5	3,627	72.9	32	18.4
2014	8,099	83.9	6,000	95.4	710	50.6	713	54.2	644	49.0	32	18.4
2013	7,453	86.6	5,391	98.6	691	61.8	720	60.6	651	41.9		
2012	6,938	109.2	4,983	126.0	731	68.8	716	64.6	508	65.8		
2011	5,158	106.8	3,712	119.2	426	79.5	530	67.1	490	80.0		
2010	6,264	79.4	4,582	79.1	487	54.6	492	60.6	703	111.5		

<표 3-2-2-12> 2014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검,경,군)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614	60	-	-	15	-	-	-	-	45	1,520	798	25	697	34
불심검문/임의동행	26	3	-	-	-	-	-	-	-	3	22	14	-	8	1
도·감청 등	2	-	-	-	-	-	-	-	-	-	2	2	-	-	-
압수수색(신체)	18	2	-	-	1	-	-	-	-	1	16	7	-	9	-
집회, 시위	28	-	-	-	-	-	-	-	-	-	28	9	1	18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34	-	-	-	-	-	-	-	-	-	34	11	-	23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2	-	-	-	-	-	-	-	-	-	12	5	-	7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29	13	-	-	4	-	-	-	-	9	307	129	3	175	9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29	9	-	-	1	-	-	-	-	8	312	148	6	158	8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70	1	-	-	-	-	-	-	-	1	69	30	-	39	-
체포, 구속, 감금	152	15	-	-	4	-	-	-	-	11	136	76	2	58	1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277	5	-	-	1	-	-	-	-	4	269	165	4	100	3
공소권 남용	5	-	-	-	-	-	-	-	-	-	5	4	1	-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03	3	-	-	1	-	-	-	-	2	96	54	1	41	4
알권리/정보공개	12	-	-	-	-	-	-	-	-	-	11	7	-	4	1
생명권 침해	13	-	-	-	-	-	-	-	-	-	13	9	-	4	-
압수수색(주거) 등	14	1	-	-	-	-	-	-	-	1	12	5	1	6	1
부당한 제도 및 처분	28	1	-	-	1	-	-	-	-	-	26	23	-	3	1
종교의 자유	3	-	-	-	-	-	-	-	-	-	3	1	-	2	-
유치장/영창 관련 인권침해	17	3	-	-	1	-	-	-	-	2	14	7	-	7	-
인터넷	1	-	-	-	-	-	-	-	-	-	1	1	-	-	-
기타	141	4	-	-	1	-	-	-	-	3	132	91	6	35	5

□ 검찰

<표 3-2-2-13>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332	81	2	64	1	1	3	10	2,248	1,550	46	628	24	3
2014	158	3	-	3	-	-	-	-	154	95	7	52		1
2013	170	4	-	3	-	-	-	1	164	107	1	56		2
2012	161	4	-	1	-	-	1	2	157	89	4	64		-
2011	129	6	-	5	-	-	-	1	123	62	2	58	1	
2010	223	5	-	3	-	-	-	2	218	137	10	68	3	

<표 3-2-2-14>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178	1,549	188	25	14	187	410	1	112	539	12	61	1	628	336	255	37
2014	147	94	25	-	-	10	10	-	7	41	1	-	1	52	37	15	-
2013	163	107	23	5	-	9	7	-	14	49	-	-	-	56	40	14	2
2012	153	89	15	1	-	7	9	-	17	39	1	-	-	64	30	33	1
2011	120	62	4	1	2	4	4	-	4	41	2	-	-	58	27	31	-
2010	205	137	12	4	2	21	17	-	19	55	5	2	-	68	28	37	3

<표 3-2-2-15> 2014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증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계	158	3	-	-	3	-	-	-	-	-	154	95	7	52	1
도·감청 등	1	-	-	-	-	-	-	-	-	-	1	1	-	-	-
압수수색(신체)	2	-	-	-	-	-	-	-	-	-	2	-	-	2	-
집회, 시위	-	-	-	-	-	-	-	-	-	-	-	-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	-	-	-	-	-	-	-	-	-	-	-	-	-	-
임의동행	-	-	-	-	-	-	-	-	-	-	-	-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	-	-	-	-	-	-	-	-	3	2	-	1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	-	-	-	-	-	-	-	-	-	3	1	-	2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9	-	-	-	-	-	-	-	-	-	39	21	-	18	-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1	-	-	-	-	-	-	-	-	-	1	-	-	1	-
체포, 구속, 감금	12	1	-	-	1	-	-	-	-	-	11	4	-	7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50	-	-	-	-	-	-	-	-	-	49	35	4	10	1
공소권 남용	5	-	-	-	-	-	-	-	-	-	5	4	1	-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1	1	-	-	1	-	-	-	-	-	10	6	-	4	-
알권리/정보공개	4	-	-	-	-	-	-	-	-	-	4	3	-	1	-
생명권 침해	1	-	-	-	-	-	-	-	-	-	1	1	-	-	-
압수수색(주거) 등	4	-	-	-	-	-	-	-	-	-	4	2	1	1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22	1	-	-	1	-	-	-	-	-	21	15	1	5	-

□ 경찰

<표 3-2-2-16>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3,646	1,022	12	567	8	61	4	5	365	12,565	7,344	184	4,909	128	59
2014	1,318	45	-	7	-	-	-	-	38	1,243	614	16	613		30
2013	1,453	80	-	32	-	-	2	-	46	1,362	663	9	690		11
2012	1,243	66	-	51	-	1	-	-	14	1,159	584	6	569		18
2011	992	59	2	42	-	1	-	-	14	933	449	8	469	7	
2010	1,432	104	2	58	2	1	-	-	41	1,328	860	31	417	20	

<표 3-2-2-17>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2,253	7,335	430	181	121	534	920	9	285	4,674	80	101	9	4,909	3,332	1,284	293
2014	1,227	614	65	3	6	29	30	-	19	452	10	-	-	613	432	143	38
2013	1,353	663	65	21	5	40	47	1	68	398	18	-	-	690	459	189	42
2012	1,153	583	67	10	8	34	40	2	39	376	5	2	1	569	385	156	28
2011	918	449	32	9	7	28	35	1	14	312	11	-	-	469	359	92	18
2010	1,277	859	33	22	18	64	62	-	44	599	14	3	1	417	274	123	20

<표 3-2-2-18> 2014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증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318	45	-	-	7	-	-	-	-	38	1,243	614	16	613	30
불심검문/임의동행	26	3	-	-	-	-	-	-	-	3	22	14	-	8	1
도·감청 등	1	-	-	-	-	-	-	-	-	-	1	1	-	-	-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	16	2	-	-	1	-	-	-	-	1	14	7	-	7	-
집회, 시위	28	-	-	-	-	-	-	-	-	-	28	9	1	18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34	-	-	-	-	-	-	-	-	-	34	11	-	23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	-	-	-	-	-	-	-	-	-	9	3	-	6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00	9	-	-	1	-	-	-	-	8	283	110	3	170	8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64	6	-	-	1	-	-	-	-	5	251	115	4	132	7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51	-	-	-	-	-	-	-	-	-	51	18	-	33	-
체포, 구속, 감금	140	14	-	-	3	-	-	-	-	11	125	72	2	51	1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222	4	-	-	-	-	-	-	-	4	216	128	-	88	2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86	2	-	-	-	-	-	-	-	2	80	43	1	36	4
알권리/정보공개	7	-	-	-	-	-	-	-	-	-	6	3	-	3	1
생명권 침해	5	-	-	-	-	-	-	-	-	-	5	4	-	1	-
압수수색(주거) 등	10	1	-	-	-	-	-	-	-	1	8	3	-	5	1
종교의 자유	-	-	-	-	-	-	-	-	-	-	-	-	-	-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10	1	-	-	1	-	-	-	-	-	9	4	-	5	-
인터넷	1	-	-	-	-	-	-	-	-	-	1	1	-	-	-
기타	108	3	-	-	-	-	-	-	-	3	100	68	5	27	5

□ 군

<표 3-2-2-19>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315	87	4	1	52	1	2	4	1	22	1,223	964	10	245	4	5
2014	138	12	-	-	5	-	-	-	-	7	123	89	2	32		3
2013	165	9	-	-	6	-	-	-	-	3	155	95	-	60		1
2012	166	10	-	-	8	-	-	2	-	-	155	117	1	37		1
2011	110	7	-	-	1	-	1	1	-	4	103	84	1	18	-	
2010	145	7	1	-	4	-	-	1	1	-	138	117	2	19	-	

<표 3-2-2-20>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209	961	70	11	18	176	88	6	20	562	5	5	3	245	106	84	55
2014	121	89	9	2	2	16	1	-	3	55	1	-	-	32	13	9	10
2013	155	94	16	-	3	9	1	1	5	57	2	-	1	60	31	24	5
2012	154	117	10	1	3	15	1	2	2	83	-	-	-	37	15	17	5
2011	102	84	4	1	3	8	1	1	1	65	-	-	-	18	7	6	5
2010	136	117	5	1	4	6	10	-	2	89	-	-	-	19	7	7	5

<표 3-2-2-21> 2014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38	12	-	-	5	-	-	-	-	7	123	89	2	32	3
도·감청 등	-	-	-	-	-	-	-	-	-	-	-	-	-	-	-
압수수색(신체)	-	-	-	-	-	-	-	-	-	-	-	-	-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5	1	-	-	1	-	-	-	-	-	4	2	-	2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26	4	-	-	3	-	-	-	-	1	21	18	-	3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	-	-	-	-	-	-	-	-	-	-	-	-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6	3	-	-	-	-	-	-	-	3	22	12	2	8	1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8	1	-	-	-	-	-	-	-	1	17	12	-	5	-
체포, 구속, 감금	-	-	-	-	-	-	-	-	-	-	-	-	-	-	-
피의사실 유폐/ 개인정보 관리 등	6	-	-	-	-	-	-	-	-	-	6	5	-	1	-
알권리 침해 / 정보공개	1	-	-	-	-	-	-	-	-	-	1	1	-	-	-
생명권 침해	7	-	-	-	-	-	-	-	-	-	7	4	-	3	-
부당한 제도 및 처분	28	1	-	-	1	-	-	-	-	-	26	23	-	3	1
압수수색(주거) 등	-	-	-	-	-	-	-	-	-	-	-	-	-	-	-
종교의 자유	3	-	-	-	-	-	-	-	-	-	3	1	-	2	-
영창관련 인권침해	7	2	-	-	-	-	-	-	-	2	5	3	-	2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11	-	-	-	-	-	-	-	-	-	11	8	-	3	-

□ 구금시설

<표 3-2-2-2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21,834	363	4	1	245	1	16	8	88	21,467	13,100	700	7,578	89	4
2014	1,556	8	2	-	4	-	-	-	2	1,547	926	18	603	/	1
2013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
2012	1,772	13	-	-	5	-	-	-	8	1,756	1,043	6	707	/	3
2011	1,449	40	1	-	27	-	2	1	9	1,409	808	18	582	1	/
2010	1,917	20	-	-	9	-	1	-	10	1,897	1,109	69	701	18	/

<표 3-2-2-23>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계	20,678	13,070	1,097	276	368	220	649	8	164	10,131	147	10	30	7,578	3,399	3,634	545
2014	1,529	916	163	9	40	21	41	-	10	625	7	-	10	603	278	303	22
2013	1,650	916	154	11	42	17	59	-	4	611	17	1	-	734	362	355	17
2012	1,750	1,043	230	22	35	13	74	2	32	614	20	1	-	707	322	356	29
2011	1,390	808	122	29	18	11	48	1	20	548	11	-	-	582	278	277	27
2010	1,810	1,109	129	22	43	16	68	1	14	804	12	-	-	701	350	312	39

<표 3-2-2-24> 구급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1,834	363	4	1	245	1	16	8	88	21,467	13,100	700	7,578	89	4	
2014	소계	1,556	8	2	-	4	-	-	-	2	1,547	926	18	603	/	1
	본부	753	4	2	-	2	-	-	-	-	748	477	3	268	/	1
	부산	289	3	-	-	1	-	-	-	2	286	148	1	137	/	-
	광주	243	1	-	-	1	-	-	-	-	242	122	4	116	/	-
	대구	252	-	-	-	-	-	-	-	-	252	160	10	82	/	-
	대전	19	-	-	-	-	-	-	-	-	19	19	-	-	/	-
2013	소계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
	본부	782	-	-	-	-	-	-	-	-	782	496	1	285	/	-
	부산	319	2	-	-	-	-	-	-	2	317	146	1	170	/	-
	광주	296	2	-	-	2	-	-	-	-	294	118	2	174	/	-
	대구	265	3	-	-	1	-	-	-	2	262	156	1	105	/	-
2012	소계	1,772	13	-	-	5	-	-	-	8	1,756	1,043	6	707	/	3
	본부	803	2	-	-	2	-	-	-	-	798	520	3	275	/	3
	부산	384	9	-	-	1	-	-	-	8	375	177	-	198	/	-
	광주	355	2	-	-	2	-	-	-	-	353	198	1	154	/	-
	대구	230	-	-	-	-	-	-	-	-	230	148	2	80	/	-
2011	소계	1,449	40	1	-	27	-	2	1	9	1,409	808	18	582	/	1
	본부	688	21	1	-	20	-	-	-	-	667	408	6	252	/	1
	부산	210	2	-	-	-	-	-	-	2	208	105	1	102	/	-
	광주	245	12	-	-	7	-	2	1	2	233	108	1	124	/	-
	대구	306	5	-	-	-	-	-	-	5	301	187	10	104	/	-
2010	소계	1,917	20	-	-	9	-	1	-	10	1,897	1,109	69	701	/	18
	본부	865	5	-	-	4	-	-	-	1	860	517	37	303	/	3
	부산	244	11	-	-	3	-	1	-	7	233	164	1	65	/	3
	광주	262	2	-	-	-	-	-	-	2	260	159	8	93	/	-
	대구	546	2	-	-	2	-	-	-	-	544	269	23	240	/	12

<표 3-2-2-25> 2014년 구급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556	8	2	-	4	-	-	-	2	1,547	926	18	603	1
건강/의료	379	-	-	-	-	-	-	-	-	379	204	1	174	-
외부교통 관리제한	73	-	-	-	-	-	-	-	-	73	41	-	32	-
조사/징벌/계구	275	-	-	-	-	-	-	-	-	275	137	5	133	-
폭행/가혹행위	155	1	1	-	-	-	-	-	-	154	82	10	62	-
처우관계/ 인격권 침해	482	4	-	-	2	-	-	-	2	477	311	1	165	1
시설/환경	68	-	-	-	-	-	-	-	-	68	51	-	17	-
기타	124	3	1	-	2	-	-	-	-	121	100	1	20	-

□ 다수인보호시설

<표 3-2-2-26>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3,001	1,085	3	-	471	67	5	2	537	11,901	8,230	51	3,574	46	15
2014	3,248	212	1	-	36	17	2	1	155	3,029	2,315	4	710		7
2013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2012	2,153	144	2	-	76	-	-	-	66	2,004	1,462	2	540		5
2011	1,373	133	-	-	46	3	-	-	84	1,240	889	1	349	1	
2010	1,242	118	-	-	74	1	1	-	42	1,124	731	11	370	12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1,804	8,219	245	80	231	137	159	21	133	7,159	54	-	11	3,574	1,204	2,025	345
2014	3,025	2,305	29	3	49	19	32	4	18	2,135	16	-	10	710	240	439	31
2013	2,421	1,780	48	6	63	10	28	3	18	1,592	12	-	1	640	204	396	40
2012	2,002	1,462	37	6	57	15	22	7	40	1,273	5	-	-	540	184	300	56
2011	1,238	889	37	15	19	20	13	-	22	757	6	-	-	349	130	186	33
2010	1,101	731	21	11	16	20	12	2	16	624	9	-	-	370	124	207	39

<표 3-2-2-28>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3,001	1,085	3	-	471	67	5	2	537	11,901	8,230	51	3,574	46	15
2014	소계	3,248	212	1	-	36	17	2	1	155	3,029	2,315	4	710	7
	본부	1,971	62	1	-	4	11	2	1	43	1,905	1,520	2	383	4
	부산	416	62	-	-	17	1	-	-	44	353	225	-	128	1
	광주	460	39	-	-	9	1	-	-	29	420	260	1	159	1
	대구	390	49	-	-	6	4	-	-	39	340	299	1	40	1
	대전	11	-	-	-	-	-	-	-	-	11	11	-	-	-
2013	소계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본부	1,474	61	-	-	8	1	-	-	52	1,413	1,156	-	257	-
	부산	372	50	-	-	13	-	1	-	36	319	174	-	145	3
	광주	421	54	-	-	11	-	-	-	43	367	215	2	150	-
	대구	383	59	-	-	21	-	-	-	38	324	236	-	88	-
2012	소계	2,153	144	2	-	76	-	-	-	66	2,004	1,462	2	540	5
	본부	1,170	24	2	-	9	-	-	-	13	1,144	890	-	254	2
	부산	347	42	-	-	17	-	-	-	25	304	218	-	86	1
	광주	361	46	-	-	26	-	-	-	20	315	192	1	122	-
	대구	275	32	-	-	24	-	-	-	8	241	162	1	78	2
2011	소계	1,373	133	-	-	46	3	-	-	84	1,240	889	1	349	1
	본부	689	56	-	-	9	-	-	-	47	633	537	1	95	-
	부산	216	25	-	-	17	3	-	-	5	191	114	-	77	-
	광주	284	25	-	-	8	-	-	-	17	259	122	-	137	-
	대구	184	27	-	-	12	-	-	-	15	157	116	-	40	1
2010	소계	1,242	118	-	-	74	1	1	-	42	1,124	731	11	370	12
	본부	624	61	-	-	27	-	1	-	33	563	450	9	104	-
	부산	237	25	-	-	24	-	-	-	1	212	102	-	109	1
	광주	228	25	-	-	18	1	-	-	6	203	80	-	121	2
	대구	153	7	-	-	5	-	-	-	2	146	99	2	36	9

<표 3-2-2-29> 2014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계	각하	이송	기각	
합계	3,248	212	1	-	36	17	2	1	155	3,029	2,315	4	710	7
불법/강제수용	1,895	116	1	-	25	11	-	-	79	1,777	1,346	-	431	2
폭행/가혹행위	363	19	-	-	1	4	1	-	13	342	252	3	87	2
외부교통권 제한	247	20	-	-	4	-	-	-	16	226	186	-	40	1
의료조치 미흡	162	8	-	-	4	-	-	-	4	154	111	-	43	-
강제노동	32	2	-	-	-	1	-	-	1	30	24	1	5	-
인격권 침해	168	21	-	-	1	-	1	-	19	146	116	-	30	1
시설/환경	82	6	-	-	1	-	-	1	4	76	54	-	22	-
퇴원요청	126	8	-	-	-	-	-	-	8	118	93	-	25	-
기타	173	12	-	-	-	1	-	-	11	160	133	-	27	1

□ 출입국관리기관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징계 권고	권고 합의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09	5	1	-	1	-	-	-	3	104	77	-	27	-	-
2014	12	1	1	-	-	-	-	-	-	11	8	-	3	/	-
2013	25	2	-	-	1	-	-	-	1	23	15	-	8	/	-
2012	22	-	-	-	-	-	-	-	-	22	14	-	8	/	-
2011	50	2	-	-	-	-	-	-	2	48	40	-	8	-	/

<표 3-2-2-31>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04	77	11	1	1	-	2	-	5	56	1	-	-	27	12	13	2
2014	11	8	-	-	-	-	-	-	-	8	-	-	-	3	-	3	-
2013	23	15	4	-	1	-	1	-	1	7	1	-	-	8	4	4	-
2012	22	14	7	1	-	-	-	-	3	3	-	-	-	8	3	4	1
2011	48	40	-	-	-	-	1	-	1	38	-	-	-	8	5	2	1

<표 3-2-2-32> 2014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징계 권고	권고 합의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2	1	1	-	-	-	-	-	-	11	8	-	3	-	
욕설/반말	1	-	-	-	-	-	-	-	-	1	1	-	-	-	
폭행/가혹행위	1	1	1	-	-	-	-	-	-	-	-	-	-	-	
출입국 제한	2	-	-	-	-	-	-	-	-	2	2	-	-	-	
사생활 비밀 침해	2	-	-	-	-	-	-	-	-	2	2	-	-	-	
적법절차 준수 위반	-	-	-	-	-	-	-	-	-	-	-	-	-	-	
위법/부당한 처분	3	-	-	-	-	-	-	-	-	3	1	-	2	-	
부작위/거부등 소극적 처분	-	-	-	-	-	-	-	-	-	-	-	-	-	-	
기타	3	-	-	-	-	-	-	-	-	3	2	-	1	-	

□ 각급학교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조정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647	77	1	27	1	48	1,565	1,188	2	372	3	5
2014	495	22	-	7	-	15	470	332	1	137		3
2013	423	22	-	5	1	16	400	308	-	92		1
2012	409	15	-	6	-	9	393	301	1	91		1
2011	156	2	1	1	-	-	154	119	-	33	2	
2010	161	14	-	6	-	8	147	127	-	19	1	

<표 3-2-2-34>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60	1,186	146	16	11	17	57	3	38	895	3	-	2	372	121	170	81
2014	469	330	36	2	6	6	14	1	8	257	-	-	2	137	33	72	32
2013	400	308	50	2	3	5	15	-	17	216	-	-	-	92	28	41	23
2012	392	301	42	7	1	2	20	1	9	217	2	-	-	91	34	38	19
2011	152	119	8	5	1	3	7	1	2	91	1	-	-	33	16	12	5
2010	146	127	10	-	-	1	1	-	2	113	-	-	-	19	10	7	2

<표 3-2-2-35> 2014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조정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495	22	-	7	-	15	470	332	1	137	3
인격권 침해	260	14	-	3	-	11	245	168	1	76	1
체벌	25	-	-	-	-	-	24	17	-	7	1
징계부당	39	-	-	-	-	-	39	28	-	11	-
기타	171	8	-	4	-	4	162	119	-	43	1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8,205	1,792	10	2	8	1,129	24	619	16,342	10,606	110	5,547	79	71
2014	2,224	162	2	-	2	62	1	95	2,034	1,273	7	754		28
2013	2,858	216	1	-	1	101	2	111	2,621	1,631	11	979		21
2012	2,559	216	-	1	2	170	2	41	2,321	1,312	2	1,007		22
2011	1,898	272	4	1	-	187	1	79	1,626	872	5	737	12	
2010	2,108	207	3	-	-	103	1	100	1,901	1,224	23	626	28	
2009	1,660	169	-	-	-	78	1	90	1,491	875	9	589	18	
2008	1,143	119	-	-	2	88	2	27	1,024	765	14	240	5	
2007	1,253	152	-	-	1	111	3	37	1,101	901	22	171	7	
2006	899	148	-	-	-	115	10	23	751	552	11	183	5	
2005	837	62	-	-	-	55	-	7	775	650	2	121	2	
2004	368	26	-	-	-	21	1	4	342	263	3	74	2	
2003	296	33	-	-	-	30	-	3	263	215	-	48	-	
2002	102	10	-	-	-	8	-	2	92	73	1	18	-	

<표 3-2-3-2> 2014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224	162	2	-	2	62	1	95	2,034	1,273	7	754	28
성별	73	3	-	-	-	3	-	-	70	45	-	25	-
종교	18	-	-	-	-	-	-	-	17	13	-	4	1
장애	1,097	79	2	-	-	15	1	61	1,014	560	5	449	4
나이	119	7	-	-	-	4	-	3	112	61	1	50	-
사회적신분	172	3	-	-	-	2	-	1	168	118	-	50	1
출신지역	10	1	-	-	-	1	-	-	9	7	-	2	-
출신국가	54	1	-	-	-	-	-	1	53	35	-	18	-
출신민족	2	-	-	-	-	-	-	-	1	-	-	1	1
용모/ 신체조건	29	-	-	-	-	-	-	-	25	19	-	6	4
혼인여부	7	-	-	-	-	-	-	-	7	5	-	2	-
임신/출산	12	-	-	-	-	-	-	-	12	9	-	3	-
가족상황	27	4	-	-	-	4	-	-	23	14	-	9	-
인종	17	-	-	-	-	-	-	-	17	10	-	7	-
피부색	3	-	-	-	-	-	-	-	3	3	-	-	-
사상/ 정치적의견	1	-	-	-	-	-	-	-	1	1	-	-	-
전과	13	-	-	-	-	-	-	-	12	10	-	2	1
성적지향	13	2	-	-	-	2	-	-	11	8	-	3	-
병력	33	1	-	-	-	-	-	1	31	25	-	6	1
학벌/학력	36	1	-	-	-	1	-	-	35	22	-	13	-
성희롱	236	48	-	-	2	21	-	25	179	141	1	37	9
기타	252	12	-	-	-	9	-	3	234	167	-	67	6

<표 3-2-3-3> 2014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224	162	2	-	2	62	1	95	2,034	1,273	7	754	28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612	35	-	-	-	18	-	17	562	381	1	180	15
	모집	68	5	-	-	-	4	-	1	60	29	-	31	3
	채용	131	4	-	-	-	2	-	2	124	83	1	40	3
	배치	50	1	-	-	-	-	-	1	49	38	-	11	-
	교육	15	2	-	-	-	1	-	1	13	9	-	4	-
	승진	21	-	-	-	-	-	-	-	21	13	-	8	-
	임금지급	72	5	-	-	-	3	-	2	67	57	-	10	-
	임금외 금품지급	38	2	-	-	-	2	-	-	35	23	-	12	1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20	1	-	-	-	1	-	-	19	6	-	13	-
	퇴직	16	-	-	-	-	-	-	-	16	13	-	3	-
	해고	72	6	-	-	-	1	-	5	65	48	-	17	1
기타	109	9	-	-	-	4	-	5	93	62	-	31	7	
재화등 공급 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849	42	-	-	-	9	1	32	804	409	1	394	3
	용역의 공급이용	372	17	-	-	-	6	-	11	353	195	1	157	2
	재화의 공급이용	322	16	-	-	-	3	-	13	305	142	-	163	1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53	1	-	-	-	-	1	-	52	31	-	21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81	7	-	-	-	-	-	7	74	29	-	45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9	1	-	-	-	-	-	1	18	11	-	7	-
	토지의 공급이용	2	-	-	-	-	-	-	-	2	1	-	1	-
교육 시설등 이용 차별	소계	122	11	-	-	-	5	-	6	110	65	-	45	1
	교육시설의 이용	117	10	-	-	-	4	-	6	106	63	-	43	1
	직업훈련기관 의 이용	5	1	-	-	-	1	-	-	4	2	-	2	-
기타	641	74	2	-	2	30	-	40	558	418	5	135	9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5,547	100.0	951	17.1	1,989	35.9	2,607
2014	754	100.0	171	22.7	284	37.7	299	39.6
2013	979	100.0	148	15.1	240	24.5	591	60.4
2012	1,007	100.0	155	15.4	239	23.7	613	60.9
2011	737	100.0	136	18.5	277	37.6	324	44.0
2010	626	100.0	120	19.2	216	34.5	290	46.3
2009	589	100.0	81	13.8	250	42.4	258	43.8
2008	240	100.0	42	17.5	93	38.8	105	43.8
2007	171	100.0	23	13.5	88	51.5	60	35.1
2006	183	100.0	25	13.7	140	76.5	18	9.8
2005	121	100.0	21	17.4	75	62.0	25	20.7
2004	74	100.0	5	6.8	51	68.9	18	24.3
2003	48	100.0	14	29.2	30	62.5	4	8.3
2002	18	100.0	10	55.6	6	33.3	2	11.1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10,606	100.0	1,962	18.5	83	0.8	222	2.1	260	2.5	547	5.2	25	0.2	331	3.1	6,941	65.4	195	1.8	26	0.3	14	0.1
2014	1,273	100.0	206	16.2	15	1.2	20	1.6	31	2.4	59	4.6	2	0.1	24	1.9	892	70.1	15	1.2	2	0.1	7	0.6
2013	1,631	100.0	361	22.1	14	1.0	44	2.7	17	1.0	72	4.4	1	0.1	65	4.0	1,035	63.4	20	1.1	1	0.1	1	0.1
2012	1,312	100.0	145	11.1	4	0.3	21	1.6	29	2.2	67	5.1	5	0.4	18	1.4	1,011	77.1	11	0.8	-	0.0	1	0.1
2011	872	100.0	147	16.9	7	0.8	24	2.8	16	1.8	39	4.5	2	0.2	24	2.8	586	67.2	24	2.8	3	0.3	-	0.0
2010	1,224	100.0	332	27.1	2	0.2	16	1.3	33	2.7	47	3.8	1	0.1	34	2.8	739	60.4	17	1.4	2	0.2	1	0.1
2009	875	100.0	174	19.9	4	0.5	15	1.7	15	1.7	42	4.8	2	0.2	24	2.7	572	65.4	23	2.6	1	0.1	3	0.3
2008	765	100.0	150	19.6	7	0.9	11	1.4	27	3.5	23	3.0	3	0.4	25	3.3	509	66.5	9	1.2	1	0.1	-	0.0
2007	901	100.0	132	14.7	14	1.6	25	2.8	11	1.2	35	3.9	6	0.7	43	4.8	623	69.1	11	1.2	-	0.0	1	0.1
2006	552	100.0	77	13.9	6	1.1	18	3.3	6	1.1	35	6.3	1	0.2	27	4.9	356	64.5	22	4.0	4	0.7	-	0.0
2005	650	100.0	130	20.0	7	1.1	18	2.8	15	2.3	46	7.1	1	0.2	38	5.8	350	53.8	43	6.6	2	0.3	-	0.0
2004	263	100.0	44	16.7	1	0.4	7	2.7	8	3.0	23	8.7	1	0.4	9	3.4	167	63.5	-	0.0	3	1.1	-	0.0
2003	215	100.0	39	18.1	2	0.9	1	0.5	46	21.4	52	24.2	-	0.0	-	0.0	69	32.1	-	0.0	6	2.8	-	0.0
2002	73	100.0	25	34.2	-	0.0	2	2.7	6	8.2	7	9.6	-	0.0	-	0.0	32	43.8	-	0.0	1	1.4	-	0.0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합 계	18,205	132.6	1,792	208.7	16,413	124.3
2014	2,224	104.8	162	130.5	2,062	102.8
2013	2,858	122.7	216	175.8	2,642	118.3
2012	2,559	206.6	216	372.4	2,343	191.3
2011	1,898	147.5	272	230.6	1,626	133.6
2010	2,108	105.4	207	140.8	1,901	101.5
2009	1,660	127.7	169	150.6	1,491	125.1
2008	1,143	99.6	119	190.7	1,024	89.0
2007	1,253	102.6	152	219.2	1,101	86.5
2006	899	156.2	148	210.2	751	145.5
2005	837	114.4	62	216.0	775	106.2
2004	368	139.6	26	247.7	342	131.4
2003	296	139.1	33	248.8	263	125.4
2002	102	162.9	10	189.2	92	160.1

※ 미인용 종결건수는 조사중지 포함 건수임

□ 성별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567	53	-	-	-	50	-	3	514	357	2	144	11	-
2014	73	3	-	-	-	3	-	-	70	45	-	25		-
2013	56	2	-	-	-	2	-	-	54	35	-	19		-
2012	36	3	-	-	-	3	-	-	33	17	-	16		-
2011	40	2	-	-	-	2	-	-	38	20	-	17	1	
2010	67	5	-	-	-	4	-	1	62	30	1	24	7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501	357	49	3	7	25	16	1	7	247	1	1	-	144	22	91	31
2014	70	45	8	1	-	1	1	1	1	32	-	-	-	25	6	14	5
2013	54	35	3	1	-	-	-	-	1	29	1	-	-	19	2	12	5
2012	33	17	2	-	1	-	-	-	-	14	-	-	-	16	2	10	4
2011	37	20	4	-	-	1	1	-	1	13	-	-	-	17	3	6	8
2010	54	30	5	-	-	-	3	-	1	21	-	-	-	24	6	16	2

<표 3-2-3-9> 2014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증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73	3	-	-	-	3	-	-	70	45	-	25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34	2	-	-	-	2	-	-	32	24	-	8	-
	모집	5	2	-	-	-	2	-	-	3	1	-	2	-
	채용	17	-	-	-	-	-	-	-	17	13	-	4	-
	배치	5	-	-	-	-	-	-	-	5	4	-	1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2	-	-	-	-	-	-	-	2	2	-	-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	1	1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2	-	-	-	-	-	-	-	2	1	-	1	-
	기타	2	-	-	-	-	-	-	-	2	2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15	-	-	-	-	-	-	-	15	8	-	7	-
	용역의 공급 이용	5	-	-	-	-	-	-	-	5	3	-	2	-
	재화의 공급 이용	5	-	-	-	-	-	-	-	5	2	-	3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4	-	-	-	-	-	-	-	4	2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5	1	-	-	-	1	-	-	14	5	-	9	-
	교육시설의 이용	13	1	-	-	-	1	-	-	12	3	-	9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2	-	-	-	-	-	-	-	2	2	-	-	-
기타	9	-	-	-	-	-	-	-	9	8	-	1	-	

□ 임신 또는 출산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92	24	-	-	-	13	-	11	168	128	-	38	2	-
2014	12	-	-	-	-	-	-	-	12	9	-	3		-
2013	21	2	-	-	-	1	-	1	19	16	-	3		-
2012	26	-	-	-	-	-	-	-	26	17	-	9		-
2011	20	4	-	-	-	3	-	1	16	12	-	3	1	
2010	41	3	-	-	-	-	-	3	38	24	-	13	1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66	128	4	-	6	13	9	-	2	94	-	-	-	38	7	23	8
2014	12	9	-	-	1	-	1	-	-	7	-	-	-	3	2	-	1
2013	19	16	-	-	-	-	-	-	-	16	-	-	-	3	-	3	-
2012	26	17	-	-	-	-	2	-	-	15	-	-	-	9	4	5	-
2011	15	12	2	-	1	-	3	-	-	6	-	-	-	3	-	1	2
2010	37	24	1	-	3	-	1	-	-	19	-	-	-	13	1	10	2

<표 3-2-3-12> 2014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2	-	-	-	-	-	-	-	12	9	-	3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1	-	-	-	-	-	-	11	8	-	3	-
	모집	-	-	-	-	-	-	-	-	-	-	-	-
	채용	1	-	-	-	-	-	-	1	1	-	-	-
	배치	2	-	-	-	-	-	-	2	1	-	1	-
	교육	-	-	-	-	-	-	-	-	-	-	-	-
	승진	1	-	-	-	-	-	-	1	1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1	1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1	-	-	-	-	-	-	1	1	-	-	-
	해고	2	-	-	-	-	-	-	2	1	-	1	-
	기타	3	-	-	-	-	-	-	3	2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	-	-	-	-	-	-	-	-	-	-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1	1	-	-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1	1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혼인 여부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85	4	-	-	-	4	-	-	80	64	-	16	-	1
2014	7	-	-	-	-	-	-	-	7	5	-	2	/	-
2013	3	-	-	-	-	-	-	-	3	3	-	-	/	-
2012	9	-	-	-	-	-	-	-	8	6	-	2	/	1
2011	3	-	-	-	-	-	-	-	3	1	-	2	/	-
2010	5	-	-	-	-	-	-	-	5	1	-	4	/	-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80	64	8	1	2	2	2	-	-	49	-	-	-	16	5	3	8
2014	7	5	1	1	-	-	-	-	-	3	-	-	-	2	2	-	-
2013	3	3	-	-	1	-	-	-	-	2	-	-	-	-	-	-	-
2012	8	6	2	-	-	-	2	-	-	2	-	-	-	2	1	-	1
2011	3	1	-	-	-	-	-	-	-	1	-	-	-	2	1	-	1
2010	5	1	-	-	-	-	-	-	-	1	-	-	-	4	-	1	3

<표 3-2-3-15> 2014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7	-	-	-	-	-	-	-	7	5	-	2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3	3	-	-	-
	모집	1	-	-	-	-	-	-	1	1	-	-	-
	채용	-	-	-	-	-	-	-	-	-	-	-	-
	배치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1	-	-	-	-	-	-	1	1	-	-	-
	해고	1	-	-	-	-	-	-	1	1	-	-	-
	기타	-	-	-	-	-	-	-	-	-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3	2	-	1	-
	용역의 공급 이용	2	-	-	-	-	-	-	2	2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1	-	-	1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1	-	-	1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1	-	-	1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나이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292	154	-	-	-	128	1	25	1,135	772	1	359	3	3
2014	119	7	-	-	-	4	-	3	112	61	1	50	/	-
2013	157	8	-	-	-	6	-	2	147	90	-	57	/	2
2012	148	7	-	-	-	6	-	1	140	103	-	37	/	1
2011	170	17	-	-	-	13	-	4	153	67	-	85	1	/
2010	186	13	-	-	-	9	-	4	173	105	-	66	2	/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131	772	65	7	8	12	30	3	21	621	5	-	-	359	108	96	155
2014	111	61	9	-	1	-	2	-	1	47	1	-	-	50	15	17	18
2013	147	90	3	-	-	-	3	-	1	80	3	-	-	57	18	23	16
2012	140	103	3	-	1	1	3	-	1	94	-	-	-	37	16	8	13
2011	152	67	3	-	1	1	-	-	4	57	1	-	-	85	23	19	43
2010	171	105	16	-	-	1	12	-	2	74	-	-	-	66	20	15	31

<표 3-2-3-18> 2014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19	7	-	-	-	4	-	3	112	61	1	50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89	3	-	-	-	1	-	2	86	44	1	41	-
	모집	21	1	-	-	-	1	-	-	20	9	-	11	-
	채용	40	-	-	-	-	-	-	-	40	17	1	22	-
	배치	4	-	-	-	-	-	-	-	4	4	-	-	-
	교육	2	-	-	-	-	-	-	-	2	1	-	1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3	1	-	-	-	-	-	1	2	1	-	1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	1	1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1	-	-	-	-	-	-	-	1	1	-	-	-
	퇴직	5	-	-	-	-	-	-	-	5	3	-	2	-
	해고	7	1	-	-	-	-	-	1	6	4	-	2	-
	기타	5	-	-	-	-	-	-	-	5	3	-	2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17	-	-	-	-	-	-	-	17	10	-	7	-
	용역의 공급 이용	6	-	-	-	-	-	-	-	6	4	-	2	-
	재화의 공급 이용	6	-	-	-	-	-	-	-	6	3	-	3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5	-	-	-	-	-	-	-	5	3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7	4	-	-	-	3	-	1	3	2	-	1	-
	교육시설의 이용	7	4	-	-	-	3	-	1	3	2	-	1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6	-	-	-	-	-	-	-	6	5	-	1	-	

□ 인종 등29)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432	21	-	-	-	14	-	7	409	281	7	116	5	2
2014	76	1	-	-	-	-	-	1	74	48	-	26	/	1
2013	45	1	-	-	-	-	-	1	44	39	-	5	/	-
2012	22	1	-	-	-	1	-	-	20	14	-	6	/	1
2011	25	3	-	-	-	1	-	2	22	12	-	8	2	/
2010	50	2	-	-	-	1	-	1	48	31	-	17	-	/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397	280	84	4	3	10	16	-	26	136	1	-	1	116	21	47	48
2014	74	48	15	1	1	5	3	-	-	23	-	-	-	26	2	11	13
2013	44	39	22	-	-	1	1	-	1	14	-	-	-	5	1	3	1
2012	20	14	3	-	-	-	2	-	1	7	1	-	-	6	1	4	1
2011	20	12	2	-	-	-	1	-	2	7	-	-	-	8	4	2	2
2010	48	31	4	-	-	-	-	-	9	18	-	-	-	17	2	6	9

29) 인종 등 이라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말함

<표 3-2-3-21> 2014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76	1	-	-	-	-	-	-	1	74	48	-	26	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6	1	-	-	-	-	-	1	24	18	-	6	1
	모집	1	-	-	-	-	-	-	-	1	-	-	1	-
	채용	5	-	-	-	-	-	-	-	5	3	-	2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3	-	-	-	-	-	-	-	3	3	-	-	-
	임금외 금품 지급	3	-	-	-	-	-	-	-	3	3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1	-	-	-	-	-	-	-	1	1	-	-	-
	해고	6	-	-	-	-	-	-	-	5	4	-	1	1
	기타	6	1	-	-	-	-	-	-	5	3	-	2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6	-	-	-	-	-	-	-	26	9	-	17	-
	용역의 공급 이용	14	-	-	-	-	-	-	-	14	7	-	7	-
	재화의 공급 이용	3	-	-	-	-	-	-	-	3	-	-	3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8	-	-	-	-	-	-	-	8	2	-	6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	1	1	-	-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	1	1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23	-	-	-	-	-	-	-	23	20	-	3	-	

□ 용모·신체조건

<표 3-2-3-22>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계	259	30	-	-	-	27	-	3	225	167	1	54	3	4
2014	29	-	-	-	-	-	-	-	25	19	-	6		4
2013	30	-	-	-	-	-	-	-	30	22	-	8		-
2012	34	2	-	-	-	2	-	-	32	25	-	7		-
2011	20	3	-	-	-	1	-	2	17	9	-	8		
2010	28	6	-	-	-	6	-	-	22	11	1	10		

<표 3-2-3-23>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계	221	167	12	1	3	1	1	-	12	134	3	-	-	54	21	18	15
2014	25	19	2	-	-	-	-	-	4	13	-	-	-	6	5	1	-
2013	30	22	3	1	-	1	-	-	1	15	1	-	-	8	4	2	2
2012	32	25	2	-	-	-	-	-	-	23	-	-	-	7	2	1	4
2011	17	9	1	-	-	-	1	-	-	7	-	-	-	8	4	3	1
2010	21	11	2	-	1	-	-	-	-	8	-	-	-	10	2	7	1

<표 3-2-3-24> 2014년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계	29	-	-	-	-	-	-	-	25	19	-	6	4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0	-	-	-	-	-	-	17	13	-	4	3
	모집	4	-	-	-	-	-	-	2	2	-	-	2
	채용	9	-	-	-	-	-	-	8	7	-	1	1
	배치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1	-	-	-	-	-	-	1	-	-	1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해고	4	-	-	-	-	-	-	4	3	-	1	-
기타	2	-	-	-	-	-	-	2	1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3	3	-	-	-
	용역의 공급 이용	2	-	-	-	-	-	-	2	2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1	1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4	-	-	-	-	-	-	3	2	-	1	1
	교육시설의 이용	4	-	-	-	-	-	-	3	2	-	1	1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2	-	-	-	-	-	-	2	1	-	1	-	

□ 학력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534	33	-	-	-	28	-	5	498	292	5	198	3	3
2014	36	1	-	-	-	1	-	-	35	22	-	13		-
2013	130	4	-	-	-	4	-	-	124	110	1	13		2
2012	41	1	-	-	-	1	-	-	39	28	-	11		1
2011	59	3	-	-	-	2	-	1	56	21	-	34	1	
2010	40	6	-	-	-	3	-	3	34	8	1	24	1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490	291	40	2	1	4	-	-	29	204	9	2	1	198	20	50	128
2014	35	22	5	-	-	-	-	-	4	12	1	-	-	13	2	6	5
2013	123	110	5	-	-	2	-	-	19	83	1	-	-	13	3	9	1
2012	39	28	6	-	-	-	-	-	-	22	-	-	-	11	2	4	5
2011	55	21	2	-	-	-	-	-	-	19	-	-	-	34	-	4	30
2010	32	8	3	-	-	-	-	-	1	4	-	-	-	24	2	2	20

<표 3-2-3-27> 2014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36	1	-	-	-	1	-	-	35	22	-	13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3	1	-	-	-	1	-	-	12	6	-	6	-
	모집	4	-	-	-	-	-	-	-	4	2	-	2	-
	채용	6	1	-	-	-	1	-	-	5	3	-	2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1	-	-	-	-	-	-	-	1	-	-	1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1	-	-	-	-	-	-	-	1	-	-	1	-
재화등 공급 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	3	1	-	2	-
	용역의 공급 이용	1	-	-	-	-	-	-	-	1	1	-	-	-
	재화의 공급 이용	2	-	-	-	-	-	-	-	2	-	-	2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9	-	-	-	-	-	-	-	9	7	-	2	-
	교육시설의 이용	9	-	-	-	-	-	-	-	9	7	-	2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1	-	-	-	-	-	-	-	11	8	-	3	-	

□ 병력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증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증지	
누 계	339	30	-	-	-	18	-	12	303	228	-	74	1	6
2014	33	1	-	-	-	-	-	1	31	25	-	6	/	1
2013	43	3	-	-	-	1	-	2	35	28	-	7	/	5
2012	27	3	-	-	-	1	-	2	24	18	-	6	/	-
2011	34	6	-	-	-	3	-	3	28	17	-	11	-	/
2010	50	2	-	-	-	1	-	1	48	34	-	14	-	/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302	228	19	-	4	7	5	-	3	190	-	-	-	74	21	37	16
2014	31	25	4	-	-	-	1	-	-	20	-	-	-	6	2	2	2
2013	35	28	2	-	-	-	-	-	2	24	-	-	-	7	3	3	1
2012	24	18	-	-	-	-	1	-	-	17	-	-	-	6	3	2	1
2011	28	17	-	-	-	-	-	-	1	16	-	-	-	11	1	10	-
2010	48	34	4	-	-	1	-	-	-	29	-	-	-	14	3	6	5

<표 3-2-3-30> 2014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33	1	-	-	-	-	-	-	1	31	25	-	6	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1	1	-	-	-	-	-	1	9	8	-	1	1
	모집	2	-	-	-	-	-	-	-	1	1	-	-	1
	채용	3	-	-	-	-	-	-	-	3	2	-	1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1	-	-	-	-	-	-	-	1	1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2	1	-	-	-	-	-	1	1	1	-	-	-	
기타	2	-	-	-	-	-	-	-	2	2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14	-	-	-	-	-	-	-	14	11	-	3	-
	용역의 공급 이용	10	-	-	-	-	-	-	-	10	8	-	2	-
	재화의 공급 이용	2	-	-	-	-	-	-	-	2	2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4	-	-	-	-	-	-	-	4	4	-	-	-
	교육시설의 이용	4	-	-	-	-	-	-	-	4	4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4	-	-	-	-	-	-	-	4	2	-	2	-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누 계	176	11	-	-	-	10	-	1	163	129	1	33	2
2014	13	-	-	-	-	-	-	-	12	10	-	2	1
2013	22	-	-	-	-	-	-	-	22	18	1	3	-
2012	19	4	-	-	-	4	-	-	14	14	-	-	1
2011	15	1	-	-	-	1	-	-	14	8	-	6	-
2010	11	-	-	-	-	-	-	-	11	9	-	2	-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62	129	25	-	2	2	5	-	2	93	-	-	-	33	11	15	7
2014	12	10	2	-	-	-	-	-	-	8	-	-	-	2	-	1	1
2013	21	18	3	-	-	-	-	-	-	15	-	-	-	3	-	2	1
2012	14	14	5	-	-	-	-	-	-	9	-	-	-	-	-	-	-
2011	14	8	2	-	-	-	-	-	-	6	-	-	-	6	2	4	-
2010	11	9	3	-	-	-	-	-	-	6	-	-	-	2	2	-	-

<표 3-2-3-33> 2014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3	-	-	-	-	-	-	-	-	12	10	-	2	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7	-	-	-	-	-	-	-	7	7	-	-	-
	모집	-	-	-	-	-	-	-	-	-	-	-	-	-
	채용	4	-	-	-	-	-	-	-	4	4	-	-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1	-	-	-	-	-	-	-	1	1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1	-	-	-	-	-	-	-	1	1	-	-	-
	기타	1	-	-	-	-	-	-	-	1	1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2	-	-	-	-	-	-	-	2	2	-	-	-
	용역의 공급 이용	2	-	-	-	-	-	-	-	2	2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4	-	-	-	-	-	-	-	3	1	-	2	1	

□ 사회적 신분

<표 3-2-3-34> 사회적 신분³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678	139	-	-	-	126	2	11	1,533	1,079	13	436	5	6
2014	172	3	-	-	-	2	-	1	168	118	-	50		1
2013	179	21	-	-	-	19	-	2	154	114	-	40		4
2012	134	2	-	-	-	1	-	1	131	95	-	36		1
2011	131	9	-	-	-	8	-	1	122	70	1	50	1	
2010	84	5	-	-	-	2	-	3	79	45	2	31	1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15	1,077	242	12	15	16	57	4	54	656	15	6	2	436	94	289	53
2014	168	117	28	5	2	2	3	-	6	70	-	1	1	50	10	37	3
2013	154	114	25	1	1	1	7	1	10	67	1	-	-	40	14	20	6
2012	131	95	13	1	-	2	5	-	2	70	2	-	-	36	21	12	3
2011	120	70	7	2	4	4	2	1	2	48	-	-	-	50	12	30	8
2010	76	45	8	-	1	2	1	-	2	31	-	-	-	31	6	15	10

30) 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국가인권위원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2005.)라고 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신분은 출생에 의하여 고정된 생래의 신분에 한정하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도 포함됨.

<표 3-2-3-36> 2014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72	3	-	-	-	2	-	1	168	118	-	50	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07	2	-	-	-	1	-	1	104	71	-	33	1
	모집	2	-	-	-	-	-	-	-	2	2	-	-	-
	채용	8	-	-	-	-	-	-	-	7	6	-	1	1
	배치	8	-	-	-	-	-	-	-	8	5	-	3	-
	교육	2	-	-	-	-	-	-	-	2	2	-	-	-
	승진	4	-	-	-	-	-	-	-	4	2	-	2	-
	임금지급	26	1	-	-	-	1	-	-	25	24	-	1	-
	임금외 금품 지급	13	-	-	-	-	-	-	-	13	5	-	8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9	-	-	-	-	-	-	-	9	-	-	9	-
	퇴직	1	-	-	-	-	-	-	-	1	-	-	1	-
	해고	7	-	-	-	-	-	-	-	7	7	-	-	-
	기타	27	1	-	-	-	-	-	1	26	18	-	8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41	1	-	-	-	1	-	-	40	31	-	9	-
	용역의 공급 이용	17	-	-	-	-	-	-	-	17	13	-	4	-
	재화의 공급 이용	14	1	-	-	-	1	-	-	13	11	-	2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8	-	-	-	-	-	-	-	8	5	-	3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0	-	-	-	-	-	-	-	10	7	-	3	-
	교육시설의 이용	10	-	-	-	-	-	-	-	10	7	-	3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4	-	-	-	-	-	-	-	14	9	-	5	-	

□ 기타사유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계	2,499	145	-	-	-	135	-	10	2,345	1,731	28	578	8	9
2014	252	12	-	-	-	9	-	3	234	167	-	67		6
2013	323	30	-	-	-	29	-	1	292	210	6	76		1
2012	277	20	-	-	-	20	-	-	255	174	-	81		2
2011	182	19	-	-	-	18	-	1	163	105	-	58	-	
2010	213	17	-	-	-	14	-	3	196	133	3	58	2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계	2,309	1,729	481	23	16	62	156	3	84	836	61	7	2	578	99	400	79
2014	234	166	53	3	2	2	13	-	6	83	3	1	1	67	19	44	4
2013	286	210	69	4	1	7	21	-	22	83	3	-	-	76	19	42	15
2012	255	174	33	-	2	11	9	-	3	112	4	-	-	81	11	60	10
2011	163	105	18	1	2	5	4	-	6	65	4	-	-	58	14	32	12
2010	191	133	47	-	-	4	5	1	12	61	2	1	-	58	6	32	20

<표 3-2-3-39> 2014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52	12	-	-	-	9	-	3	234	167	-	67	6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45	10	-	-	-	9	-	1	129	90	-	39	6
	모집	7	-	-	-	-	-	-	-	7	2	-	5	-
	채용	10	-	-	-	-	-	-	-	10	8	-	2	-
	배치	10	-	-	-	-	-	-	-	10	7	-	3	-
	교육	2	-	-	-	-	-	-	-	2	-	-	2	-
	승진	12	-	-	-	-	-	-	-	12	7	-	5	-
	임금지급	22	2	-	-	-	2	-	-	20	16	-	4	-
	임금외 금품 지급	18	2	-	-	-	2	-	-	16	12	-	4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10	1	-	-	-	1	-	-	9	5	-	4	-
	퇴직	3	-	-	-	-	-	-	-	3	3	-	-	-
	해고	13	1	-	-	-	-	-	1	12	11	-	1	-
기타	38	4	-	-	-	4	-	-	28	19	-	9	6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30	-	-	-	-	-	-	-	30	18	-	12	-
	용역의 공급 이용	13	-	-	-	-	-	-	-	13	8	-	5	-
	재화의 공급 이용	12	-	-	-	-	-	-	-	12	8	-	4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3	-	-	-	-	-	-	-	3	1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2	-	-	-	-	-	-	-	12	8	-	4	-
	교육시설의 이용	11	-	-	-	-	-	-	-	11	8	-	3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1	-	-	-	-	-	-	-	1	-	-	1	-
기타	65	2	-	-	-	-	-	2	63	51	-	12	-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732	381	-	-	7	154	14	206	1,323	1,097	14	189	23	28
2014	236	48	-	-	2	21	-	25	179	141	1	37		9
2013	245	34	-	-	-	9	2	23	204	164	-	40		7
2012	230	34	-	-	2	15	2	15	184	156	1	27		12
2011	211	47	-	-	-	15	1	31	164	131	-	29	4	
2010	197	61	-	-	-	36	-	25	136	111	-	18	7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286	1,095	57	6	39	31	123	6	4	825	3	1	2	189	88	75	26
2014	178	140	13	1	4	8	17	-	-	97	-	-	1	37	14	16	7
2013	204	164	7	2	4	3	17	-	1	129	1	-	-	40	22	12	6
2012	183	156	8	-	3	6	25	1	1	112	-	-	-	27	15	12	-
2011	160	131	9	1	8	1	10	-	1	100	1	-	-	29	11	14	4
2010	129	110	7	-	1	4	9	-	-	89	-	-	1	18	6	7	5

<표 3-2-3-42> 2014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36	48	-	-	2	21	-	25	179	141	1	37	9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1	4	-	-	-	1	-	3	6	3	-	3	1
	모집	-	-	-	-	-	-	-	-	-	-	-	-	-
	채용	1	-	-	-	-	-	-	-	1	-	-	1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	-	-	-	-	1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4	2	-	-	-	1	-	1	2	1	-	1	-
	기타	4	2	-	-	-	-	-	2	2	1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	3	2	-	1	-
	용역의 공급 이용	2	-	-	-	-	-	-	-	2	1	-	1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222	44			2	20		22	170	136	1	33	8	

5. 장애차별³¹⁾ 진정 처리결과

<표 3-2-3-4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7,284	644	10	2	1	323	2	306	6,635	3,516	32	3,075	12	5
2014	1,097	79	2	-	-	15	1	61	1,014	560	5	449		4
2013	1,563	108	1	-	1	27	-	79	1,455	755	1	699		-
2012	1,508	136	-	1	-	115	-	20	1,371	616	1	754		1
2011	952	156	4	1	-	119	-	32	796	381	4	410	1	
2010	1,101	85	3	-	-	25	1	56	1,016	663	15	332	6	

<표 3-2-3-44>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6,591	3,510	756	17	91	60	101	8	41	2,355	75	6	6	3,075	397	735	1,943
2014	1,009	556	52	3	8	11	17	1	2	452	10	-	4	449	86	123	240
2013	1,454	754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2	1,370	615	62	3	14	9	16	4	9	495	3	-	1	754	74	115	565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410	59	146	205
2010	995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332	61	94	177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범·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644	41	45	443	14	13	58	30
2014	79	8	10	33	1	8	12	7
2013	108	4	6	78	2	-	8	10
2012	136	1	4	117	3	1	3	7
2011	156	8	1	126	4	-	14	3
2010	85	14	11	44	2	-	12	2

3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표 3-2-3-46> 2014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증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097	79	2	-	-	15	1	61	1,014	560	5	449	4	
고용	모집·채용	34	4	-	-	-	1	-	3	29	18	-	11	1
	임금·복리후생	10	1	-	-	-	-	-	1	9	7	-	2	-
	배치	12	1	-	-	-	-	-	1	11	10	-	1	-
	승진	2	-	-	-	-	-	-	-	2	2	-	-	-
	직무관련	5	1	-	-	-	-	-	1	4	2	-	2	-
	퇴직·해고	23	1	-	-	-	-	-	1	22	15	-	7	-
	기타	5	-	-	-	-	-	-	-	5	3	-	2	-
교육	전·입학거부	8	1	-	-	-	-	-	1	7	4	-	3	-
	시설물접근·이용	12	2	-	-	-	1	-	1	10	4	-	6	-
	수업·시험 편의제공	17	2	-	-	-	1	-	1	15	8	-	7	-
	수업등교내활동배제	3	2	-	-	-	-	-	2	1	-	-	1	-
	특수학급설치	14	-	-	-	-	-	-	-	14	12	-	2	-
	괴롭힘	4	1	-	-	-	-	-	1	3	3	-	-	-
	기타	8	1	-	-	-	-	-	1	7	3	-	4	-
재화·용역	재화·용역	170	13	-	-	-	-	-	13	157	87	-	70	-
	보험·금융	66	1	-	-	-	1	-	-	63	35	-	28	2
	시설물접근	146	13	-	-	-	1	-	12	133	67	-	66	-
	이동교통수단	68	2	-	-	-	-	1	1	66	33	-	33	-
	정보접근·의사소통	149	4	-	-	-	1	-	3	144	48	-	96	1
	문화·예술·체육	13	-	-	-	-	-	-	-	13	5	-	8	-
	기타	13	1	-	-	-	-	-	1	12	10	-	2	-
사법행정	37	1	-	-	-	-	-	1	36	17	-	19	-	
참정권	21	8	-	-	-	8	-	-	13	10	-	3	-	
괴롭힘 등	따돌림	5	-	-	-	-	-	-	-	5	3	-	2	-
	유기·방치	3	-	-	-	-	-	-	-	3	2	-	1	-
	성폭행	8	1	-	-	-	-	-	1	7	5	1	1	-
	폭행·학대	25	2	-	-	-	-	-	2	23	15	1	7	-
	금전착취	25	2	-	-	-	-	-	2	23	19	1	3	-
	모욕·비하	74	3	-	-	-	-	-	3	71	43	2	26	-
	기타	14	4	-	-	-	1	-	3	10	7	-	3	-
기타	103	7	2	-	-	-	-	5	96	63	-	33	-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징계 권고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095	27	-	-	22	-	-	-	5	2,068	1,968	11	86	3	-
2014	15	-	-	-	-	-	-	-	-	15	14	1	-	-	-
2013	119	-	-	-	-	-	-	-	-	119	118	-	1	-	-
2012	90	-	-	-	-	-	-	-	-	90	87	-	3	-	-
2011	39	-	-	-	-	-	-	-	-	39	36	-	3	-	-
2010	26	-	-	-	-	-	-	-	-	26	26	-	-	-	-
2009	20	-	-	-	-	-	-	-	-	20	19	1	-	-	-
2008	35	-	-	-	-	-	-	-	-	35	35	-	-	-	-
2007	54	1	-	-	1	-	-	-	-	53	52	-	1	-	-
2006	57	-	-	-	-	-	-	-	-	57	51	-	6	-	-
2005	381	11	-	-	6	-	-	-	5	370	348	6	13	3	-
2004	505	10	-	-	10	-	-	-	-	495	459	3	33	-	-
2003	364	3	-	-	3	-	-	-	-	361	341	-	20	-	-
2002	390	2	-	-	2	-	-	-	-	388	382	-	6	-	-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계	86	100.0	24	27.9	48	55.8	14	16.3
2014	-	-	-	-	-	-	-	-
2013	1	100.0	1	100.0	-	0.0	-	0.0
2012	3	100.0	-	0.0	2	66.7	1	33.3
2011	3	100.0	2	66.7	1	33.3	-	0.0
2010	-	-	-	-	-	-	-	-
2009	-	-	-	-	-	-	-	-
2008	-	-	-	-	-	-	-	-
2007	1	100.0	-	0.0	1	100.0	-	0.0
2006	6	100.0	1	16.7	5	83.3	-	0.0
2005	13	100.0	3	23.1	5	38.5	5	38.5
2004	33	100.0	9	27.3	21	63.6	3	9.1
2003	20	100.0	4	20.0	12	60.0	4	20.0
2002	6	100.0	4	66.7	1	16.7	1	16.7

<표 3-2-4-3>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계	1,968	100.0	1,380	70.1	92	4.7	5	0.3	81	4.1	126	6.4	-	0.0	26	1.3	197	10.0	39	2.0	22	1.1	-	0.0
2014	14	100.0	9	64.3	1	7.1	1	7.1	-	0.0	-	0.0	-	0.0	-	0.0	3	21.5	-	0.0	-	0.0	-	0.0
2013	118	100.0	109	92.4	-	0.0	-	0.0	1	0.8	2	1.7	-	0.0	-	0.0	6	5.1	-	0.0	-	0.0	-	0.0
2012	87	100.0	67	77.0	3	3.4	-	0.0	1	1.1	-	0.0	-	0.0	10	11.5	6	6.9	-	0.0	-	0.0	-	0.0
2011	36	100.0	31	86.1	2	5.6	-	0.0	-	0.0	-	0.0	-	0.0	1	2.8	2	5.6	-	0.0	-	0.0	-	0.0
2010	26	100.0	20	76.9	3	11.5	-	0.0	-	0.0	-	0.0	-	0.0	-	0.0	3	11.5	-	0.0	-	0.0	-	0.0
2009	19	100.0	16	84.2	2	10.5	-	0.0	1	5.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008	35	100.0	30	85.7	3	8.6	-	0.0	-	0.0	-	0.0	-	0.0	1	2.9	1	2.9	-	0.0	-	0.0	-	0.0
2007	52	100.0	45	86.5	3	5.8	-	0.0	-	0.0	1	1.9	-	0.0	-	0.0	3	5.8	-	0.0	-	0.0	-	0.0
2006	51	100.0	31	60.8	3	5.9	-	0.0	2	3.9	2	3.9	-	0.0	4	7.8	3	5.9	6	11.8	-	0.0	-	0.0
2005	348	100.0	248	71.3	25	7.2	1	0.3	14	4.0	15	4.3	-	0.0	4	1.1	26	7.5	13	3.7	2	0.6	-	0.0
2004	459	100.0	293	63.8	19	4.1	1	0.2	23	5.0	35	7.6	-	0.0	5	1.1	65	14.2	13	2.8	5	1.1	-	0.0
2003	341	100.0	200	58.7	19	5.6	1	0.3	24	7.0	32	9.4	-	0.0	-	0.0	47	13.8	6	1.8	12	3.5	-	0.0
2002	382	100.0	281	73.6	9	2.4	1	0.3	15	3.9	39	10.2	-	0.0	1	0.3	32	8.4	1	0.3	3	0.8	-	0.0

<표 3-2-4-4> 기타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 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누 계	2,095	114.3	27	294.4	2,068	111.9
2014	15	39.5	-	-	15	39.5
2013	119	51.5	-	-	119	51.5
2012	90	118.4	-	-	90	118.4
2011	39	47.1	-	-	39	47.1
2010	26	27.7	-	-	26	27.7
2009	20	25.8	-	-	20	25.8
2008	35	19.7	-	-	35	19.7
2007	54	60.2	1	844.0	53	45.5
2006	57	137.4	-	-	57	137.4
2005	381	95.1	11	293.2	370	89.2
2004	505	171.6	10	303.7	495	169.0
2003	364	99.4	3	194.3	361	98.6
2002	390	123.3	2	129.5	388	123.2

제4절 조사·구제

1. 구제율

<표 3-3-1> 조사중 해결³²⁾ 및 구제율³³⁾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결과						조사중지	조사중 해결(C)	구제율(% (B+C)/A)
		종결소계 (A)	인용 (B)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누계	89,226	86,007	4,994	25,487	53,917	1,175	434	173	8,624	15.8
2014	10,915	10,260	491	3,249	6,463	57		78	721 ³⁴⁾	11.8
2013	10,056	10,388	576	3,491	6,292	29		42	804 ³⁵⁾	13.3
2012	9,582	9,534	480	3,239	5,791	24		53	725 ³⁶⁾	12.6
2011	7,357	7,095	532	2,648	3,843	40	32		699 ³⁷⁾	
2010	9,168	8,398	538	2,457	5,157	153	93		985 ³⁸⁾	
2009	6,985	6,788	534	2,226	3,868	88	72		1,086 ³⁹⁾	
2008	6,309	6,466	427	1,884	3,977	113	65		1,129 ⁴⁰⁾	
2007	6,274	6,064	392	1,387	4,105	138	42		1,338 ⁴¹⁾	
2006	4,187	4,206	355	1,122	2,622	81	26		859 ⁴²⁾	
2005	5,617	5,350	317	1,452	3,376	155	50		278 ⁴³⁾	
2004	5,368	5,804	181	1,387	4,028	154	54			
2003	3,815	3,797	130	785	2,766	116	-			
2002	2,790	1,856	40	160	1,629	27	-			
2001	803	1	1	-	-	-	-			

32)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진정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음.

33) '구제율'은 2011.11.28.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논의시 결정한 사항임.

34)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721건(기각 272건, 각하 449건)

35) 2013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804건(기각 406건, 각하 398건)

36) 2012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725건(기각 328건, 각하 397건)

37) 2011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699건(기각 292건, 각하 407건)

38) 2010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985건(기각 306건, 각하 679건)

39) 2009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086건(기각 264건, 각하 822건)

40) 2008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129건(기각 155건, 각하 974건)

41) 2007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338건(기각 125건, 각하 1,213건)

42) 2006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859건(기각 73건, 각하 786건)

43) 2005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278건(기각 44건, 각하 234건)

2. 권고수용현황⁴⁴⁾

<표 3-3-2>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4	2,987	2,914	2,136	465	313	73	89.3
2013	2,845	2,750	1,996	448	306	95	88.9
2012	2,628	2,414	1,818	304	292	214	87.9

※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은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기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3-3-3> 2014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987	2,914	2,136	465	313	73	89.3
2014	142	75	66	7	2	67	97.3
2013	217	213	158	48	7	4	96.7
2012	329	327	177	128	22	2	93.3
2011	321	321	269	29	23	-	92.8
2010	305	305	242	26	37	-	87.9
2009	319	319	198	13	108	-	66.1
2008	335	335	227	76	32	-	90.4
2007	276	276	209	40	27	-	90.2
2006	281	281	183	65	33	-	88.3
2005	224	224	205	12	7	-	96.9
2004	112	112	97	5	10	-	91.1
2003	93	93	87	1	5	-	94.6
2002	33	33	18	15	-	-	100.0

44)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진정사건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함.

<표 3-3-4> 2014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26	114	104	6	4	112	96.5
공공기관	6	3	3	-	-	3	100.0
다수인보호시설	48	20	20	-	-	28	100.0
경찰	9	6	5	1	-	3	100.0
사법인	3	2	2	-	-	1	100.0
교육기관	8	3	3	-	-	5	100.0
기타국가기관	23	12	11	1	-	11	100.0
지방자치단체	67	34	31	3	-	33	100.0
군	7	4	4	-	-	3	100.0
각급학교	7	3	3	-	-	4	100.0
구금시설	3	1	1	-	-	2	100.0
사인(개인)	24	18	15	-	3	6	83.3
개인회사	5	2	1	-	1	3	50.0
검찰	5	2	2	-	-	3	100.0
사법기관	2	1	1	-	-	1	100.0
공적유관단체	2	1	1	-	-	1	100.0
기타	7	2	1	1	-	5	100.0

□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1,828	1,785	1,414	230	141	43	92.1
2014	78	41	40	1	-	37	100.0
2013	115	111	101	6	4	4	96.4
2012	157	155	121	27	7	2	95.5
2011	134	134	121	3	10	-	92.5
2010	202	202	185	10	7	-	96.5

<표 3-3-6> 2014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150	72	71	1	-	78	100.0
다수인보호시설	46	20	20	-	-	26	100.0
경찰	8	6	5	1	-	2	100.0
군	6	3	3	-	-	3	100.0
기타국가기관	13	7	7	-	-	6	100.0
각급학교	7	3	3	-	-	4	100.0
구금시설	3	1	1	-	-	2	100.0
지방자치단체	55	27	27	-	-	28	100.0
검찰	5	2	2	-	-	3	100.0
사법기관	2	1	1	-	-	1	100.0
공직유관단체	2	1	1	-	-	1	100.0
기타	3	1	1	-	-	2	100.0

□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1,137	1,107	704	233	170	30	84.6
2014	64	34	26	6	2	30	94.1
2013	102	102	57	42	3	-	97.1
2012	172	172	56	101	15	-	91.3
2011	187	187	148	26	13	-	93.0
2010	103	103	57	16	30	-	70.9

<표 3-3-8> 2014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76	42	33	5	4	34	90.5
공공기관	6	3	3	-	-	3	100.0
사법인	3	2	2	-	-	1	100.0
교육기관	8	3	3	-	-	5	100.0
지방자치단체	12	7	4	3	-	5	100.0
기타국가기관	10	5	4	1	-	5	100.0
사인(개인)	24	18	15	-	3	6	83.3
경찰	1	-	-	-	-	1	-
군대	1	1	1	-	-	-	100.0
개인회사	5	2	1	-	1	3	50.0
보호시설	1	-	-	-	-	1	-
요양시설	1	-	-	-	-	1	-
기타	4	1	-	1	-	3	100.0

□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2	22	18	2	2	-	90.9
2014	-	-	-	-	-	-	-
2013	-	-	-	-	-	-	-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	-	-	-	-	-	-

3. 긴급구제

<표 3-3-10> 긴급구제⁴⁵⁾ 결정 및 결정 내용

(단위 : 건)

구 분	상정건수	처리결과		계	긴급구제 결정 내용						
		긴급구제 결정	부 결		법 제48조제1항						법 제48조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누 계	45	1546)	30	15	7	-	-	4	2	1	1
2014	2	-	2	-	-	-	-	-	-	-	-
2013	3	1	2	1	-	-	-	1	-	-	-
2012	2	1	1	1	-	-	-	-	-	1	-
2011	2	-	2	-	-	-	-	-	-	-	-
2010	6	1	5	1	1	-	-	-	-	-	-
2009	6	3	3	3	1	-	-	1	1	-	-
2008	7	3	4	3	-	-	-	1	1	-	1
2007	7	-	7	-	-	-	-	-	-	-	-
2006	3	1	2	1	-	-	-	1	-	-	-
2005	1	1	-	1	1	-	-	-	-	-	-
2004	1	-	1	-	-	-	-	-	-	-	-
2003	2	2	-	2	2	-	-	-	-	-	-
2002	3	2	1	2	2	-	-	-	-	-	-

※ 2013.4.4. 긴급구제 처리 절차와 기준 상임위 보고, 2013.6.1.부터 긴급구제사건 분리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표 3-3-11>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⁴⁷⁾
			90일 이내(C)	90일 초과		
2014	255	85	126	24	20	74.1
2013	288	73	165	33	17	76.7
2012	293	-	227	56	10	77.5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⁴⁸⁾ 2012.3.21.개정(2012년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 작성기간은2012.3.21.~2012.12.31.)

45)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46)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의 긴급구제 건수(10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정 처리결과를 진정 본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한 4건[2006년 1건(44조 권고), 2008년 1건(각하), 2009년 2건(44조 권고)]과 긴급구제 처리 절차와 기준(2013.6.1. 시행)에 따라 긴급구제 사건번호를 진정과 별도로 부여받은 1건임.

47) 90일 이내 회신율 = $\left(\frac{90일내 회신건수}{피권고기관수 - 검토중(90일내)건수} \right) * 100$

48)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1. 직권조사⁴⁹⁾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222	211	144	3	114	21	5	1	67	7	60
2014	14	5	5	-	3	2	-	-	-	-	-
2013	11	13	13	-	8	5	-	-	-	-	-
2012	14	15	11	1	7	3	-	-	4	-	4
2011	16	18	13	1	9	2	1	-	5	-	5
2010	10	3	3	-	2	1	-	-	-	-	-
2009	3	5	5	-	3	2	-	-	-	-	-
2008	17	18	14	-	12	-	2	-	4	-	4
2007	5	6	5	-	5	-	-	-	1	-	1
2006	9	83	35	-	31	3	1	-	48	7	41
2005	84	41	37	-	33	3	-	1	4	-	4
2004	37	3	2	1	-	-	1	-	1	-	1
2003	-	-	-	-	-	-	-	-	-	-	-
2002	2	1	1	-	1	-	-	-	-	-	-

49) 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제3항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118 ⁵⁰⁾	113	65	45	3	5	97.3
2014	3	1	1	-	-	2	100.0
2013	7	5	4	1	-	2	100.0
2012	7	6	5	1	-	1	100.0
2011	10	10	9	1	-	-	100.0
2010	2	2	2	-	-	-	100.0
2009	3	3	2	1	-	-	100.0
2008	14	14	10	3	1	-	92.9
2007	5	5	-	4	1	-	80.0
2006	32	32	29	2	1	-	96.9
2005	33	33	1	32	-	-	100.0
2004	1	1	1	-	-	-	100.0
2003	-	-	-	-	-	-	-
2002	1	1	1	-	-	-	100.0

<표 3-4-3> 2014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9	6	6	-	-	23	100.0
사법인	1	1	1	-	-	-	100.0
기타국가기관	21	2	2	-	-	19	100.0
지방자치단체	5	2	2	-	-	3	100.0
사인	1	-	-	-	-	1	-
군	1	1	1	-	-	-	100.0

50) 권고수용현황 작성대상은 권고(법 제25조 내지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함.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표명(13-직권-0001600)의 경우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회신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의 권고와 징계권고, 긴급구제 조치 건수의 합(119건)과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의 권고건수(118건)와 1건의 차이가 있음.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에도 같은 사유 적용

□ 인권침해 직권조사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105	96	90	1	74	12	3	-	6	-	6
2014	10	2	2	-	1	1	-	-	-	-	-
2013	5	7	7	-	5	2	-	-	-	-	-
2012	9	8	6	-	6	-	-	-	2	-	2
2011	7	7	7	-	6	-	1	-	-	-	-
2010	3	1	1	-	-	1	-	-	-	-	-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77	75	32	43	-	2	100.0
2014	1	1	1	-	-	-	100.0
2013	5	4	3	1	-	1	100.0
2012	6	5	4	1	-	1	100.0
2011	7	7	7	-	-	-	100.0
2010	-	-	-	-	-	-	-

<표 3-4-6> 2014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5	2	2	-	-	3	100.0
지방자치단체	2	-	-	-	-	2	-
기타국가기관	2	1	1	-	-	1	100.0
군	1	1	1	-	-	-	100.0

□ 차별행위 직권조사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117	115	54	2	40	9	2	1	61	7	54
2014	4	3	3	-	2	1	-	-	-	-	-
2013	6	6	6	-	3	3	-	-	-	-	-
2012	5	7	5	1	1	3	-	-	2	-	2
2011	9	11	6	1	3	2	-	-	5	-	5
2010	7	2	2	-	2	-	-	-	-	-	-

※ 2013년 권고 3건 중 1건은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견표명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41 ⁵¹⁾	38	33	2	3	3	92.1
2014	2	-	-	-	-	2	-
2013	2	1	1	-	-	1	100.0
2012	1	1	1	-	-	-	100.0
2011	3	3	2	1	-	-	100.0
2010	2	2	2	-	-	-	100.0

<표 3-4-9> 2014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4	4	4	-	-	20	100.0
기타국가기관	19	1	1	-	-	18	100.0
지방자치단체	3	2	2	-	-	1	100.0
사법인	1	1	1	-	-	-	100.0
사인	1	-	-	-	-	1	-

51) 각주 50) 참조

2. 방문조사⁵²⁾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통보	직권조사의결	수사의뢰
누 계	50	49	23	2	23	-	1
2014	5	6	4	-	2	-	-
2013	5	4	2	-	2	-	-
2012	5	6	4	-	2	-	-
2011	7	5	4	-	-	-	1
2010	4	6	3	-	3	-	-
2009	8	9	4	2	3	-	-
2008	6	3	1	-	2	-	-
2007	5	5	1	-	4	-	-
2006	3	3	-	-	3	-	-
2005	2	2	-	-	2	-	-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3	18	11	7	-	5	100.0
2014	4	-	-	-	-	4	-
2013	2	2	2	-	-	-	100.0
2012	4	3	1	2	-	1	100.0
2011	4	4	3	1	-	-	100.0
2010	3	3	1	2	-	-	100.0
2009	4	4	3	1	-	-	100.0
2008	1	1	-	1	-	-	100.0
2007	1	1	1	-	-	-	100.0

52) 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표 3-4-12> 2014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10	-	-	-	-	10	-
법무부	2	-	-	-	-	2	-
경찰청	1	-	-	-	-	1	-
지방자치단체	7	-	-	-	-	7	-

<표 3-4-13> 구금·보호시설⁵³⁾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건, 개소)

구 분	결정건수	교도소 등	경찰서 유치장 등	군 교도소 등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
누 계	50	53	43	16	35	97
2014	5	1	10	-	3	13
2013	5	-	-	8	5	22
2012	5	4	6	-	3	5
2011	7	4	-	2	3	4
2010	4	13	18	-	4	3
2009	8	3	3	1	4	12
2008	6	6	2	2	4	9
2007	5	10	2	3	9	3
2006	3	10	2	-	-	15
2005	2	2	-	-	-	11

53) 법 제2조(정의)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⁵⁴⁾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 보건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 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누 계	97	25	3	33	6	15	2	13	-
2014	13	5	-	-	-	-	-	8	-
2013	22	11	-	11	-	-	-	-	-
2012	5	-	-	5	-	-	-	-	-
2011	4	-	1	1	-	2	-	-	-
2010	3	-	-	-	-	3	-	-	-
2009	12	-	-	4	-	3	-	5	-
2008	9	2	-	7	-	-	-	-	-
2007	3	-	-	-	3	-	-	-	-
2006	15	5	-	5	-	5	-	-	-
2005	11	2	2	-	3	2	2	-	-

5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 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을 제고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고,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정보공유, 업무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 현황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교육	인권특강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누 계	횟수	11,137	1,388	1,037	824	7,148	740
	인원	938,972	63,672	27,323	157,684	637,478	52,815
2014	횟수	2,503	334	206	288	1,506	169
	인원	180,558	14,325	4,926	34,744	110,080	16,483
2013	횟수	2,011	245	159	150	1,280	177
	인원	180,323	11,382	4,588	39,654	112,956	11,743
2012	횟수	1,456	214	119	109	858	156
	인원	140,867	10,456	2,204	21,550	90,727	15,930
2011	횟수	1,316	166	153	71	777	149
	인원	121,402	7,064	3,019	14,681	89,333	7,305
2010	횟수	1,137	177	88	65	739	68
	인원	90,917	6,518	1,726	10,538	71,297	838
2009	횟수	751	131	109	60	432	19
	인원	55,226	7,056	3,043	13,573	31,044	510
2008	횟수	828	45	66	31	684	2
	인원	63,264	2,643	1,972	12,394	46,249	6
2007	횟수	516	30	46	37	403	-
	인원	52,501	2,171	1,673	9,435	39,222	-
2006	횟수	226	20	34	12	160	-
	인원	15,356	1,197	991	973	12,195	-
2005	횟수	155	11	21	1	122	-
	인원	16,864	372	1,072	142	15,278	-
2004	횟수	89	6	23	-	60	-
	인원	7,161	180	1,224	-	5,757	-
2003	횟수	117	5	13	-	99	-
	인원	10,591	186	885	-	9,520	-
2002	횟수	32	4	-	-	28	-
	인원	3,942	122	-	-	3,820	-

2. 인권교육과정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워크숍 등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388	63,672	108	2,605	1,127	53,425	153	7,642
2014	334	14,325	28	601	287	13,393	19	331
2013	245	11,382	30	699	199	10,264	16	419
2012	214	10,456	10	183	184	9,813	20	460
2011	166	7,064	11	211	140	6,379	15	474
2010	177	6,518	8	202	153	5,592	16	724

3. 방문프로그램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037	27,323	167	5,919	723	18,770	147	2,634
2014	206	4,926	1	5	169	4,178	36	743
2013	159	4,588	5	82	126	4,060	28	446
2012	119	2,204	4	99	102	1,905	13	200
2011	153	3,019	15	318	105	2,097	33	604
2010	88	1,726	25	612	55	982	8	132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부 산		광 주		대 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037	27,323	469	14,395	92	1,446	284	7,693	192	3,789
2014	206	4,926	25	759	29	401	54	1,881	98	1,885
2013	159	4,588	26	821	32	486	36	1,624	65	1,657
2012	119	2,204	32	674	6	153	76	1,323	5	54
2011	153	3,019	62	1,292	11	271	70	1,345	10	111
2010	88	1,726	50	1,083	8	103	25	507	5	33

4. 사이버인권교육

<표 4-1-5> 사이버인권교육 대상별 이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공직자	교사	시민	기타
누계	157,684	57,771	83,895	11,741	4,277
2014	34,744	7,578	24,863	2,175	128
2013	39,654	9,944	24,372	5,338	-
2012	21,550	10,776	8,747	2,027	-
2011	14,681	8,511	6,139	-	31
2010	10,538	6,276	3,995	-	267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심화)	행정과 인권	차별예방	군대와 인권	장애차별 예방	성차별 예방	교사인권+(플러스)	장차법의 이해	기타 ⁵⁵⁾
누계	157,684	14,663	3,430	8,136	1,748	1,293	30,020	35,184	32,604	6,056	1,606
2014	34,744	2,152	321	1,006	1,748	1,293	6,222	7,615	13,293	1,094	-
2013	39,654	3,499	612	2,350	-	-	8,407	9,876	10,984	2,320	1,606
2012	21,550	2,605	593	2,904	-	-	4,333	5,327	3,524	2,264	-
2011	14,681	1,910	581	1,876	-	-	3,237	3,839	2,860	378	-
2010	10,538	2,291	736	-	-	-	2,719	2,849	1,943	-	-

55) 사이버인권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통계를 관리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합은 기타에 포함

5. 인권특강

<표 4-1-7> 인권특강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7,148	637,478	2,384	197,078	2,270	277,612	988	85,154
2014	1,506	110,080	256	25,759	794	51,875	456	32,446
2013	1,280	112,956	226	24,283	711	69,989	343	18,684
2012	858	90,727	61	2,815	698	84,715	99	3,197
2011	777	89,333	334	28,965	302	54,518	141	5,850
2010	739	71,297	394	34,031	251	33,414	94	3,852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7,148	637,478	3,844	389,089	1,293	90,325	901	54,124	1,103	103,549	7	391
2014	1,506	110,080	499	34,830	373	26,637	238	12,712	389	35,510	7	391
2013	1,280	112,956	530	52,602	262	17,254	165	9,968	323	33,132		
2012	858	90,727	538	64,756	111	9,676	106	9,219	103	7,076		
2011	777	89,333	414	55,565	120	10,128	121	7,248	122	16,392		
2010	739	71,297	478	55,627	115	6,201	84	5,085	62	4,384		

제3절 국내외 협력

1. 인권현장방문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단위 : 회, 기관수)

구분	누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문횟수	127	5	9	7	12	8	12	10	9	19	11	13	12
기관수	149	5	9	7	14	8	12	10	9	21	16	20	18

2. 보조금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단체수, 백만원)

구분		누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지원단체수	272	23	26	20	33	30	32	33	15	16	15	14	15
	지원금액	2,205	200	150	150	275	275	275	275	130	130	115	115	115
국외 (APF)	지원단체수	10	-	-	1	1	1	1	1	1	1	1	1	1
	지원금액	1,0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표 4-2-3>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누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47	2	1	9	6	5	6	4	6	3	3	2
정책일반	3	-	-	-	2	1	-	-	-	-	-	-
북한인권	12	1	1	1	1	1	2	1	1	1	1	1
정보인권	3	-	-	-	-	-	1	-	1	1	-	-
기업인권	3	-	-	-	1	-	1	-	1	-	-	-
국제인권	7	1	-	3	1	-	-	-	1	-	1	-
인권교육	3	-	-	-	1	1	-	-	1	-	-	-
자유권	3	-	-	1	-	-	1	1	-	-	-	-
이주인권	4	-	-	1	-	1	-	1	-	1	-	-
차별시정	1	-	-	1	-	-	-	-	-	-	-	-
여성인권	2	-	-	-	-	1	-	-	-	-	-	1
장애인인권	6	-	-	2	-	-	1	1	1	-	1	-

<표 4-2-4>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단위 : 회)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66	14	21	17	32	40	33	33	37	29	28	27	26	29
회의·교육	211	10	13	12	16	24	14	18	17	17	19	19	16	16
교류협력	68	4	5	4	8	10	5	3	12	6	2	3	2	4
조사	14	-	1	-	-	-	3	2	1	-	2	1	2	2
연구 및 훈련	73	-	2	1	8	6	11	10	7	6	5	4	6	7

<표 4-2-5>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단위 : 회)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문	246	15	19	19	26	25	18	17	29	13	24	24	11	6

제5장 일반행정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1인의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차별, 성, 장애 및 인권침해 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 조정위원회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두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3국·12과·3팀, 4개 소속기관(부산·광주·대구·대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1. 심의·의결기구

□ 전원위원회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21	69(10)	34		35(10)	47.8
2013	23	59(15)	24(2)		35(13)	49.2
2012	24	58(17)	28		30(17)	72.4
2011	23	64(6)	27		37(6)	71.9
2010	19	63(17)	24(3)	1	38(14)	57.1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함.

□ 상임위원회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45	96(25)	41(1)	17(1)	38(23)	59.3
2013	47	113(7)	41(1)	14	58(6)	60.2
2012	44	125(12)	55	14	56(12)	72.8
2011	50	128(4)	47	21	60(4)	75.8
2010	41	102(10)	33	15(3)	54(7)	72.5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함.

□ 소위원회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⁵⁶⁾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13	905	127	—	778
2013	12	1,077	150	—	927
2012	15	889	88	—	801
2011	16	716	72	1	643
2010	17	700	107	—	593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12	1,277	137	—	1,140
2013	13	1,153	107	—	1,046
2012	14	1,151	143	—	1,008
2011	15	873	47	—	826
2010	16	1,059	63	4	992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⁵⁷⁾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12	540	144	—	396
2013	13	559	184	—	375
2012	14	530	192	—	338
2011	14	542	148	—	394
2010	18	597	104	2	491

56)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경찰,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학교 및 기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57)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는 제외함)를 심의의결함.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⁵⁸⁾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12	1,587	395	-	1,192
2013	13	1,656	445	-	1,211
2012	17	1,417	317	2	1,098
2011	16	818	182	2	634
2010	15	966	177	1	788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2008. 4. 22. ~ 현재

<표 5-1-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4	6	11	8	3	-
2013	7	19	18	1	-
2012	5	6	2	4	-
2011	17	18	2	16	-
2010	-	-	-	-	-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 2011. 1. 27. ~ 현재

58)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조정위원회 59)

<표 5-1-8>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합 계	전체회의	차별 조정위원회	성차별 조정위원회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인권침해 조정위원회
누 계	69	4	32	18	10	5
2014	2	1	-	-	1	-
2013	5	1	2	2	-	-
2012	4	1	-	2	1	-
2011	3	-	1	1	-	1
2010	6	1	3	-	2	-

<표 5-1-9>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54	26	17	(3)	(5)	11
2014	1	1	-	-	-	-
2013	5	2	2	-	(1)	1
2012	4	2	-	-	-	2
2011	3	2	1	(1)	-	-
2010	5	1	2	-	(1)	2

※ 조정갈음결정의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이하 같음)

<표 5-1-10>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21	5	12	(2)	(4)	4
2014	-	-	-	-	-	-
2013	2	-	2	-	(1)	-
2012	-	-	-	-	-	-
2011	1	-	1	-	-	-
2010	2	-	2	-	(1)	-

59) 법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표 5-1-11>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같은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16	14	1	-	-	1
2014	-	-	-	-	-	-
2013	3	2	-	-	-	1
2012	2	2	-	-	-	-
2011	1	1	-	-	-	-
2010	-	-	-	-	-	-

<표 5-1-12>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같은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11	5	2	-	(1)	4
2014	1	1	-	-	-	-
2013	-	-	-	-	-	-
2012	2	-	-	-	-	2
2011	-	-	-	-	-	-
2010	2	1	-	-	-	1

<표 5-1-13>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같은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6	2	2	(1)	-	2
2014	-	-	-	-	-	-
2013	-	-	-	-	-	-
2012	-	-	-	-	-	-
2011	1	1	-	(1)	-	-
2010	1	-	-	-	-	1

2. 자문기구⁶⁰⁾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표 5-1-1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24	-	3	4	1	2
안건수	42	-	3	4	1	2
출석 기관수	157	-	13	31	8	31

□ 정책자문위원회

<표 5-1-1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19	1	3	3	1	2
안건 수	56	4	12	9	3	8

60) 법 제15조(자문 기구) 및 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제2항, 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제3항

□ 전문위원회

<표 5-1-16>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40	-	2	3	2	2
안건 수	100	-	5	4	3	4

※ 누계는 사회권전문위원회와 아동인권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1.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계	개최횟수	40	10	10	7	4	-	2	3	2	2
	안건 수	100	24	37	18	5	-	5	4	3	4
사회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32	8	9	4	2	-	2	3	2	2
	안건 수	88	21	35	13	3	-	5	4	3	4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8	2	1	3	2	-	사회권 전문위로 통합			
	안건 수	12	3	2	5	2	-				

※ 아동인권전문위원회(2006. 3. 23. ~ 2010. 8.)

<표 5-1-17>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27	2	3	2	2	2
안건 수	44	3	5	3	5	5

※ 누계는 인권교육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2. 인권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계	개최횟수	27	-	7	5	3	1	2	3	2	2	2
	안건 수	44	-	11	7	3	2	3	5	3	5	5
인권교육	개최횟수	12	-	-	-	-	1	2	3	2	2	2
	안건 수	23	-	-	-	-	2	3	5	3	5	5
학교인권	개최횟수	8	-	5	2	1	-	/	/	/	/	/
	안건 수	10	-	7	2	1	-	/	/	/	/	/
공공·시민	개최횟수	5	-	2	3	-	-	/	/	/	/	/
	안건 수	9	-	4	5	-	-	/	/	/	/	/
공공인권	개최횟수	1	-	-	-	1	-	/	/	/	/	/
	안건 수	1	-	-	-	1	-	/	/	/	/	/
시민인권	개최횟수	1	-	-	-	1	-	/	/	/	/	/
	안건 수	1	-	-	-	1	-	/	/	/	/	/

※ 인권교육전문위원회(제1기 임기기간 2005. 11. 1. ~ 2007.10. 31. 조직개편으로 2005년도 개최 없이 2005.12.31. 임기종료, 2009. 5. 1. ~ 현재)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6. 3. ~ 2008. 6.)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인권교육전문위원회, 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8. 8. ~ 2009. 4. 30.)

<표 5-1-18>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26	2	5	4	5	4
안건 수	77	6	17	13	16	12

<표 5-1-19>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3				1	2
안건 수	8				3	5

※ 자유권1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표 5-1-20>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3				1	2
안건 수	6				2	4

※ 자유권2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참고 3. 자유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누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계	개최횟수	42	5	7	9	4	2	5	2	4	4
	안건 수	90	7	11	16	13	6	12	6	10	9
자유권제1	개최횟수	3	-	-	-	-	-	-	-	1	2
	안건 수	8	-	-	-	-	-	-	-	3	5
자유권제2	개최횟수	3	-	-	-	-	-	-	-	1	2
	안건 수	6	-	-	-	-	-	-	-	2	4
자유권	개최횟수	11	-	-	-	-	2	5	2	2	
	안건 수	29	-	-	-	-	6	12	6	5	
검·경 수사	개최횟수	3	1	-	1	1					
	안건 수	5	1	-	2	2					
군	개최횟수	4	1	1	2						
	안건 수	4	1	1	2						
교정	개최횟수	5	1	2	1	1					
	안건 수	9	2	2	1	4					
외국인	개최횟수	13	2	4	5	2					
	안건 수	29	3	8	11	7					

※ 검·경수사전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2006. 3. 23. ~ 2011. 2. 17.)

※ 자유권전문위원회(2009. 5. 1. ~ 2013. 8. 29.)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 자유권1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 자유권2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표 5-1-21>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29	2	4	3	2	1
안건 수	119	5	21	17	15	6

※ 누계는 차별시정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4.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계	개최횟수	29	3	5	6	3	2	4	3	2	1
	안건 수	119	4	21	21	9	5	21	17	15	6
차 별	개최횟수	7	2	2	3	-	/	/	/	/	/
	안건 수	15	3	5	7	-	/	/	/	/	/
성차별	개최횟수	9	1	3	3	2	-	-	/	/	/
	안건 수	38	1	16	14	7	-	-	/	/	/
고용차별	개최횟수	3	/	/	/	1	2	-	/	/	/
	안건 수	7	/	/	/	2	5	-	/	/	/
차별시정	개최횟수	10	/	/	/	/	/	4	3	2	1
	안건 수	59	/	/	/	/	/	21	17	15	6

※ 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성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11. 2. 17.)

※ 고용차별전문위원회(2009. 5. 1. ~ 2011. 2. 17.)

※ 차별시정전문위원회(2011. 2. 18. ~ 현재)

<표 5-1-22>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최횟수	34	3	4	5	1	3
안건 수	83	7	11	13	2	7

※ 누계는 장애인인권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5.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계	개최횟수	34	-	7	5	6	3	4	5	1	3
	안건 수	83	-	21	11	11	7	11	13	2	7
장애차별	개최횟수	10	-	3	5	2					
	안건 수	23	-	9	11	3					
다수인 보호시설	개최횟수	-	-	-	-	-					
	안건 수	-	-	-	-	-					
정신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4	-	4	-	-					
	안건 수	12	-	12	-	-					
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20				4	3	4	5	1	3
	안건 수	48				8	7	11	13	2	7

※ 장애차별전문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6. 12. 8. ~ 2009. 4. 30.)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9. 5. 1. ~ 현재)

<표 5-1-23>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개최횟수	4	1	2	1	-
안건 수	15	3	9	3	-

※ 2012. 9월 활동 종료

제3절 일반현황

1. 사무처 조직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년월일	구분	기구	정원	증감내역	
				기구	정원
2002. 2. 4.		5국 18과, 1소속기관	180	-	-
2005. 3. 2.		"	181	-	증 1명
2005. 5. 31.		"	193	-	증 12명
2005. 6. 23.		5국 19과, 3소속기관	201	증 1과	증 8명
2005. 12. 30.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증 3팀	-
2007. 6. 21.		5본부 22팀, 4소속기관	208	증 1소속기관	증 7명
2009. 4. 6.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	감 2본부 11팀, 1소속기관	감 44명
2011. 10. 10.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185	증 1과	증 21명
2012. 11. 12.		"	187	-	증 2명
2013. 3. 23.		"	186	-	감 1명
2013. 9. 17.		"	190	-	증 4명
2013. 12. 11.		"	188	-	감 2명
2014. 8. 27.		1관 2국 12과 3팀, 4소속기관	191	증 1소속기관 증 3팀	증 3명

<표 5-2-2> 2014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정원	191	4	4	2	14	11	58	45	22	8	21	1	1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B+C)	인건비 (A)	기본경비 (B)	주요사업비 (C)	비고
2014	24,560	11,742	7,185	5,633	
2013	24,091	11,368	7,047	5,676	
2012	23,055	10,770	7,222	5,063	
2011	22,079	10,316	6,948	4,815	
2010	22,285	10,869	6,813	4,603	

<표 5-2-4> 2014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예 산
계	5,633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93
① 인권의식 향상	448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310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235
인권교육 활성화	951
④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	653
⑤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개발	29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364
⑥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88
⑦ 취약분야 인권개선	781
⑧ 장애인 인권증진	395
인권제도 선진화	869
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67
⑩ 북한인권개선	302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523
⑪ 국제교류협력	292
⑫ APF 및 ICC 활동지원	100
⑬ 인권단체 공동협력	131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933
⑭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33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구분	자료유형		장서량
인쇄자료	단행본	계	29,730종 40,783권
		동양서	23,073종 32,574권
		서양서	6,657종 8,209권
	연속간행물	계	102종
		국내	89종(구독 44, 기증 45)
		국외	13종
전자자료	전자도서 (eBook)	계	5패키지 1,436종 1,715권
		국내	335종 612권
		국외	1,101종 1,103권
	전자저널 (E-Journal)	계	3,102종
		국내	3,091종
		국외	11종
	웹DB	계	5종
		국내	4종
		국외	1종
	기타 전자자료	계	해외석박사학위논문(pqdd) 원문 492종
	특수자료	계	208종 227권(비도서 포함), 연간물 20종
		단행본	188종 204권
비도서자료		20종 23점	
연속간행물		20종	
비도서자료	계	4,346종 6,462점	
	국내	3,717종 5,786점	
	국외	629종 676점	

※ 장서량은 2001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장서보유 누계임

<표 5-2-6>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원대출		6,124명 16,758권	1,194명 3,473권	1,157명 2,798권	1,221명 3,263권	1,364명 3,732권	1,188명 3,492권
외부대출 서비스	개인	1,814명 4,166권	192명 544권	433명 962권	693명 1,473권	275명 637권	221명 550권
	단체	471건 1,682권	93건 310권	151건 497권	88건 332권	94건 318권	45건 225권
도서관이용자		17,701명	1,984명	2,596명	2,773명	4,150명	4,159명

※ 2005.11.부터 외부대출서비스 실시, 2008.12.부터 개인자료회원제 도입

※ 도서관 이용자수 = 직원대출자수 + 방문이용자수

2. 정보공개⁶¹⁾

<표 5-2-7>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소계	취하	민원종결	타기관이송
누 계	4,042	3,745	2,190	1,160	395	297	159	54	84
2014	518	464	258	151	55	54	40	1	13
2013	498	474	291	153	30	24	12	3	9
2012	491	467	241	169	57	24	5	13	6
2011	496	461	289	122	50	35	21	7	7
2010	521	478	249	173	56	43	28	6	9

<표 5-2-8>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건수	비공개 사유 ⁶²⁾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부존재
누 계	1,555	3	2	88	45	207	697	9	-	504
2014	206	-	-	-	4	17	80	-	-	105
2013	183	-	1	2	3	15	80	1	-	81
2012	226	-	-	1	6	32	86	1	-	100
2011	172	-	-	27	9	41	62	-	-	33
2010	229	-	1	24	4	24	116	-	-	60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6.10.4.)에 따라 2007.1.1. 이후 현황 작성

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2-9>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이 의 신 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소송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기각 및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누 계	87	28	37	10	12	7	2	-	2	3	3	1	-	1	1
2014	11	3	5	-	3	2	2	-	-	-	1	1	-	-	-
2013	8	5	2	-	1	1	-	-	1	-	-	-	-	-	-
2012	11	4	4	-	3	2	-	-	-	2	1	-	-	-	1
2011	9	6	3	-	-	-	-	-	-	-	-	-	-	-	-
2010	16	4	8	-	4	-	-	-	-	-	-	-	-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집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청문회

<표 5-2-10> 청문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청문회 주제	진술인(관계기관)
2001.12. 7.	테러방지법(안)의 정책과 대안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외
2003. 2.20.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외 6인
2003. 4.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3. 4. 9.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2003.12. 9.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
2003.12.11.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립보건원 외
2003.12.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에 대한 청문회	
2004. 4.28.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05. 1.18.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
2005. 3.16.	비정규근로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노동부 외
2005. 7.14.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제안 청문회	법무부 외 9인
2005.10.19.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병무청, 국방부 외
2006. 7.11.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외
2007. 8.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청문회	노동부 외 7인
2007.10.30.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경찰청 외

4. 업무협약

<표 5-2-11> 업무협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체결건수	37	-	1	9	5	3	5	4	3	5	2
국가기관	1	-	-	-	-	-	-	-	-	-	1
지방자치단체	5	-	-	-	2	1	2	-	-	-	-
교육기관 (교육청, 대학교 등)	17	-	1	8	3	1	-	-	1	3	-
외국 국가인권기구	4	-	-	1	-	1	1	1	-	-	-
공·사단체	9	-	-	-	-	-	2	2	2	2	1
기업	1	-	-	-	-	-	-	1	-	-	-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표 5-2-12>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연 도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합 계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협조상	위원장 표창
누 계	209명 (57단체포함)	8명	8명	188명 (57단체)	5명	15개 언론사 (69명)
2014	17명 (5단체포함)	1명	1명	15명 (5단체포함)	-	5개 언론사 (17명)
2013	17명 (3단체포함)	1명	1명	15명 (3단체포함)	-	6개 언론사 (35명)
2012	17명 (4단체포함)	1명	1명	15명 (4단체포함)	-	4개 언론사 (17명)
2011	16명 (7단체포함)	1명	1명	14명 (7단체포함)	-	
2010	11명 (1단체포함)	1명	1명	9명 (1단체포함)	-	

6. 과태료 및 보상금

<표 5-2-13>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6	1	-	-	-	1

※ 2002년 2건, 2007년 1건 부과, <표 5-2-14> 과태료 부과 내역 참고

<표 5-2-14> 과태료⁶³⁾ 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도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처분 금액	징수결과	비고
2002	주한미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0,000,000원 - 2호 5백만원 - 3호 5백만원	불납결손처리	시효완성(2007년)
2002	○○교도소 보안과장	법 제63조제1항제2호	1,000,000원	5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50만원으로 감액
2007	○○정신병원	법 제63조제1항제3호	3,000,000원	전액 징수	-
2009	○○병원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5,000,000원 - 1호 2백만원 - 3호 3백만원	30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3백만원으로 감액
2010	전 ○○구치소장	법 제63조제1항제3호	5,000,000원	-	과태료 재판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2014	전 ○○법원 부장판사	법 제 63조 제1항 제2호	2,000,000원	-	당사자 이의제기로 2015. 3. 31. 현재 법원 재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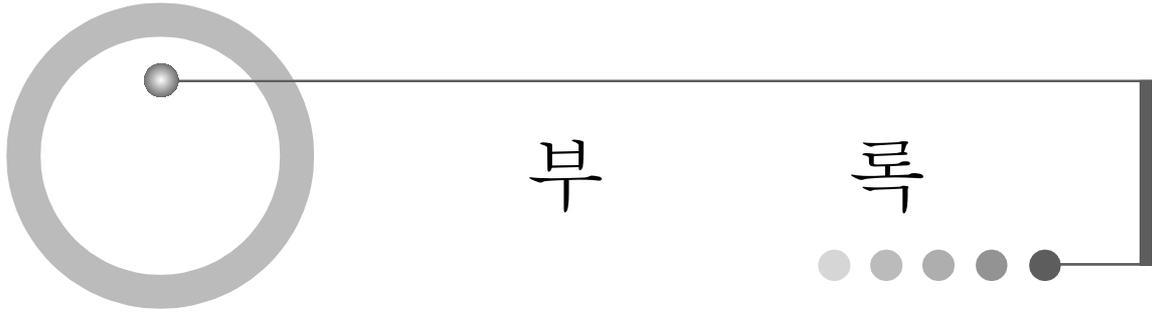
<표 5-2-15> 보상금⁶⁴⁾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건)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지급건수 (합계)	침해	차별	비고
누계	16,500	13,770	3,470	101건	55건 8,700	46건 5,070	
2014	-	-	-	-	-	-	
2013	800	950	-	6건	2건 300	4건 650	
2012	800	990	-	6건	2건 350	4건 640	
2011	800	1,000	-	11건	5건 500	6건 500	
2010	800	1,000	-	7건	4건 600	3건 400	

63) 법 제63조(과태료)

64) 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제2항



부 록

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4.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6. 인권통계 연구용역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7.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소분류별 법적 근거
8.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 가. 이행기제
 - 나. 평등권
 - 다. 시민·정치적 권리
 - 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부록 1】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2002년도> : 29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 전화
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3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4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6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7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군내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중심으로 -	천주교인권위원회
8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9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한양대학교
10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3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14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15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지평
16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17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18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19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20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조사	동의대학교
21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22	한국 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23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24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25	부랑인 시설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26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가정폭력법, 특례법)	동해대/연세대/전북대/해람합동법률사무소
27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청소년보호법)	
28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노동관련법)	
29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아동복지법)	

<2003년도> : 23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레 방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5	차별관련 법령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7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9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12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5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18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19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20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1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22	연령, 학벌, 학력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3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4년도> : 26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현황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4대 사회보험) 기초현황조사	중앙대학교
3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4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서울대보건대학원
5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기초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6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조건, 기업복지) 기초현황조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권 기초현황조사	한국교육개발원
8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밝은노후를만들어 가는사람들의모임
9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
10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11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집회/결사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3	양심/종교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4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5	피의자, 피고인, 증인, 참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인터넷 및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17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18	외국인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사)한국조사연구학회
19	문화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문화사회연구소
20	환경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녹색연합
21	NAP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일다
22	국민인권의식조사	(주) 한국리서치
23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4	원폭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5	차별금지법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6	색각이상자의 고용등에 대한 차별 연구	한림대학교

<2005년도> : 17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2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3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재)국제평화전략 연구원
4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전북대
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
6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HIV 감염인 및 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하대 총장
8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9	장애인 시설생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건국대 산학협력단
11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12	인권관련 정부공식통계에 대한 실태조사	새사회연대
13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천안대 산학협력단
1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광주대 산학협력단
15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외국판례조사	법률사무소 이안
16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17	단수·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6년도> : 24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교육권·학습권·건강권 관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	중·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두발·용모제한 등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조사 중심)	사)청소년교육전략21
3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4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5개 직군을 중심으로)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성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산학협력단
6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
7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
8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산학협력단
9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10	경비교도대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선진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언론인·기업인·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12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비정규노동센터
14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배제대외 2
15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조사	중앙대산학협력단 외 3
16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8	아동학대 실태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대구대 산학협력단
20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2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법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22	사회복지시설 운영합리화 법제연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23	외국 군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건국대 산학협력단
24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전북대 산학협력단

<2007년도> : 14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새터민 정착과정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과 수혜국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권재단
3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한남대 산학협력단
4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인권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 체계화 연구	경인교대 산학협력단
6	빈곤층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법률사무소 새날
8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8	자유권실현현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시민건강연구소
13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연구	동아대학교
14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 11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무기계약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실태 조사	법무법인 소명
4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사)기업책임시민센터
5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연구	위즈덤센터
6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중심)	사)청소년교육전략21
7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고교 학생선수 중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8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 산학협력단
9	사회적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	부산대 산학협력단
10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 조사	동국대 산학협력단
11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2009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2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려대 산학협력단
3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4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5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성, 나이차별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 이안
6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사)기업책임시민센터
7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10년도> : 7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동국대 산학협력단
4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생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5	주취자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6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외국인 이주노동자 협의회
7	지자체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3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인권의학연구소
4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5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7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8	문화,체육,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2012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4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6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7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8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

<2013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울산대 산학협력단
3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중앙대 산학협력단
4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5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 산학협력단
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이주민과 함께
7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사)휴먼아시아
8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송실대 산학협력단

<2014년도> : 6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강대 산학협력단
2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한림대 산학협력단
3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사이버대 산학협력단
4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권재단
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6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한양사이버대

【부록 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분류	협약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국제인권 장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 16. 76. 1. 3.	90. 4. 10. 90. 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90. 4. 10. 90. 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90. 4. 10. 90. 7. 10.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89. 12. 15. 91. 7. 11.	미가입
차별방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78. 12. 5. 79. 1. 4.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98. 12. 4. 99. 12. 4.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97. 12. 8. 98. 12. 8.
여성의 권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84. 12. 27. 85. 1. 26.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99. 10. 6. 00. 12. 22.	06. 10. 18. 07. 1. 18.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3. 3. 31. 54. 7. 7.	59. 6. 23. 59. 9. 21.

주 : 1)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조약과 국제법-조약정보-다자조약)
2) UN Treaty Collection(<http://treaties.un.org>)

분류	협약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91. 11. 20. 91. 12. 2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04. 9. 24. 04. 10. 24.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04. 9. 24. 04. 10. 24.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3. 08. 5. 3.	08. 12. 11. 09. 1. 10.
	장애인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3. 08. 5. 3.	미가입
강제근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29) Forced Labour Convention	30. 6. 7. 34. 1. 1.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57. 6. 25. 59. 1. 17.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50. 3. 21. 51. 7. 25.	62. 2. 13. 62. 5. 14.
고문방지 및 강제실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95. 1. 9. 95. 2.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02. 12. 18. 06. 6. 22.	미가입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06. 12. 20. 10. 12. 23.	미가입
근로권, 공정한 고용조건의 권리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2. 12. 9. 93. 12. 9.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01. 12. 27. 02. 12. 27.

분류	협약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to Organize Convention	48. 7. 9. 50. 7. 4.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98)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49. 7. 1. 51. 7. 18.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5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81. 6. 19. 83. 8. 11.	
혼인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62. 12. 10. 64. 12. 9.	
이주자의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 12. 18. 03. 7. 1.	미가입
국적, 무국적자, 난민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57. 2. 20. 58. 8. 1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62. 8. 22. 62. 11. 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92. 12. 3. 93. 3.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92. 12. 3. 92. 12. 3.
전범,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50. 10. 14. 51. 1. 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68. 11. 26. 70. 11. 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02. 11. 13. 03. 2. 1.

【부록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 UN OHCHR 보편적 인권색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행기제	국제법/제도	
	국내법/제도	
	인권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 차별	
	여성 차별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체권	생명권
		제노사이드
		비사법적살인
		사형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구금 환경
		노예 및 인신매매
	자유 및 안보권	자유와 안보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정의로운 행정	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법 앞의 평등권	
구제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피해자 보상과 회복	
	불처벌(Impunity)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체성 보호	
참정권	투표 및 선출될 권리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결혼권·가족권	결혼 및 가족 구성권 배우자 사이의 평등 가족 보호
	Cross-cutting issues	인권과 반테러 인권과 용병 국제 인도적 법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량권 적절한 주거권 사회보장권 빈곤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노동권	일할 권리 작업환경권 노동조합권(Trade Union Rights)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아동 및 모성 건강 건강 제한 조건 기대 수명 정신 건강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교육권	교육 보조 접근 교육 성과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중퇴율 문해율 교육에서의 차별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Financial Credit)권리	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purchase orders), 추출, 재정착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된 권리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지적재산권의 보호
	Cross-cutting issues	비즈니스와 인권 인권과 독성폐기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룹 권리	여성	교육
		고용
		경제적 웰빙
		주거
		건강
		정의와 안전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아동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가정 환경과 대안적 돌봄
		착취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사법
		무력 분쟁과 아동
	장애인	장애인권리의 일반 원칙
		접근성, 이동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독립 및 포용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기타 소수자		
토착민		
이주민		
난민 (국내 난민 포함)		
인권활동가		
자결권		
개발권		
헌신&팔로업		

출처: OHCHR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Research guide (<http://uhri.ohchr.org/search/guide>)

▷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의 영역별 지표 구분 사례

부분속성	형사사건 체포/구금	행정부의 자유박탈	법원의 실질심사	법집행인력의 범죄/권력 남용으로부터의 안전	
자유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법원이나 행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된 시점 - 국제인권기구협약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혹은 구금당한 개인이 체포 혹은 구금의 사유를 통지받기 전까지의 법적 시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범죄 처리 및 법률 집행 남용에 대한 정책 및 행정 체제의 기간 및 범위 			
자유권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유엔 임의구금 조사위원회와 의견 교환한 비율/정부가 대응한 비율 - 교정수감시설인력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명령 혹은 행정권한 행사로 인해 체포 혹은 구금당한 사람들의 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상태에서 석방되는 사람들의 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기록된 인신보호영장 및 유사한 탄원서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명당 체포, 재판, 유죄판결, 폭력범죄 복역을 겪은 사람의 수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명당 수감인구의 비율 - 자의적 신체자유박탈 보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구금 적부심 기각 비율 - 법률집행 인력으로부터 신체적/비신체적 해를 입을 경우의 보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부분속성	영양상태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식량 존재여부	식량 접근가능여부	
식량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및 적정 영양 기준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 및 식량 활용성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 가뭄, 흉작 및 재난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식량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DP에 대한 비율 			
식량권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교육 및 인지에 대한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목표집단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법정에 등록된 사건들의 처분비율 혹은 판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관개경작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및 목표집단에 따른 노동참여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저성장 미발육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망 보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지역소비에서 주요 음식의 이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실조 인구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5세 이하 영아사망률을 포함한 사망률 			

부분속성	성적 건강, 생식 건강	유아사망률과 건강보호	자연환경, 직업환경	질병예방 치료통제	의료시설, 필수약품 접근가능여부	
신체/정신건강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 인구등록체계의 출생, 사망, 혼인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생식 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건강보호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NP에 대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 건강관리 범위 - 의학적 임신중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영양 교육을 받은 취약아동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CO₂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발견 및 치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건강보호 및 의약품에 대한 1인당 정부지출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체중 출생비율 - 출산전후사망률 - 산모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자연적, 직업적 환경에 기인한 사망, 상해, 및 장애의 성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 자살률 		
부분속성	구속/수감자들의 신체보존, 정신보존	구금환경	법집행인력의 물리력사용	지역 및 가정 폭력		
고문 및 비도덕적 처우 금지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국제인권기구협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방 감금의 법적 최대 한도 - 구금 시설 및 감옥에서 시행되는 건강 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시설 수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유엔 임의구금 조사위원회와 의견교환한 비율/정부가 대응한 비율 - 교정수감시설인력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및 고발을 받은 수용소 직원에 대한 공식적 조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자 1인당 관리직원 및 그 외 담당인원의 적정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비물리적 학대 혹은 범죄에 대한 법률 집행관의 공식적 조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교직원의 비율 - 여성 및 아동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출의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 수감 중 전염/비전염질환 사망률 - (장기)독방감금비율 - 사형수의 비인도적 처우 - 수감자의 영양실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집행 담당자에 의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및 물리적 상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의료기관에서 물리적 처벌을 당한 학생 및 환자의 비율 (1,000명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 중 보상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 						

부분속성	입법, 행정 권력의 행사권	보통, 평등 선거	공직 접근권	
공직권리참여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보통선거시점 및 시민권 설정, 영-주권자에 대한 제한 - 국제인권기구협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지표	- 지역/국가 수준에서의 임원선출 및 총선의 주기	- 차별 없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조항의 발효일 및 범위	
	결과지표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전국/지방선거 횟수 - 전국/지방 입법체의 입법 법률 수	- 투표가능연령 인구 대비 투표인구의 비율	- 국민 혹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직의 비율
		- 의회 내 여성 및 목표집단의 좌석 비율	- 성별 및 목표집단에 따른 평균 투표율(국가/지역 수준)	- 차별로 인해 공직진출이 거부당한 사례
부분속성	보편 초등 교육	중등·고등 교육 접근권	교육내용과 지원	교육의 기회와 자유
교육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지표	- 비용부담 없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가에서 채택된 조치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 모든 수준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교육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 		
	- 교육료 외의 부담금이 있는 공공학교의 비율 - 공공 초등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비율	-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공공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 학년별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중퇴율(목표 집단에 따라)	- 학교 교사들의 평균 급여 - 초등/중등교육 및 공교육/사교육 영역에서 교사 대비 학생의 비율	- “능동적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의 비율 - 100명당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 수
	- 초등교육 수료비율 - 취학연령아동의 미취학률	- 1,000명 당 졸업자 수	- 초등/중등/고등 교육시설에서의 학생 밀집도	- 전문 자격증 혹은 대학 학위를 이수한 여성의 비율
	- 청소년(15-24세) 문해율 및 성인(15세 이상) 문해율			

부분속성	거주적합성	공공서비스 접근권	주택비용 감당가능성	주거안정성	
주거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국제인권기구협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안정, 균분상속 및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법률의 발효일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의 복구, 재정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주거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NP에 대한 비율 - 철거민에 대한 주거보호 건수 및 공공지출 - 정책결정에 대한 목표집단의 주거권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공공 경비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이 개선된 식수, 위생시설, 전력,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하는 인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주택 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주거공간에 사는 인구 비율 - 건축법과 예규에 따른 내구성 있는 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 - 위험한 환경 내에 혹은 그 가까이 사는 가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럼가에 살고 있는 도시인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만 명당 평균 무주택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자의 보고된 사례 - 토지 혹은 재산소유권을 가진 여성의 비율 	
부분속성	좋은 일자리 접근권	공정/안전한 근로환경	훈련, 기술 향상 및 직업적 발전	강제노동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노동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기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기재된 주당 최대근로시간 - 직종별 고용 최저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교육 및 기술 향상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받은 목표 인구의 비율 - 연간 취업 증가율 (교육수준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직장에서 안정적 직장으로 계획한 노동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교육, 성별, 목표집단별) -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인구에 대한 비율 - 불안정고용(단기, 계절 고용 등)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럼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 - 적정수질의 마실 물, 위생 시설, 전기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향상 및 기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의 근로자 고용률 - 성별, 목표 집단 혹은 지역에 따른 장기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목표집단 및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 - 강제노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 계수와 5분위 최저/최고소득 혹은 소비지출 				

부분속성	근로자의 수입안정	의료에 대한 감당가능 비용으로의 접근권	가족, 아동 및 성인 피부양자 지원	목표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보장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사회보장권에 대한 보편적 실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혹은 세금기반 사회 안전제도의 발효일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약품을 포함한 약품 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 아동 등에 대한 공공 지원의 발효일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사회보장 자격과 혜택에 대한 목표인구의 교육 비율 - 사회보장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NP에 대한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안전제도 참여자로 등록된 노동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건강 시설 및 필수 의약품에 대한 1인당 공공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 아동 및 옴서사는 성인들에 대한 가구 지출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충족이 이루어진 사회적 지원요청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에 참여중인 노동인구비율 - 사회보장혜택을 요구하고 받은 근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족, 개인, 아동 및 성인 중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주택, 건강검진, 교육, 구호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실제로 이를 제공받는 인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이동 전후로 공식적/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국가빈곤선 이하에 놓인 개인의 비율 				
부분속성	의사의 자유 및 정보를 공유할 권리	정보 접근권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		
의사표현의 자유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 언론인의 윤리강령이 시행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및 비방의 비범죄화를 포함하는 미디어의 자유보호를 위한 법률의 발효일자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접근에 대한 법률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목적의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국내법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을 조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성차별적 혐오를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의 발효일자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보고에 대해 정부가 응한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혹은 사적으로 소유된 신문, 매거진,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 인터넷 사이트의 수와 시청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당 인터넷 사용이 이루어지는 개인 컴퓨터 수 - 1000명당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비방 등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사법처리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제재나 압력을 받았다고 보고한 언론인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아카이브 및 행정적 혹은 기업의 공익적 데이터의 비공개 사례 - 상이한 언어사용 인구집단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미디어 방송에 접근하는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및 비방의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국가나 기타 행위자에 의해 기자, 인권 옹호자 및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살인, 실종, 구금 및 고문의 사례 				

부분속성	법원/중재법원의 접근권과 법원에서의 평등	능력 있고 독립적인 법원의 공개심리	무죄추정원칙의 준수	어린이에 대한 특별보호	상급법원의 재심
공정한 재판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의 발효일자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탈, 뇌물수수, 부패 관련 사법 처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인구집단에 법적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아동의 사회 복귀 시스템의 발효일자과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보고에 대해 정부가 응한 비율 -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중재처리와 관련된 사례의 비율 - 경찰에 보고된 범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정 혹은 특별법정에 회부된 민간인의 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명시된 체포와 공판 사이의 시간차를 초과하는 사례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옥을 선고받은 청소년의 비율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대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빈곤층 피고인의 유죄판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공청회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재판(부재중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명당 체포/구금되는 아동의 수 - 청소년 재범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판결 중 감형 혹은 형이 무효화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적 구금의 사례 - 오심사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비율 				
부분속성	성적·생식건강 및 해로운 전통관습	가정폭력	직장 내 폭력,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회폭력, 법집행 인력의 권력남용	폭력발생 후 응급상황
여성에 대한 폭력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법원이나 행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기재된 결혼 최저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 및 근친상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발효시일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성희롱을 방지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력에 의한 폭력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알리는 운동에 대한 공공지출 -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기혼여성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주거지 및 은신처의 수 - 가정폭력 금지조항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춘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 보고된 성범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의학적, 심리적, 법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성범죄 및 기타폭력의 피해자 비율

결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례당한 여성의 비율 - 출생시 및 5-9세의 남녀 성비 - 산모의 사망률 및 위험한 낙태로 인한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생애 전반에 걸쳐 최근 혹은 이전 배우자에게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 성적 착취,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은 남성/여성의 사례 보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여성/남성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갈등이후, 혹은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살해 등의 여성폭력의 사례 보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살해율 - 연간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부분속성	법 앞의 평등과 인격 보호	공직자 및 민간인에 의한 직간접적 차별		정책결정 참여를 포함한 특별조치	
		적정 기준의 생활,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	생계기회의 평등		
구조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차별금지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가 시행된 시점 - 차별금지의 권리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배포 그리고 그 정기성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보호, 안전 및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정책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향유를 보장 혹은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간 및 범위 	
차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차별적 행동의 철폐를 위한 목표인구(법시행인력)의 교육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들 중 법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 공공건물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장에서 차별 및 과다근로를 경험한 근로자 중 소송이나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람들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육단계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인구집단들 간의 이해를 고취시키는 교육기관의 비율 	
결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오범죄, 가정폭력등 범죄의 목표집단별 발생수 빈도 - 일상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목표집단의 고문, 구금, 실종 및 자의적인 살해 보고 건수 - 개인번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대비 국선번호인을 선임한 빈곤층 피고인의 유죄판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구집단에 따른 교육 성취 - 목표 인구집단별 출생률, 사망률 및 기대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구집단별 고용률 - 목표 인구집단별 임금격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적 영역의 보직에서 목표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 - 국가하위/지역적 수준에서 선출 및 임명된 단체의 보직에서 목표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 차별과 증오범죄의 피해자 수 및 보상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비율 				

부분속성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	실종	건강과 영양	사형제도	
생명권	구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국제인권기구협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시관과 사인증명 시스템 제도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서 인신보호영장 조항의 발효일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를 폐지한 하위국가 행정단위의 수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혹은 생명의 위협을 야기한 물리적/비물리적 학대, 범죄에 대한 법률 집행관의 공식 조사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공판 전까지 구금한 사례의 비율 - 법원에 제출된 구금자 1,000명당 인신보호영장 및 유사한 탄원서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받은 보건요원의 보조 하에 출산이 이루어진 비율 - 식이에너지 소모의 최저기준 이하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균 시간 - 성별, 연령, 국적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 명 당 살인 건수 - 구금, 수감자 천명 당 사망자 수 -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등을 통해 보고된 자의적 생명 박탈과 그 위협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보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선고자의 감형 비율 - 사형 집행 빈도 	

출처: UN OHCHR(2012)

▷ FRA 아동권 지표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 시
가족 환경 및 대안적 돌봄	가정 사법 이주로 인해 가족들과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족 재 결합	아동을 고려하는 가정 사법 절차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접근 및 유괴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연령 및 수용능력에 맞춘 즉각적 협의에 대한 법적 의무 - 아동과의 독자적인 협의를 위해 가족 과정(family processes) 혹은 제공(provision)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전문 대리인을 제공할 법적 의무 - 연령과 수용능력에 맞춰 아동들을 즉시 중재과정에 포함시키는 권고 및 의무 - 가족 사법의 여건을 아동의 필요/권리에 맞춰 조정하는 법적 의무와 과정 - 아동들의 다양한 필요사항(언어, 연령, 문화, 장애 등)에 맞춘 법적 전문가를 위한 아동 상담 전문가 교육제도
		양육권, 접촉권 및 양육비 제도의 집행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행 절차 - 법체제, 절차 및 언어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특정한 어려움을 명시하는 제언 및 정보의 이용 가능성 - 접근 가능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규정 불이행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국경 밖으로 유괴된 아동 복지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연령, 수용능력 및 언어적 필요에 맞춰진 전문가 상담 및 지원 -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법적 정보 - 국제적 유괴 상황을 담당하는 당국들의 효과적인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 유괴로 인해 부모/양육자가 부재한 아동과 지속적·정기적으로 접촉할 안전하고 적절한 수단 - 접근 가능한 긴급 지원
		이민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이민과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독자적인 합법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국내법의 존재 여부 - 분리된 아동들의 합법적 의사표현이 권한부여 및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 분리된 아동의 권리 및 욕구를 대변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 조항 - 분리된 아동들에게 그들의 사회권 및 시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 - 합법적 의사표현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돕는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책의 존재 여부
		분리된 아동들의 취약성에 대한 이민 과정의 적응성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연령, 성별, 언어 및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이민절차 - 이민절차가 모든 측면에서 분리된 아동들의 최적의 이익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정기적 관찰과 검토 - 아동의 이민자 자격을 결정하는 직원(법조인, 통역인, 관할기관 임원 등)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규정 - 아동의 망명신청 제출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기까지의 평균적 시일
		아동들에게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가정 재결합 기회의 제공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혈통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아동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법률/정책 - 가정의 재결합이 아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명확한 지침(전체적인 위험 및 보안 평가를 포함하는)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 시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재결합 절차의 신속성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재결합 절차의 신속성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재결합을 시도하는 아동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정부 및 공공단체의 존재여부 - 1년 간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재결합의 달성 비율(아동이 포함된 모든 신청 건수 대비)(아동의 연령/성별/국적에 따라 분류) - 아동이 포함된 가정 재결합의 최초 신청으로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평균 경과시간(아동의 연령/성별/국적에 따라 분류) - 1년 사이 다른 회원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아동과의 재결합 비율(아동의 성/연령/국적에 따른 분류)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가정 재통합에 따른 아동 복지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 혹은 기타 전문가 임명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 - 가정 재통합에 따른(교육, 건강검진, 재정 지원, 상담 등의) 필수적 서비스들에 대한 아동의 즉각적인 접근 권리 - 출생국, 혹은 제 3국으로 귀환하는 아동들의 수용 조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절차
	아동 인신매매			
착취 및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일어나는 아동 인신매매의 전체 건수(인신매매의 형태 등에 따라 분류) - 유괴된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경찰, 청소년 복지 담당자 및 사회복지사, 의료 종사자, 난민과 이민 문제를 다루는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 청소년 복지 당국, 경찰, 보호 시설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괴 아동의 데이터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 모든 분리된 아동을 위한 즉각적인 법적 후견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 - 유괴된 아동의 신원파악, 협조 및 알선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조회 시스템
	- 피해자 보호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법원과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유괴 피해자들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항 - 유괴된 아동들에 대한 행정적 구금/이송 때까지의 구금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 - 유괴된 아동의 자국 귀환에 앞서 적절한 수준의 임시적 보호와 장기적 해결책의 결정 과정(위험 및 안전에 대한 평가 포함) -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숙소,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 교육에 대한 접근 등)의 질적 평가 시스템(아동의 관점에 의한 평가)
	- 가해자 고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 보고된 사례들에 대한 연간/5년 간 아동 유괴 사례에 대한 유죄신고 건수(disaggregation) - 연간 유괴된 아동들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disaggregation)
	- 아동유괴 예방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및 취약 집단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성적, 경제적 착취			
	-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아동착취: 성적 착취의 위험에 놓인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데이터 컬렉션 및 탐지 메커니즘(disaggregation) - 경제적 아동착취: 경제적 착취의 위험에 놓인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데이터 컬렉션 및 탐지 메커니즘(disaggregation)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 시
	- 피해자 보호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성매매: - 아동학대 영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정책 - 아동학대 영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바일폰 회사, 검색엔진 및 기타 관련자들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당국에 보고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조항 - 경제적 아동 착취: 전체 노동 사찰 방문 횟수 가운데 청소년 노동 방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 사찰 방문의 횟수(disaggregation)
	- 가해자 고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아동착취: '매춘 관광(sex tourism)' 을 다루는 치외입법 하에서의 고발 건수(disaggregation) - 아동 학대 영상: 아동에 대한 가상 영상 및 성 착취적 표현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의 생산, 배부, 수령 및 보유를 범죄로 지정하는 법적 조항
	- 아동유괴 예방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학대 영상: 의무적인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및 이를 통한 인식 고양
	아동에 대한 폭력		
	-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폭력의 성행/규모/형태와 아동 서비스의 영향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해 지정된 국가 예산 - 아동 복지 당국에 의해 보고된 방치 아동의 수 (아동 복지 당국에 보고된 아동 보호의 전체 사례 수 대비, disaggregation)
	- 피해자 보호	구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장소(집, 학교, 보건시설 및 법률 기관 등)에서 훈육수단으로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조항 - 보육시설, 초등 및 중등교육 내에서 고발 및 비밀 상담이 아동에 대해 갖는 이용 가능성 - 아동폭력 및 착취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지원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조항
	- 가해자 고발	구조/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폭력 건수와 관련된 경찰에 의해 보고된 아동폭력 건수 - 아동과 성별을 고려하여 아동 피해자/증인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보장하는 법조항(지정된 접견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진술 등)
	- 아동유괴 예방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양육 교육 캠페인에 대한 공공 지원 정책의 입안의 근거 -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 복지 당국, 경찰, 미디어 간의 구체적인 협력 정책 - 학교로 하여금 아동 보호 방침(학교 내 집단 따돌림 개념의 명시와, 따돌림 방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 등)의 채택을 요구하는 법조항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 시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의 소득빈곤	상대적 아동빈곤	결과	한계치 이하의 빈곤상황에 놓인 아동의 퍼센티지(표준화된 국가 중간소득의 60, 50, 40%) *구분(disaggregation)기준 - 가구당 아동의 수 - 편친 및 양친과 함께 사는 아동 - 부모의 노동 강도 - 민족적 출신
		관계적, 세대적 아동빈곤	결과	18세 초과 성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 대비 18세 이하의 전체 아동 인구의 상대적 빈곤
		빈곤격차	결과	빈곤 한계치 및 그 이하에 놓인 아동소득 대비 중간소득비율
		절대적 빈곤	결과	10/5/2유로 미만(민족 출신에 따라 소득수준 구분)의 소득을 받는 아동
		빈곤의 지속	결과	3년간의 빈곤 아동 퍼센티지로 측정되는 아동 빈곤률(아동의 민족 출신에 따라 구분)
	정부 대응의 영향	아동에 대한 상대적 공공지출	결과	가족/아동에 대해 기능하는 보조금 지출(사회 보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전체인구 중 0-17세 아동의 지분으로 환산
		아동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정부개입의 효과	결과	아동의 빈곤위험 회피에 사회적 이전(연금 제외)이 미치는 영향(사회적 이전이 시행되기 전후의 아동 빈곤 회피율을 비교)
		아동 복리후생	결과	종합지수(composite index) 로 측정된 국가들 간의 순위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소득 빈곤을 넘어서는 양상들	가족의 부	결과	가족의 부가 적은 아동의 퍼센티지
		아동의 교육용 소지품	결과	OECD의 교육용 소지품 척도(OECD-PISA)가 포함하고 있는 8개 항목(공부할 책상; 조용한 장소; 학업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계산기; 사전; 학교 교과서) 가운데 소지하고 있는 항목이 6개 미만인 아동의 퍼센티지
교육, 시민권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구조/결과	- 이민 아동이 현지 국민들과 모든 수준에서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의무 -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가족 외부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0) -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1, 2) - 15세에서 19세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3)	
	교육의 적응성	과정/결과	- 외국인 아동의 연령, 성별, 문화 및 언어습득을 고려한 학교 내 전문적 지원 제공(재정적 지원, 이동 보조, 보충적 언어수업) -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정서장애, 행동장애, 학습 장애로 인한 추가적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 환경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 시
	자아개발/시민권 및 참여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교내 활동들에 참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혹은 학생 자문회의 구성원 활동 □ 학급 반장 활동 □ 학생역할 혹은 학생모임 내에서의 활발한 참여 □ 또래 중재자로서의 활동 □ 학교 신문 제작의 공동참여 □ 또래 멘토 혹은 상담자 역할 -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혹은 청소년 포럼에의 참여 □ 아동 혹은 청소년 협회나 조직에의 참여 □ 아동 혹은 학생 자문회의 대표자로서 참여 □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에의 참여 □ 집단적 지지운동(서명운동 등) 참여 □ 시위활동 참여 □ 자원봉사 참여

출처: FRA(2009)

▷ FRA 장애인 정치적 참여 권리 지표

구분	주 제	지 표
구조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법 앞의 평등
		국가적 전략
		투표권의 제한
		투표에 필요한 법적 사항
		투표의 대안적 방법
		도움제공 의무
		항의/고소를 위한 법적 자격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설, 선거 자료 준비	국가적 전략
		선거관리자들에 대한 훈련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장기적 관리 기관에서의 투표		
인터넷 접근성		
오디오 비디오 접근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정치참여 기회 확대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도움제공 의무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과정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투표의 대안적 방법
		인터넷 접근성
		오디오 비디오 접근성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설, 선거 자료 준비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도움제공 의무
	정치참여 기회 확대	항의, 고소, 민원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
		고소 사례
		항의 및 민원 사례
		국제 항의 사례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DPO 개입
성명서 제공노력		
투표소에 대한 가이드		
DPO 개입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설, 선거 자료 준비	성명서 제공노력	
	투표소에 대한 가이드	
	항의, 고소, 민원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	
	DPO 개입	
결과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원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인터넷 웹사이트 접근성
		텔레비전 접근성
		선거관련 공지 접근성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설, 선거 자료 준비	투표소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인터넷 웹사이트 접근성
		텔레비전 접근성
		선거관련 공지 접근성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원	

출처: FRA(2014)

▷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

영역	지표	구체적 자료
경제적 웰빙	수입불평등 (총수입)	5분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수입 분배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외 수입에 대한 분배
	저수입	저수입에 대한 측정치
		저수입 차이
		지속적인 저수입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인 비율
		특정 보고 기간 내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인 비율
수입중앙값 (개인과가구)	개인과 가구 수입 중앙값	
	고등교육이수자들의 개인과 가구5분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국내외수입 중앙값	
부	가구의 순재산 중앙값(미혼 개인과 가족)	
	5분위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부 분배	
교육	교육 접근성	교육 접근성 비율(신체적 개선, 보조 서비스/장비 등-초등, 중등 교육졸업 장애인들의 교육 필요성 보고에 따른)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의 정부 교육 예산 사용 정도
	교육적 성과(25-64세)	졸업 비율(고등학교 졸업, 학사, 석사, 박사)
	입학비율 (중등, 고등교육 기관)	고등학교 입학 비율
		대학교 입학 비율
	학업 중도 포기 비율	중·고등학교 중도포기 비율
		장애로 인한 학업 포기 비율
식자(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등급	성인 식자 등급	
교육 차별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차별	
	인권위원회/재판소에 제출된 고소, 항의 비율	
고용	수입 지원에 대한 접근성	고용 보험 이용가능 비율
		모성, 육아 복지 이용가능 비율
	노동력 운용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비율
		능력이하 고용 비율(불완전 고용비율)
평등 고용 외국인의 능력에 대한 승인	진정, 고용, 승진 비율	
	능력과 직업의 적합성 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들의 불완전 고용 비율	

영역	지표	구체적 자료
	직업의 복지	노동조합비율
		모성, 육아 복지 이용가능 비율
		퇴직연금 이용가능 비율
		장기장애에 대한 복지 이용 비율
	차별(고용현장에서의 성희롱 포함)	차별 경험 비율
인권관련 기관이나 재판소에 제출된 고소, 항의 비율		
건강	건강관련 복지에 대한 접근성	건강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기 보고 비율
	아이와 어머니 건강	출산전후 육아 사망률
	건강 제한 조건	에이즈 전염
		비만 비율
	기대 수명률	기대수명률
	정신적 건강	자기보고 정신 건강
		기분장애 비율
		자살률
건강복지에 대한 차별	건강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느낀 차별	
	인권관련 기관/재판소에 고소 비율	
주거	주거의 질과 주거 구입 능력	적절한 주거환경에 살지 못하는 사람 비율
		주거에 50%이상의 수입을 지출하는 가구 비율
	주거 접근성	집수정,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비율
	노숙	집이 아닌 보조 주거 장치를 사용 하는 비율
	주거차별	경험했던 주거 차별 비율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정의와 안전	법 집행의 공정성	구금
		유죄 판결
		형 선고
		죄수의 의견 진술
		소년법의 사형
	가족 폭력	배우자 폭력
	증오 범죄	자기 보고 증오 범죄
		증오범죄 사건

영역	지표	구체적 자료
	폭력 범죄	폭행, 성범죄, 절도
		살인율
	범죄 취약성	범죄 취약성에 대한 인식
	법 집행에서의 차별성	재판, 치안유지에서의 차별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정치적 개입과 사회 통합	정치적 개입	투표자 참여율
		입후보 비율
		선거율
	사회통합	국가, 시, 지역에 속해 있다는 느낌의 정도
		봉사 비율
		시민 참여 비율
	특정 서비스와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차별	특정 서비스와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차별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출처: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0)

▷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여성 권리 지표

구분	지표	측정 사례	근거 조항
교육	교육 등록	고등학교 등록 고등교육 등록	교육권은 캐나다가 비준한 사회권협약 13조와 아동권리협약 28조에 근거함 여성차별철폐협약 10조는 교육 영역에서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교육 수준	최고 학력	
	고등학교 중퇴		
	교육 보조에 대한 접근	정부 후원 학생 대출 이용 정부 후원 학생 대출 유형 정부 후원 학생 대출 평균 금액 학생 대출 상환의 어려움 학생 대출 체납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고용	노동력에서의 지위	고용 지위 단수, 복수 문제 유형 및 산업 분야에 따른 고용 고용 유형 업무 위치 만성적 실업	사회권협약 6,7조는 일할 권리, 생계 유지 기회, 우호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함
	전문화와 고용 간의 관계		
	일 관련 혜택	고용주 후원 의료 보험 이용 가능성 고용주 후원 연금 보험 이용 가능성 고용주 후원 생명 보험 이용 가능성 노조 가입 및 단체 협약에 의한 보험	
	일의 질	업무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소득 보조에 대한 접근	고용보험 혜택 사회적 지원	
경제적 웰빙	가구 실소득액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 분위별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	사회권협약 6-11조는 공정한 급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사회적 안전, 적절한 생활 수준 등의 권리를 규정함
	저소득	저소득 상태 저소득층 평균 소득 격차 비율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정부의 개인 이전	
	부	순자산 중위값 분위별 순자산 중위값	

구분	지표	측정 사례	근거 조항
주거	주거의 질과 구입 능력	핵심적 주거 수요 수리가 시급한 주택 세전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에 지출 세전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에 지출	적절한 주거는 사회권협약 11조에 규정되어 있음
	홈리스 상태		
	주거에서의 차별		
건강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건 수요 미충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의사 접근성 의사 접근이 불가능한 이유	사회권협약 12조는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여성차별철폐협약 12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체질량지수		
	기대수명		
	정신 건강	생활 스트레스 업무 관련 스트레스 기분 장애 불안 장애	
	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노동에 대한 건강 상태의 영향		
	공공 의료시설 또는 의료 종사자 관련 차별		
정의와 안전	사법 시스템 경험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 유치장 구금 사법 시스템에 의한 결정 가석방	인권은 구금, 체포, 기소, 선고, 수감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 및 사법 시스템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함(UN, 2005).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찰과의 접촉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및 법원 관련 차별		

구분	지표	측정 사례	근거 조항
	가정 폭력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재정적 학대 지난 5년 동안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학대 과거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재정적 학대 지난 5년 동안 과거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학대	
	증오 범죄		
	범죄 피해자		
	범죄에 대한 취약성	해가 진 후에 혼자 걸을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해가 진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저녁 또는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범죄로부터의 개인 안전 주변 지역의 범죄율 변화	
	보호소 이용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정치 참여		캐나다의 법률과 자유권 협약 25조는 투표권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여성차별철폐협약 7조는 여성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서 남성과 평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조는 여가 활동, 체육 등 문화적 측면에서도 남성과 동일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
	사회 통합	지역사회 소속감 자원활동 시민단체 활동 참여 인터넷에서 증오 또는 폭력 접촉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전반적 차별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 서비스 및 여가에서의 차별 거리에서의 차별 상점, 은행, 식당에서의 차별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캐나다 국경 출입 관련 차별	

출처: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4)

【부록 4】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구 분	가입년도	보고서 기한	보고서 제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연도	최종견해 공포년도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1990	1991	1991		1992
		1996	1997	1999	1999
		2003	2005	2006	2006
		2010	20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1990	1992	1993		1995
		1997	1999	2001	2001
		2006	2007	2009	2009
		2014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78	1980	1980		
		1982	1982		
		1984	1984		
		1988	1988		
		1990	1990		1991
		1992	1992		1994
		1994	1995		1996
		1996	1998	1998	1998
		2000	2002	2003	2003
		2002	2006	2007	2007
		2010	2012	2012	2012
	2016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84	1986	1986		1987
		1990	1989		1994
		1994	1994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2002	2003	2007	2007
		2006	2007	2007	2007
		2010	2010	2011	2011
		2015			
아동권리위원회	1990	1993	1994	1996	1996
		1998	2000	2002	2003
		2008	2009	2011	2012
		2017			
고문방지위원회	1995	1996	1996		1997
		2000	2004	2005	2006
		2012			
장애인권리위원회	2008	2011	2011	2013	2014
		2019			

【부록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 소수자집단의 핵심적 시민·정치적 권리(숫자는 우선순위를 표시)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노인	성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군인
신체권	생명권		5				4	3			4
	사형의 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3
	구금 환경										
	인신매매 금지	1	3		3						
	안전할 권리	2	1	2	2			1		3	
	실종		4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1		2	2	3		2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2	1	1
	의견과 표현의 자유		2						1		5
	집회의 자유								5		
	결사의 자유					3					
	사생활 보호권	2			4		4		2		
행정· 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4	1	1			5	2
	사법적 구제						3				
	피해배상 청구권										
	사면 및 면책										
참정권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4		5							
	공공행정에 참여할권리	4		5	4					3	
	공공서비스 접근권			3	1	3		3		5	
정보 인권	정보사생활 보호권								5		
	정보접근권			3		5		2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4		

▷ 소수자 집단의 핵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숫자는 우선순위를 표시)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노인	성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군인
적절한 생활 수준 향유	식량권										
	주거권	4		5		3	1	4	3	2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권	소득보장			4			4	1		2	
	빈곤/양극화							3		5	
	사회복지										
	사회보험					4					
노동권	일할 권리	2		2	3	1	3		3	1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	3				1			5		
	노동조합권					5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1	1	4	2	1	5		5
	아동 및 모성 건강	1	1								
	육체적 건강										3
	정신적 건강				5				2		1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5		5			2	
	교육선택권										
	교육의 질		3								
	교육 불평등.차별		3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		3	2	2		5	4	5		1
	과학의 발전을 향유										
	창작물에 대한 보호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3				1		
기업과 인권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공헌										
	건전한 거버넌스										
	환경보존										
환경권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4	2								3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무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환경권증진에 참여할 권리										

【부록 6】

인권통계 연구용역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이행 기제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UN인권최고대표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조약정보 인권통계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조약기구 정기검토 최종보고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조약기구 특별보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보고서 목록 ICC Accreditation Report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경찰·소방·교정직여성공무원성차별개선을위한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시민· 정치적 권리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법무연수원 국민안전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병무청	사망원인통계 범죄통계 전국출산력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사법연감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 및 구제 통계 인권상담통계 국감자료(이한성, 이병석, 홍일표 새누리당의원제출) 치료감호수용현황 범죄백서 국방통계연보 재해연보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분석 장애인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요보호아동발생 및 조치 현황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고용노동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의신문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헌법재판소 검찰청 지방변호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학대 통계 노인학대현황 내부자료(유대운의원청구자료) 해외이주신고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국내인구 이동통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통계 한국의 종교현황 등급분류통계 경찰통계연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백서 한국시민사회연감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안전행정통계연보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소송통계 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검찰통계시스템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총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현황 제출자료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백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통계청 법무부 환경부 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OECD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거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임대주택통계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수질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통계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장애인현황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장애인 농가경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예산안 (재정통계) 사회복지시설현황 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장애인실태조사 2013 한국통계연감 건강보험백서 보육통계 국민연금 통계연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통계연감 지역별 고용조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고용보험DB 고용노동백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산업재해현황분석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통계 의료급여통계 보훈병원 사업실적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인구동향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생명표 노인실태조사 정신질환 실태조사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살실태조사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기본통계 어린이집 이용자 통계 유치등통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평생교육통계 청소년백서 Education at a Glance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통계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특수교육통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문화체육관광예산 여가문화비 대비 가계지출비중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ISO 26000, UNGC 노동쟁의조정 사례집 기업 노동자 차별 권고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동반성장지수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차별 권고 내역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노사브라보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전자공시시스템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저작권법 위반 건수 기업의 인권위 권고 수용 비율 환경종합정보서비스 대중소탄소파트너십 사업 기업별 지속 가능 보고서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환경통계연감 도시계획현황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보호지출계정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업환경관리 현황 국가재난정보센터

【부록 7】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소분류별 법적 근거

중분류	(1.1.) 국제규범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 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유엔헌장 전문). -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유엔헌장 제2조 제2항). - 유엔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유엔헌장 제4조 제1항). -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유엔헌장 제93조 제1항). - 유엔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을 약속한다(유엔헌장 제94조 제1항). - 유엔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 한다(유엔헌장 제103조).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2항). -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킨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d)호). -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그들의 헌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한다(인신매매방지협약 제27조). -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중분류	(1.1.) 국제규범
세분류	(1.1.1.) 국제인권법 준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b)호).
중요성 및 측정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보장과 보호는 한 나라의 국내적인 법률과 정치제도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국제인권조약과 기구의 역할이 크다.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고 국가들 간에 서로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국제인권레짐에 가입하는 것이 인권의 보장과 보호의 시작이 된다. -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인권보장과 보호의 중요한 축이므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조약비준현황 →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중분류	(1.1.) 국제규범
세분류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9조 제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킨다(자유권규약 제3조 (b)항).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 협약 제44조 제6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레짐은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을 국제법화했을 뿐 아니라 조약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각국의 인권보호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 정부가 세계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또한 조약기구들과 더불어 국제인권규범의 중요한 실행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국제인권기구에 어떻게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 참여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 참여도 평가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내 우리 정부 및 전문가의 활동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된 시민단체의 보고 및 개인 청원현황 및 결과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인권보호노력 평가

중분류	(1.2.) 국내법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단).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 재판소 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9조).
--	---

중분류	(1.2.) 국내법
세분류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9항).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 -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어선법 제6조). - 양성평등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 -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이 국내사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국내법으로의 입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행정기관의 노력, 판단하는 사법기관의 적용 모두 필요하다. 국제규범이 국내법으로 법제화되어 행정기관이 실행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이행기제가 존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약의 법제화 →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의 국제인권규범 원용 →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

중분류	(1.2.) 국내법
세분류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나라가 인권보호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중요한 이행기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여부와 활동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인권 측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 국가인권기구의 재정, 인력의 전문성, 진정서 처리 현황 등의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특히 국민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 판단여부도 중요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평가등급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작성 및 인권상황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및 인력 현황 → 국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및 신뢰도 → 법무부 인권국 재정 및 인력 현황 → 공공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평가

중분류	(1.3.) 인권교육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교육은 인간성의 원숙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제5조 제1항 (a)호).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에 목표를 지향하는데 동의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b)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5항). -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6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항).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정신보건법 제6조의2 제1항).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담당(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9 제1항).
--	---

중분류	(1.3.) 인권교육
세분류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국제법적 근거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3항). -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4항).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향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함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존중의 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반국민, 공무원, 인권 관련종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취약집단 중 하나인 군의 인권교육이 시행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 집단을 물론 교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교육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집행공무원의 인권교육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 전국 초중고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교수) 대상 인권교육 → 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의 인권교육 →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현황 → 국민의 인권교육 경험

중분류	(1.3.) 인권교육
세분류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국제법적 근거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 유네스코 현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해 직장 내 인권침해 요소 뿐 아니라 상업적 거래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구성원 모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인권교육, 특별히 소수자 인권은 해당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인권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인권교육 → 시민단체(NGO)의 인권교육

중분류	(1.4.) 시민사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 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분류	(1.4.) 시민사회
세분류	(1.4.1.) 인권 NGO 활동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인권에 관한 학술적 연구들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국가의 인권수준이 향상된다고 보고한다.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인권이슈에 관해 어떠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중분류	(1.4.) 시민사회
세분류	(1.4.2.) 인권 NGO 거버넌스 구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파악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 여론 환기 등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인권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따라 인권의 더 큰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부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책, 법령, 제도수립에 시민단체를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국민 또한 시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혹은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 예산 →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정부법령 및 정책 수립 참여 →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참여 경험 →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지원 요청 경험

중분류	(2.1.) 차별 현황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단).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전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1.) 인권상황 평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6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1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 문항 이외에도 3년 전과 대비한 한국의 인권상황 평가, 다른 나라와 대비한 한국의 인권상황 평가 결과와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음
지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및 인권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2.)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주요 인권 침해자가 누구이고, 인권침해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측정하여 향후 인권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표	→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3.) 차별의 심각성 평가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자유권규약 제26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민원사항 처리(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4항)

	-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경찰, 군대, 검찰, 방송, 국가정보원, 구금시설, 기업, 복지수용시설, 학교 등 주요기관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주요 영역별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
지표	→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차별 요인별 차별문제의 심각성 정도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4.) 차별경험 유무
국제법적 근거	-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제3항 제1호)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군인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군인사법 제51조의4)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해 직접, 간접 경험 유무, 대처방안 및 대응방안과 함께 무대응의 원인을 확인하여 차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지표	→ 차별경험 유무: 각 요인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

중분류	(2.2.) 차별요인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단).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전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자유권규약 제26조). -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중분류	(2.2.) 차별 요인
세분류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계약국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3항). - 계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 계약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항). - 누구든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5호).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 출신국가는 다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출신 공개로 인한 차별경험: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신 공개로 학교에서 힘들어 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 → 탈북청소년 차별 경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시설에서의 차별 없는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2.) 성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2조). -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피선거권을 갖는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또한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 양성평등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 -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제5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현재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며, 특히 남성중심의 조직에서는 필수적으로 차별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 경찰/소방/교정직: 남성 경찰/소방/교정직 대비 여성 경찰/소방/교정직 유/불리 정도에 대한 인식 → 성차별 피해 경험 - 경찰/소방/교정직: 여성 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차별 피해 경험 유무 →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인식: 여성 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별분리채용 찬반 →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여군의 복무 환경적 특성으로서 조직문화와 관행이 여군 친화적으로 인식 정도 → 군대 내 성차별 심각성 정도: 여군이 남군과 비교하여 부문별 유·불리를 많이 느끼는 정도 → 군대 내 성차별 피해유형 및 빈도: 여군 차별 피해 유형별 발생의 빈도 → 채용과정 중 성차별 요인: 성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인: 채용과정 중 성별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 기업 내 성차별관행 인식: 중소기업 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인사총무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들은 평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상위 100대 기업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 → 공공연구기관 성별 연구원 수 및 비율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평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
--	---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3.) 경제적 지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및 기타의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3조). -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경제적 지위로 인해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 검토가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과정 내 경제적 지위 차별 경험 정도: 채용과정 중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경험 정도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결손가정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4.) 나이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4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8조 제4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되는 추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자유 및 인권에 대하여도 아직 인권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이에 대한 차별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 경험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 → 연령차별 인식 정도-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차별 대우 인식 정도 → 각 채용과정 단계의 연령차별 정도: 나이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 이유: 나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5.) 용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여성에 관하여 용모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용모에 대한 언급과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인권신장에 있어서 중요한 고찰점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 외모관리를 요구받은 경험 여부 →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과 원인: 채용단계별 차별인식 중 용모 및 신체조건 차별원인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6.) 종교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국내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강제적인 종교권유 등은 현재에도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차별 문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지표	→ 학교 내 종교차별 인식: 학생들의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 → 동아리 활동에서의 종교 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 → 학교 복지 및 생활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유무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7.) 학력·학벌
국제법적 근거	-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1조 제1항). - 당사국은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3조 (a)항).
국내법적 근거	-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 -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6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학벌에 대하여 채용 시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한 차별 검토가 필요함
지표	→ 학력별 채용과정 중 차별인식: 학력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의 학력차별 요인: 학력별, 경력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8.) 성적지향성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국내법적 근거	-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치료감호대상자”란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 -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도 종교단체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극명히 나타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이러한 성적 지향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유형: 성적소수자차별 또는 괴롭힘의 유형 → 성소수자 차별 인지: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여서 또는 성적 소수자로 보여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 성소수자차별 경험에 대한 결과: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결과 →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9.) 장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8조 제4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 -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 제1항). -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p>- 장애인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아직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p>
<p>지표</p>	<p>→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 장애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 정도 : 장애인의 채용과정 중 장애차별 경험 정도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집단구성원 포용정도</p>

<p>중분류</p>	<p>(2.2.) 차별요인</p>
<p>세분류</p>	<p>(2.2.10.) 병력</p>
<p>국내법적 근거</p>	<p>-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p>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메르스,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질병 상의 이유로 직장 및 학업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지표	→ 질병에 대한 차별 심각성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질병력으로 인한 차별경험 정도

중분류	(3.1.) 신체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5조 제1항). -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아니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6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외국인이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 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 -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선원법 제25조의2).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1호).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1.) 생명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1호).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 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0조). -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1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외국인이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252조 제2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은 국가에 대해 생명의 침해행위를 방어하는 소극적 생명권(대국가적 방어권)과,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요구하는 적극적 생명권(대국가적 보호청구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 생명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살인, 사형, 안락사, 낙태, 자살 등은 모두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되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률 현황: 인구 10만 명 당 자살건수 → 살인 사건 수: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 → 영아 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 (1,000 분비 표시) → 모성 사망률: 가임기 여성(15-49세) 10만 명 당 모성 사망자 수 (100,000 분비 표시) → 임신중절 현황: 시술의료기관 조사를 통한 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 군인과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일반인(20~29세 남자기준)과 비교한 10만 명당 군인 자살자 비율 → 군 사망사고 현황: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 →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현황: 장애인에 대한 고지된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제불임 현황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2.) 사형의 제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 -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 -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a)호).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제1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군형법 제3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여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사형제도의 폐지가 국제적인 추세이다. - 사형의 범죄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형사 정책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선고율 현황: 제1심 형사공판선고 중 사형선고의 비율, 이중 특정 죄목 (가령, 국가보안법) 에 따른 비율 → 간첩죄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비율: 간첩죄 기소자 중 제1심 형사공판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 → 사형 선고자 사면 비율: 사형선고 복역자 중 사형을 사면 받는 비율 → 사형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 사형제의 존속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3.) 고문 및 비인간적처우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5조). -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 거부권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7조). -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문방지협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을 비굴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전면 부인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 국제인권법의 질서에서는 고문에 대해 절대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고문방지를 위한 규범을 통한 고문 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자백위주의 수사관행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제의 미비에 기인한다. -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문실태를 통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및 가혹행위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 중 폭행, 가혹행위, 폭언, 욕설에 관한 진정서 숫자(검찰, 경찰, 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대상) 및 처리결과 통계 → 고문 및 가혹행위 인권위 상담현황 : 인권위에 폭언, 가혹행위, 폭언, 욕설을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검찰, 경찰, 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대상) 및 처리결과 통계 →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현황: 형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 및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기소된 숫자 → 검찰 조사기간 중 피의자 및 참고인 자살률 : 피의자 및 참고인 10만 명당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비율 → 영상녹화 실시 현황: 수사 및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율 →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인식: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4.) 구금환경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 - 미결 피구금자에게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시설의 안전 및 양호한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및 감독에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가 구금된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통신을 하거나, 이러한 자와 접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2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신보호법 제1조).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인신보호법 제3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시설 내 수용자는 구금자라는 맥락성으로 교도관에 의한 징벌, 계구사용, 외부교통(통신, 접견), 의료, 시설 내 처우, 권리구제(청원, 진정, 소송)등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 개연성이 높다.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구금시설내의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구금시설의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수용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상담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상담을 의뢰한 숫자 (폭행/가혹행위 제외), 처리결과 통계 →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진정서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 수감시설 내 사망자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사망 현황 → 수감시설 내 폭력·폭행 현황: 교정시설별 폭력·폭행치 숫자 → 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교정시설 의사 정·현원 숫자 →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현황 → 교정시설수용 현황: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수용정원, 수용인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경찰유치장 현황: 경찰 유치시설(유치장, 유치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치료감호소 현황: 치료 감호소 유치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수용기간, 면회 기간 등을 포괄하는 통계 →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교정시설 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진행 시간, 참여율 통계 → 대용감방구금 현황: 대용감방 현황, 대용감방별 구금자 숫자, 구금기간 통계 →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유로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 현황과 체류 기간에 관한 통계 → 군교도소 연말 수용자 현황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5.) 인신매매 금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된다(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3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6조). -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는 인간을 사고파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며 인신매매와 아동매매 등은 인류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전 지구적인 인권침해 범죄이다. -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의 약취·유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 등을 인신매매의 죄로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인신매매와 성적착취 등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성매매현황: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 인신/성매매 신고현황: 접수된 신고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6.) 안전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5조 제1항). -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6조). -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정).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제1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은 생명과 신체, 재산과 자유의 침해, 범죄, 자연재해, 환경오염, 식생활의 안전, 운송수단의 안전, 건강과 보건의 안전 등 도처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를 살고 있다. - 급격이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위험환경의 증가로 인해 국가에 의한 안전 보호의 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 욱 높아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또는 국가로부터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 안전할 권리는 인권이자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적 기본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인권으로서 안전할 권리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항목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자 현황: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실종·이재민 수, 피해규모 등 피해 현황 통계 → 범죄 피해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등 범죄피해자의 숫자 → 사회안전 인식도(여성):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 범죄두려움: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 비율 →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 아동 안전사고 현황: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하고 있음.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학교폭력 경험 → 학교에서의 체벌 및 욕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 학대 경험률: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포함 (노인, 아동,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7.) 실종
국제법적 근거	-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한해에만 실종아동 등 가출인이 37,522명이 발생하였다. 실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실종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온다. - 실종아동의 경우에는 단순미아, 가출, 버려진 아이, 가족 또는 비가족에 의한 유기, 범죄에 의한 약취와 유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실종아동의 부모와 가정은 불안, 초조, 자책감, 죄의식 등에 시달리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늘고 있다. - 실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유인 현황: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의 숫자와 이와 관련된 통계 → 약취·유인 검거, 입건, 기소율: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 입건율, 기소율 → 실종아동 등(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및 가출인 발생현황: 실종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가출인 발생 및 미발견 건수
----	---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 구금된 개인은 가장 인근에 소재하는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6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 영장주의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이유 고지의무, 가족 등에 통지의무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영장의 발부·제시를 통한 형사절차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적 보장원리 중의 하나이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신체의 자유를 위한 절차적 보장원칙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사건 비율: 기소자 숫자 대비 구속 사건의 비율 → 경찰 구속 현황: 각급 경찰의 적발숫자, 구속 숫자, 불구속기소 → 수사기관·수소법원 구속기간 현황: 검찰·경찰의 구속기간,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통계 → 군 영창 구금현황: 군 영창 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48시간 구금 후 훈방 현황: 48시간 동안 구금한 후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 → 긴급체포 후 영장현황: 긴급체포자 대비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 → 체포·구속적부 심사 처리 현황: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적부의 심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계 →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제출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사회권규약 제18조). -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자유권규약 제41조 제1항 (e)). -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p>※ 기본적 자유를 헌법상 사회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 전단).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1.) 이동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3조). -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2조 제1호). - 외국인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자유권 규약 제13조). -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 이동의 자유). -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1조 주거). -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4호).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d)(i)(ii)). -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 복지법 제24조). -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주거 기본법 제2조 주거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주택보급).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의 자유란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 뿐만 아니라, 국외 이주의 자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와 국적이탈의 자유를 포함한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등이 차별 없이 이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하고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계의 구축은 국제적 인권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이주 현황: 해외이주신고자와 현지이주신고자를 합한 해외이주자 숫자 → 북한방문자 현황: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현황 → 체류외국인 현황: 장기, 단기, 불법 체류를 합한 체류외국인 숫자 → 국내인구 이동 현황: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구대비 이동률 →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 난민 인정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포함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시각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연결률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호).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호).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 인종, 피부색, 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호 (vii)목).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교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 종교의식의 특례). -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군인복무규율 제30조, 종교생활).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거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의 질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 양심의 자유는 양심 결정의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 양심과 사상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교와 교육의 자유를 말하며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한 침해를 거부하는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 현실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에서는 국가보안법, 양심의 자유에서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종교의 자유에서는 종립학교의 예배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 기소, (불)구속, 불기소 숫자 통계 → 입영·집총 거부자 현황: 입영·집총 거부자 숫자와 이에 대한 징역부과 등 처리 숫자 → 종립학원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숫자 → 종립학교 의무예배시간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에서 의무예배에 할당한 평균 시간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호).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호). -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viii)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문화기본법 제4조).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조 제4항)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언론자유 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개인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 표현의 자유는 주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나 언론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보도 및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등이 있다. -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 의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서 이에 대한 통계의 구축은 표현의 자유를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의결 현황: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법정조치, 행정지도 등 제재조치를 의결한 숫자 → 영상물 등급분류현황: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통계 → 영상물 등급분류 위법 판결 현황: 제한상영가 등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소송과 이에 대한 위법판결 통계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현황: 영화제에 대한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현황 및 법적 분쟁 현황 → 언론사 파업현황: 언론사 파업 숫자, 참여자 규모, 지속일수, 징계, 해고 통계 →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4.) 집회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자유권 규약 제21조).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ix)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의 자유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달리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 적극적 집회와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등 소극적 집회가 있다. - 집회의 자유에서 문제되는 것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에 따라 금지되며, 신고제는 사전제한이 아니므로 무방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시위 발생 현황 → 집회금지 통고 현황: 집회시회 금지통고 건수, 신고건수 대비 금지 통고 건수 비율, 시위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등 통계 →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 수 →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숫자, 유형 및 대상 별 (교사/공무원 포함) 통계 → 시위 중 부상자 비율: 집회시위 중 부상을 입은 참가자의 숫자 및 시위 참여자 대비 비율 → 야간시위 처벌 현황: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및 기소된 숫자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5.) 결사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자유권 규약 제22조 제1호).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ix)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ILO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ILO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호) - 공공부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ILO협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제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의 자유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 또는 잔류의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 결사에는 정치적 결사, 경제적 결사, 학문적 결사, 예술적 결사, 사회적 결사 등이 있으나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권과 언론 등의 정당가입제한과 노조결성의 제한을 들 수 있다. - 결사의 자유가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조직 및 가입 현황: 법정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 숫자, 가입된 당원 수 통계 → 결사체/NGO 현황: 시민사회단체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 → 공무원노동조직 조직 현황: 공무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 교원 노동조합 조직 현황: 교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 언론노동조직 현황: 언론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6.) 사생활 보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 -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4조 제2항).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7조).

<p>국내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 법원은 선정기일에서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 인간은 자기만의 사고와 생활영역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생활의 영역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침해사례를 통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침해 비율: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신고건수 통계 →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및 유출현황: 공공기관별 주민번호 누출 및 유출 건수 →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현황: 국가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건수 → CCTV 설치현황: 범죄예방, 화재예방, 고동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의 숫자 →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등 권리침해 위반유형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 사생활 침해 경험: 지난 3년 동안 본인, 배우자, 가족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비율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에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b)). -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 -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 -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구별 없이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법적 정의는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나 내용은 유사함(국가의 특정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권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제1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0조). -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4조 제2항). -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문방지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후단).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직원의 제척, 기파, 회피(형사소송법 제2장)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충분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감사와 피고인 중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증인과의 접촉을 어느 한 편이 독점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피고인 숫자 대비 국선변호사 선정 사건 비율 →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헌법소원심판 사건 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선임건수 및 비율,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 인용율 등 통계 → 국가소송 및 처리건수: 국가소송 접수, 처리, 승/패소 건수 및 비율 → 즉결심판청구 현황: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청구한 심판절차의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 → 재판 전 구금기간 현황: 법원의 승인 조치 없이 구금되는 기간을 포함한 1심 재판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기간 통계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2.) 사법적 구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8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킨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b)호). -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이나 당해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설치된 여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청구가 심사되고 결정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83조 (b)호). - 모든 사람은 관련국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단순하고 신속하거나 여타의 효율적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미주인권협약 제2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란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행정부에 속한 행정재판이 아니라 사법부에 속한 법원의 사법재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사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에 의하여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늘날 3권 분립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대한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법부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특히 사법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법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등을 통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영장 건수 대비 기각된 영장의 비율 →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법률구조 숫자 → 사면실시 현황: 사면 신청자 숫자 및 사면 허용자 숫자 통계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3.) 피해배상 청구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 -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이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국가에 대해 긴급 구조를 청구하는 것이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이다. - 피해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운용현황을 통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 고문피해자 사법구제 현황 →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중분류	(3.4.) 참정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2항). -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3항).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를 보장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5조 (a)). -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특히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a)).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1.) 투표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b)).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a)). -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국민투표법 제7조). - 19세 이상의 주민 중 다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전단). -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지방자치법 제3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권제 하에서 투표할 권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결정하는 근원적 권리로서 정치적 권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원리이다. -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할 권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가지는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행사 방법이다. - 투표할 권리에서 예외적인 것은 재외국민, 수형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들의 투표권 행사내용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 노인,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 수형자의 투표참여 현황 → 공직자선거법위반 현황: → 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 현황: 주요 국가별 선거 가능한 유권자 대비 등록자 비율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2.) 선출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b)). -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a)). -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41조 제1항).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헌법 제67조 제1항).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될 권리는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며, 공무담임권은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 등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를 말한다. -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라고 해서 국민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인정한 것을 아니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일정 자격을 구비해야만 된다. - 선출된 권리와 인권과의 관계는 형식적 요건으로는 선출될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여성, 장애인 등 고위직에 취임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선출될 권리에서는 성별, 지역별, 장애여부 등에 대하여 고위직에서 접하는 비율이나 선출직에 당선된 비율 등을 통계적으로 추적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국회에서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율임 → 장애인 후보자 당선 현황: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 및 당선인 통계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2항). - 모든 시민은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5조 (c)) -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b)).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공무원 제안규정 제6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는 직접 공직에 진출하거나,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공위원회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에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도 포함된다.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거나, 고위직에 임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견을 공공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한 공공행정 참여정도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공공행정진출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재판 현황: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들 숫자, 판결 결과 통계 → 행정민원 현황: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 서비스 현황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연구직과 지도직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가,나급)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정부 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법률,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 공무원 개방형 임용 추이: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중분류	(3.5.) 정보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정, 주거, 서신 또는 기타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이주노동자와 그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중분류	(3.5.) 정보인권
세분류	(3.5.1.) 정보접근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c)항). -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 -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12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 시민참여의 활성화,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국민은 행정정보공개제의 제도화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보독점을 방지하고 행정의 비밀주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정처리로부터 합리성을 유지하게 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들이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 (기관별, 종류별) → 정보격차수준: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보유 현황 → 가구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이용 현황 → 장애인 정보화격차: 일반국민 정보화수준 대비 장애인계층 정보화 수준 →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 숫자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용 언어 표준화 현황: 시각 장애인용 원문DB구축, 특수 언어 표준화 작업 건수

중분류	(3.5.) 정보인권
세분류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 간섭받지 않고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잊혀질 권리(망각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37조 제1항) -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1항).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표현의 자유가 주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면, 인터넷 시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온라인상에서 참여에 의한 민주적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시정요구 등이 통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심의 의결 현황: 정보통신 심의 건수, 시정요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소추사건현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숫자, 기각된 숫자, 및 형사 처벌된 숫자 →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와 각하 건수 비율

<p>중분류</p>	<p>(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p>
<p>국제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모든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p>국내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1.) 식량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a)).할 것. -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b)). - 영양실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식량의 생산, 공급 및 분배 방법의 개선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련 국내정책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헌법 제121조 제1항).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헌법 제121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식량권은 식량으로의 접근과 관계된 개념으로, 식량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토지나 다른 자연자원 또는 식량을 구매하여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는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식량의 충분함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 결식률 →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로 인한 결식 비율(%) → 아동무상급식지원 현황 → 영양섭취부족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2.) 주거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시골여성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h)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ii)호).
국내법적 근거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주택에서 한 개인이나 가족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일부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주택은 휴식을 취하는 곳이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구성요소가 되며 정부정책(도시계획, 사회복지 등)의 중요한 의제(agenda)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윤지영·전지은, 2012).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 →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비율 →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시도별 주택 자가보유율 →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주택의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 자유 침해 → 1인당 주거면적(성별): 남성대비 여성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 가구원 수
----	---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3.)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시골여성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h)호).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고,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항 (c)).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 - 국가의 자원관리의무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먹는물 관리법 제2조 제1항). -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수도법 제2조 제1항). - 해양심층수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전 세계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물과 위생, 특히 공중위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박진솔·이미경, 2012).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BOD 발생 부하량 → 식수 안전: 식수의 안전기준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발견 → 물부족 통계: 식수 및 산업용수가 부족한 지역별 통계 → 단수경험 가구 수
----	--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9조).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 종족의 구별없이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v)호). - 모든 사람은 생계수단의 보장을 저해하는 노령 및 장애로부터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9조 제1항) -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남녀 동일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호). -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 제27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1.) 소득보장(공공부조)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3조 제1항).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5항).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영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공공 부조를 지원해주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기초노령 연금수급률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2.) 빈곤/양극화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불평등과는 달리 양극화는 유사한 집단들의 집락성과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갈등 또는 사회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 다문화가족의 월평등 가구소득의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액 분포 → 상대적 빈곤율: 총인구 중 소득빈곤선 이하의 인구수의 비율(아동, 여성가구주, 노인, 장애인 등 인구 집단에 따라 제시) → 소득 5분위 배율: 하위 20% 균등화소득 대비 상위 20% 균등화소득의 비 → 지니계수 → 최저생계비
--	--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3) 사회복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6조). - 각 개인의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모든 사람의 안전 및 일반복지의 정당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된다(미주인권협약 제3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 국가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생활인원 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가사간병 방문사업 이용자 수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장애인인권, 장애인인식 개선, 이동권 보장 등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 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4) 사회보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9조). -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남녀 동일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여성에 대하여 사회보장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 협약 제14조 제2항 (c)호). -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장체제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 → 건강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산재보험 가입률

중분류	(4.3.) 노동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사회권규약 제6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1.) 일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 -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2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 -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p>- 인간 삶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 기본적 생존과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 신체활동을 통해 인격발현·형성하는 인간행위의 대표적 형태이다</p>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장기실업자의 비율(12개월 이상) → 잠재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수 →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 경력단절 여성의 수: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 평균근속연수의 성별 차이: 산업 및 직종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연수 → 외국인 취업통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수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4조). - 당사국은 특히 공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공정한 임금, 특히 여성에게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한 보수,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상위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7조). -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유해하고 위험한 노동에 고용을 처벌한다. 연령 미달자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한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제(e)항 (i)호). - 여성의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동일한 권리(불가침의 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 안정, 역무에 관한 조건,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한 보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 유급휴가와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에 대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보호 및 생식기능을 포함한 노동조건에의 안전 등)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5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 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2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3항). -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3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모든 인간의 성, 연령,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형태별 주 40시간 실시 비율 → 최저임금 미만을 → 산업별 성별종사자 비율 → 직종별 성별종사자 비율 → 고용형태별 성별종사자 비율 → 여성감정노동자 수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 → 학력별 임금격차 → 성별 임금격차 → 육아휴직 사용률(성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정도 →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성별, 연령) →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직무) → 산업재해율 → 비정규직 고용 동향 →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여부 및 체불기간, 금액 → 청소년 근로계약 위반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3.) 노동조합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 -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a)). - 인종·피부색·가문·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을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i)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 연령, 인종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권이 제한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 노사협의회 설치 수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 파업권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중분류	(4.4.) 건강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2항 (a) 내지 (d)). - 당사국은 아동의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전단). -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원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1.) 건강서비스 접근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요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요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공공보건요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요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의사 수 및 부족율 → 10만 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 수 →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 의료 미충족률 → 의료보장 적용인구 →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농어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2.) 아동 및 모성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여성의 질병, 병약, 건강,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 (f)). -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며,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항 (a) 내지 (f)).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6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아동과 모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정도 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산전수진을 → 저체중아 발생률 → 조산율 → 모성사망률 →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 → 청소년 흡연 및 음주율 → 청소년 약물경험 비율 → 모자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실태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3.) 육체적 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법 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 또는 보장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육체적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 건강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조사망률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4.) 정신적 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5조). - 당사국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신보건법 제4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은 건강권의 중요한 차원으로 이를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신 질환 평생유병률 → 정신보건센터 도시지역 편중 → 청소년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 우울감 경험률 → 자살생각 경험률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5.) 건강서비스에서의 차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건강관리지원, 재활 지원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 제28조).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인종차별철폐 협약 제5조 제e항 (iv)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 건강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득에 따라 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중분류	(4.5.) 교육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전단).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전단).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전단).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본문). -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전단). -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후단). -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a)). -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자유권 규약 제13조 제2항(b)). -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a)). -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d)). -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31조 제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8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 -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4조 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지원이 미약한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및 지원률 → 설립주체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직장) 어린이집 현황 → 각급 학교 장애인진학률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2.) 교육선택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3항). -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 규약 제18조 제4항). -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3항). - 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은 공공당국 이외의 기관을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선택할 자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 및 도덕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 교육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제5조 제1항(b)).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1조 제2항).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인프라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참여비율 → 학업중단자 비율 →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 미혼모 학업중단율 → 대안학교 수 → 홈스쿨링 학생 수
--	---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3.) 교육의 질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후단). -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후단). -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e)). -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 - 아동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자연에 대한 존중의 진전 등에 두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각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41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특정 집단에게 불평등하고 낮은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 →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 기간제 교사비율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4.) 교육에서의 차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상의 차별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입학의 차별, 학비, 장학금, 학생지원, 외국유학을 위한 편의제공의 차별, 공공기관에 의한 국민들 간의 차별, 학생들이 특정집단 간의 제한이나 특혜를 없애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상의 차별을 억제하고 교육상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는 향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모든 권고에 최대한 유의할 것을 약속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6조). -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후단). -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c)). -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철폐협약 제14조 제2항(d)). - 개인 및 단체가, 국가의 설치기준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함에 있어 특정 집단에게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하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 과도한 통학시간: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 수 및 비율 →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 남성 대비 여성 대학 취학률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1항). - 당사국은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3조).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의 권리가 인정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1항).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a)호).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v)호). -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남녀 동일한 권리를 확보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c)호). - 당사국은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람률 → 여가활동 만족도 → GDP대비 문화예산 →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공공도서관 현황 → 학교 문화예술 수혜학교 비율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2.) 과학발전을 향유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모든 사람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b)호).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127조 제1항). -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4항) -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 → 웹·바이러스 피해 현황(2013년도 이후) → 해킹사고 신고 건수 → 1인 1일 스팸 수신량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 당사국은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예술인복지법 제3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27조). - 남녀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a)항). - 계약국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 소수민족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5조 제1항 (c)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문화기본법 제4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권리 증진의 기초가 되며,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국가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 전통예술공연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다양성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한국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 국가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1). - 국가는 해당 영토 및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2).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A-11).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헌법 제123조 제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헌법 제123조 제5항).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1.) 국가의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 당사국은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e)항). - 당사국들은 특히 국제적 독점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외국의 착취를 제거시킬 것을 약속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21조 제5항).
국내법적 근거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 -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2항).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 관련 침해로부터 “모든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준수를 강화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인권 프레임워크에 세부 통계는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횟수 → 기간 내 지적재산권 분쟁 횟수 →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 및 수용현황 →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의 휴일·연차보장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2.) 기업의 존중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6000 핵심과제: 공정운영 관행(이슈: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공정 경쟁,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 - ISO 26000 핵심주제: 소비자 이슈(이슈: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는 정보 및 공정계약 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소비자 서비스, 불만 및 분쟁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및 인식) - ISO 26000 핵심주제: 조직 거버넌스(이슈: 조직 거버넌스 및 사회적 책임).
국내법적 근거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A-11).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부의 인권보호와 차별 방지, 투명성 보장, 하청기업과 근로자인권 보장 등은 기업의 인권적 책무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함. - 특히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여부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 ISO26000, UNGC 가입 여부 → 지역민 채용 규모 비율 →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 기간 내 지역사회 총 투자액 규모 비율 → 뇌물·부패 방지프로그램 유무 → 업무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교육 이수한 보안담당자 숫자 →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 지속 가능 지수의 가입여부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3.) 규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A-1). - 국가는 해당 영토 및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A-2).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동에 의해 인권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규제책의 필요성은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의 핵심적인 원칙임 - 기업의 인권책임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타 기업, NGO 등 조직 외 주요 행위자들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인권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유무 → 기간 내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횟수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유무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불순응 횟수 → 기업 내 인권담당부서 유무 → 해외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 국가인권위 기간 내 차별권고 횟수 → 기업 내 고용 등 차별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 기업 내 고용 등 차별행위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 기업 내 성희롱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4.) 환경보존 책임
국제법적 근거	- ISO 26000 핵심주제: 환경(이슈: 오염예방,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국토기본법 제5조 제3항). -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과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 특히 환경에 대한 예방적 접근, 환경보존 책임 강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등의 원칙들이 환경영역에서의 기업의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 오염측정 기록보고 유무 → 폐기물 관리계층 유무 → 탄소파트너십 성과 보고 유무 → 지속가능개발 정책 홍보 유무
----	--

중분류	(4.8.) 환경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24조).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서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할 조치를 포함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제2항 (b)호). -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미주 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제2항).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환경의 보호, 보존 및 개선을 장려한다(사회권 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5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방사능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인권으로 점차 대두됨 -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인간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소음 진동 민원건수 →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	---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지향하는데 동의한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e)).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건강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표 조사가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 환경보호지출액 → 자연보호지역비율: 국토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 유해인자 측정 및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집계 → 멸종위기종 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 산업재해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한 취약계층의 차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필요한 지표임
지표	→ 행정구역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과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부록 8】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근거 및 출처 열에 있는 최종견해 및 NGO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1. 최종 견해의 각 해당연도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고, 각 년도 별 최종견해의 해당 지표와 관련된 항목의 번호는 괄호 앞에 기입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 24,25(11)의 경우, 201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의 24번, 25번 항목임을 뜻한다.
2. NGO보고서의 경우, 각 보고서마다 통일된 양식이 아닌 각자가 채택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연도의 보고서 양식에 맞게 근거 및 출처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고문방지협약 NGO보고서 4-49~51(12)'의 경우 12년 고문방지협약 NGO보고서 4조에 49항부터 51항까지를 뜻한다.

가. 이행기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1. 국제규범	1.1.1. 국제인권법 준수	국제인권조약비준현황	유엔에서 규범으로 채택한 인권조약의 서명, 비준, 유보 여부 (9개 핵심 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그리고 OHCHR에서 선정한 국제협약)	외교부	조약정보 외교부 조약정보	1년	구조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19(12);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22,10(11), 11(07); 아동권리최종견해 60~61(03), 49~50(11); 고문방지NGO보고서 14(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1-12~14(12); 사회권NGO보고서 22(09); 2013 인권통계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지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6(92)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정례·특별보고 참여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에의 참여 현황,	유엔인권최고대표부	OHCHR 온라인 공개문서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49~50(11)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정례·특별보고 참여도 평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정례보고 참여에 대한 해당국제기구의 평가	유엔인권최고대표부	OHCHR 보편적 인권지수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49~50(11)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내 한국정부 및 전문가의 활동	한국정부와 인권전문가들의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의 정례·특별보고에 대한 참여 현황	유엔인권최고대표부	OHCHR 내부자료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49~50(11)
		조약기구 개인 청원현황	유엔인권기구 및 조약기구에 제출된 개인청원서 현황 및 처분 결과	법무부 인권국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국제기구 인권보호노력 평가	UN, EU,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인권 보호노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 수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6(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2. 국내법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국제조약의 법제화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가 권고한 법제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	법무부 인권국	조약기구의 정기검토 국가 최종보고서; OHCHR 보편적 인권지수	3~4년	구조	고문방지 최종견해 59(97),6(06); 고문방지NGO보고서 14~15(96),5(06)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제인권규약 원용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국제인권규약의 원용 여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2(09)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인지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6(92)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평가등급	국제조정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평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Accredition Report	비정기	구조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고문방지NGO보고서 16~18,46(06); 자유권NGO보고서G-1(15), 8,9,10,13,14(0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접수, 조사, 의결, 처리에 대한 질적 양적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3,14(06);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및 인력 현황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자유권NGO보고서 G-1(15),9,10(06);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신뢰도, 효과성 평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고문방지 NGO보고서 16~18(06),46(06); 자유권NGO보고서 G-1(15),8,9,10,13,14(06)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법무부 인권국 재정 및 인력 현황	법집행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법무부 인권국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 NGO보고서 89(96)
		공공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평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국민 평가 현황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비정기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1.3. 인권교육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법집행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교정인력, 검찰 등 법무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고문방지NGO보고서 67,84,85,87(96)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 인권교육	일반 국민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인권통계 (2014)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생 및 교사(교수) 대상 인권교육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일반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인권국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22,23(11);
		군내 인권교육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 현황	국방부	내부자료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고문방지 NGO보고서 35(06)
		국민의 인권교육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서베이 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기업 내 인권교육	사업장에서의 종업원 및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시민단체(NGO)의 인권교육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22,23(1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4. 시민사회	1.4.1. 인권NGO 활동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인권관련 NGO 설립숫자, 규모, 활동 관련 통계	(사) 시민운동 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3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1.4.2. 인권NGO거버넌스 구축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 예산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인권과 관련된 정부유관부처가 인권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한 예산 집행 규모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구축요망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정부법령 및 정책 수립 참여	인권과 관련된 정부유관부처의 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시민단체의 공청회 등 절차 참여 규모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구축요망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23(03); 아동권리NGO보고서 3-1(10)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참여 경험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유무 및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서베이 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지원 요청 경험	국민이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서베이 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나. 평등권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1. 차별현황	2.1.1. 인권상황평가	취약계층 인권상황 평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및 인권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2.1.2. 차별 원인	침해 및 차별 발생원인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 NGO 보고서8,2-17~23,4-49~51(12),75(07)
	2.1.3. 차별의 심각성	차별의 심각성 정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차별 요인별 차별문제의 심각성정도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2.1.4. 차별 경험	차별경험 유무	각 요인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2.2. 차별요인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북한 출신 공개로 인한 차별경험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신 공개로 학교에서 힘들어 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탈북청소년 차별경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시설에서의 차별 없는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경험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있어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선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경험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1(07),13(99),14(96), 15(96),203,208,22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7, 2-24~27,2-41~45,5-115~116(12)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6(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3(11)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2.2.2. 성별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 경찰/소방/교정직	남성 경찰/소방/교정직 대비 여성 경찰/소방/교정직 유/불리 정도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성차별 피해 경험 -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차별 피해 경험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동의여부	여성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별분리채용 찬반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여군의 복무 환경적 특성으로서 조직문화와 관행을 여군 친화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군대 내 성차별 심각성 정도	여군이 남군과 비교하여 부문별 유·불리를 많이 느끼는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군대 내 성차별 피해 유형 및 빈도	여군 차별 피해 유형별 발생의 빈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채용과정 중 성차별 인식	성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인	채용과정 중 성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기업 내 성차별 관행 인식	중소기업 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인사총무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들은 평가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상위 100대 기업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공공연구기관 성별 연구원수	공공연구기관의 성별 연구원수 및 비율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평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5(07)
	2.2.3. 경제적 지위	채용과정 내 경제적 지위 차별 경험 정도	채용과정 중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327~330(00)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327~330(00)
	2.2.4. 나이	연령차별 경험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연령차별 인식 정도-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차별 대우 인식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각 채용과정 단계의 연령차별 정도	나이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 이유	나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2.2.5. 용모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	외모 관리 요구받은 경험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8-3(10)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과 원인	채용단계별 차별인식 중 용모 및 신체조건 차별원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2.6. 종교	학교 내 종교차별 인식	학생들의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동아리 활동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학교 복지 및 생활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2.2.7. 학력·학벌	학력별 채용과정 중 차별 인식	학력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15(01);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채용과정에서의 학력차별 요인	학력별, 경력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15(01);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2.2.8. 성적 지향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유형	성적소수자차별 또는 괴롭힘의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40(09)	
	성소수자차별 인지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여서 또는 성적 소수자로 보여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40(09)	
	성소수자차별 경험에 대한 결과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40(09)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514(92); 자유권NGO보고서 2-2,23-3,26-1,20-2(15),81(06)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2.9. 장애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	장애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23(14); 사회권NGO보고서 6(14)
		채용과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 정도	장애인의 채용과정 중 장애차별 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23(14); 사회권NGO보고서 6(14)
		장애인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장애인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1,52(11),31,32,33,50, 51(03); 아동권리NGO보고서 3-2,6-2(10)
	2.2.10. 병력	질병에 대한 차별 심각성 정도	응답자 특성별 질병력으로 인한 차별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다. 시민·정치적 권리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 신체권	3.1.1. 생명권	자살률 현황	인구 10만 명 당 자살건수 (성별, 청소년, 노인, 장애 여부 등 인구집단에 따라 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30,31,34,55,56(11); 자유권NGO보고서 39(09),3-4(10),6-1(10); 국가인권지수(2014)
		살인 사건 수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	검찰청	범죄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영아 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 (1,000 분비 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모성 사망률	가임기 여성(15-49세) 10만 명 당 모성 사망자 수 (100,000 분비 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국가인권지수(2014)
		임신중절 현황	시술의료기관 조사를 통한 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58(11),59(11); 2013인권통계
		군인과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일반인(20~29세 남자기준)과 비교한 10만 명당 군인 자살자 비율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군 사망사고 현황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현황	장애인에 대한 고지된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제불임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구축 요망	-	결과	장애인권리 최종견해 1123(14); 장애인권리NGO보고서 6(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2. 사형의 제한	사형선고율 현황	제1심 형사공판선고 중 사형선고의 비율, 이중 특정 죄목(가령, 국가보안법)에 따른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79(92); 자유권NGO보고서 184-187(92);
		간첩죄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비율	간첩죄 기소자 중 제1심 형사공판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	법원행정처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02(92);
		사형선고자 사면 비율	사형선고 복역자 중 사형을 사면 받는 비율	법원행정처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4-55(99);
		사형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	사형제의 존속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5년	결과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2011)
	3.1.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고문 및 가혹행위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 중 폭행, 가혹행위, 폭언, 욕설에 관한 진정서 숫자 및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0); 자유권NGO보고서 61~62(06); 2013인권통계에서 변형
		고문 및 가혹행위 인권위 상담현황	인권위에 폭언, 가혹행위, 폭언, 욕설을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 및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0); 자유권NGO보고서 61~62(06); 2013인권통계에서 변형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현황	형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 및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기소된 숫자	대검찰청	국감자료(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제출)	1년	과정	고문방지최종견해 56,58(97),7(06); 고문방지NGO보고서 20(96);
		검찰 조사기간 중 피의자 및 참고인 자살률	피의자 및 참고인 10만 명당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비율	대검찰청	국감자료(이병석,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제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516(92),13(00); 자유권NGO보고서 7-3(15),61~62(06), 61(99),108,191~200,218~221(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4. 구금환경		영상녹화 실시 현황	수사 및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율	대검찰청	국감자료(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제출)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인식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2~3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34(06); 자유권NGO보고서 53(99),16(06);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상담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상담을 의뢰한 숫자 (폭행/가혹행위 제외),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자유권NGO보고서 7-2,9-9,10-4(15), 246~249(92); 2013인권통계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진정서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자유권NGO보고서 9-9,10-4(15),246~249(92); 2013인권통계
		수감시설 내 사망자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사망 현황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최종견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29(06);
		수감시설 내 폭력·폭행 현황	교정시설별 폭력·폭행치 숫자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최종견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60~63(96),65~67(96),31(06);
		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교정시설 의사 정·현원 숫자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73~75(96);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NGO보고서 73~75(96);
		교정시설수용 현황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수용정원, 수용인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0); 2013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경찰유치장 현황	경찰 유치시설(유치장, 유치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수용능력과 수용인원을 정확히 제시해야함
		치료감호소 현황	치료 감호소 유치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수용기간, 면회 기간 등을 포괄하는 통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수용현황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0); 자유권NGO보고서 227~239(92);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교정시설 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진행 시간, 참여율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1,516(92); 자유권NGO보고서 70(99);
		대응감방구금 현황	대응감방 현황, 대응감방별 구금자 숫자, 구금기간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최종견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56~59(96),32(06),33(06)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유로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 현황과 체류 기간에 관한 통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체류기간에 대한 통계가 보강 요망
		군교도소 연말 수용자 현황	전년말 남은 수형자와 당해연도 입소자를 합한 수용자에서 출소자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군교도소 수용자 현황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3.1.5. 인신매매 금지	인신/성매매 현황	인신/성매매 현황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인신/성매매 신고현황	인신매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 접수된 신고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자료구축 요망	-	결과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39(11)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인신매매 및 성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아동권리NGO보고서 5~97~104(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6. 안전할 권리	자연재해피해자 현황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실종·이재민 수, 피해규모 등 피해 현황 통계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9(14); 사회권NGO보고서 33(14);	
	범죄 피해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등 범죄피해자의 숫자(여성,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4~8(15), 104(99), 284(92);	
	사회안전 인식도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여성 인구집단별 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4~8(15), 104(99), 284(92);	
	범죄두려움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3-4~8(15), 104(99), 284(92);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흉악사범이란 살인, 강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강도, 보복범죄, 특수강도등을 포함한 수치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성폭력 발생(검거)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여성, 장애인 인구집단, 가해자 집단 특성별 통계)	대검찰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범죄분석 장애인실태조사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성희롱 가해 및 피해실태	성희롱 가해 및 피해실태 관련 통계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2015년 최초 실시로 미공개)	3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6(09);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여성,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폭력실태조사; 2011장애인실태조사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아동 안전사고 현황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2(15), 115~116(9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현황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보건복지부	(각연도)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아동권리최종견해 40(03),41(03); 아동권리NGO보고서 138(06)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아동학대 보호 건수 통계. 이때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40(03),41(03); 아동권리NGO보고서 138(06)
		학교폭력 경험	폭행/구타/따돌림/돈, 물건 갈취/협박/성희롱 및 추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3(15),112(99)
		체벌 및 욕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6~38(06); 자유권NGO보고서 151(06)
		학대 경험률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포함 (노인, 아동,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노인학대현황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사회권최종견해 21(01); 사회권NGO보고서 282(00); 장애인권리NGO보고서 17(14),45(14)
	3.1.7. 실종	약취·유인 현황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의 숫자와 이와 관련된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8-2(15); 국가인권지수(2014)
		약취·유인 검거, 입건, 기소율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 입건을, 기소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97~104(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실종아동 등 (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및 가출인 발생현황	실종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가출인 발생 및 미발견 건수	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처리; 경찰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구속사건 비율	기소자 숫자 대비 구속 사건의 비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39~42(96),71(99),72(06); 국가인권지수(2014) 2013인권통계
		경찰 구속 현황	각급 경찰의 적발숫자, 구속 숫자, 불구속기소, 숫자 통계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72(06), 71(99);
		수사기관·수소법원 구속기간 현황	검찰·경찰의 구속기간,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39~42(96);
		군영창 구금 현황	군 영창 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과정	국가인권지수(2014): 영창구금자 숫자 뿐 아니라 시설 일반에 대한 통계 필요;
		48시간 구금 후 훈방 현황	48시간 동안 구금한 후 기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	대검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31,132(06), 266(99);
		긴급체포 후 영장현황	긴급체포자 대비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유대운의원 청구자료)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9-4(15),20,67,69,70(06),70(92);
		체포·구속적부 심사 처리 현황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적부의 심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구조	최종견해 481(92); 2013인권통계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상담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0(92); 2013인권통계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제출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0(92); 2013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2. 기본적 자유	3.2.1. 이동의 자유	해외이주 현황	해외이주신고자와 현지이주신고자를 합한 해외이주자 숫자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9~261(92); 경제지위별 이주 현황 추가 필요
		북한방문자 현황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현황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3(92),516(92);
		체류외국인 현황	장기, 단기, 불법 체류를 합한 체류외국인 숫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2(06); 자유권NGO보고서 2-4(15); 출신국가별 통계추가 필요
		국내인구 이동 현황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구대비 이동률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1년	결과	최종견해 11(95); 자유권NGO보고서 300(00);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17(14); 아동권리NGO보고서 27(14); 국가인권지수(2014)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14); 사회권NGO보고서 27(14); 국가인권지수(2014)
		난민신청자 현황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의외국인통계연보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0(01); 사회권NGO보고서 28(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포함	고용노동부, 교육부	2013 장애인통계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28(14); 2013인권통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시각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연결률	보건복지부	장애인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 기소, (불)구속, 불기소 숫자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59(97),6(06); 자유권NGO보고서 14~15(96),5(06);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입영·집총 거부자 현황	입영·집총 거부자 숫자와 이에 대한 징역부과 등 처리 숫자	병무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4(92); 자유권NGO보고서 18(15); 98, 110(06)
		종립학원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숫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38, 39(11); 아동권리NGO보고서 4-3(10); 2013인권통계
		종립학교 의무예배시간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에서 의무 예배에 할당된 평균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38, 39(11); 아동권리NGO보고서 4-3(10);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방송심의 의결 현황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법정조치, 행정지도 등 제재조치를 의결한 숫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연감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 208(99),140~152(92); 2013인권통계
		영상물 등급분류현황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 208(99),140~152(92);
		영상물 등급분류 위법 판결 현황	제한상영가 등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소송과 이에 대한 위법판결 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 현황	영화제에 대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 현황 및 법적분쟁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2.4. 집회의 자유	언론사 파업 현황	언론사 파업 숫자, 참여자 규모, 지속일수, 징계, 해고 통계	언론사 파업 숫자, 참여자 규모, 지속일수, 징계, 해고 통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 대국민인권실태조사	5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3.2.4. 집회의 자유	집회시위 발생 현황	학원, 사회·문화, 노정, 경제 관련 집회시위 숫자, 미신고집회숫자, 참여인원 등 통계	집회시위 발생 현황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150(00);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 2013인권통계
		집회금지 통고 현황	집회사회 금지통고 건수, 신고건수 대비 금지 통고 건수 비율, 시위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등 통계	집회금지 통고 현황	경찰청	경찰백서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5(92); 자유권NGO보고서 21-1(15),262(99),168~170(92); 국가인권지수(2014)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추가필요)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	집회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의 숫자	집회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의 숫자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79,516(92);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267,276(99),171~174(92);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숫자, 유형 및 대상 별 (교사/공무원 포함) 통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숫자, 유형 및 대상 별 (교사/공무원 포함) 통계	경찰청	경찰백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31,132(06),266(99);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유형별, 대상별 통계 추가필요)
		시위 중 부상자 비율	집회시위 중 부상을 입은 참가자의 숫자 및 시위 참여자 대비 비율	집회시위 중 부상을 입은 참가자의 숫자 및 시위 참여자 대비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79,516(92);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267,276(99),171~174(92)
		야간시위 처벌현황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및 기소된 숫자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및 기소된 숫자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50(00); 자유권NGO보고서 21-2,21-3(15),5,128(06);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2.5. 결사의 자유	정당조직 및 가입현황	정당조직 및 가입현황	법정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 숫자, 가입된 당원수 통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결사체/NGO 현황	시민사회단체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	시민의신문	한국시민사회연감	2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285(92);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공무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 151(00), 18(09), 19(06); 자유권NGO보고서 19-6,22-1~3(15), 40(06)	
		교원노동조합 조직현황	교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 151(00), 18(09), 19(06), 자유권NGO보고서 19-6,22-1~3(15), 40(06)	
		언론노동조합 조직현황	언론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3.2.6. 사생활 보호권	개인정보침해 비율	개인정보침해 비율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신고건수 통계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88,90(06), 82,87(99);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및 유출현황	공공기관별 주민번호 누출 및 유출건수	안전행정부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90(06), 87(99); 2013인권통계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현황	국가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건수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40(00); 자유권NGO보고서 17-8(15), 221(99); 국가인권지수(2014)
			CCTV 설치현황	범죄예방,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의 숫자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93(06);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지역별 설치 현황 추가요망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등 권리침해 위반유형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20(07); 자유권NGO보고서 4(12); 2013인권통계;
		사생활 침해 경험	지난 3년 동안 본인, 배우자, 가족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 대국민인권실태조사	5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7-5,17-9(15),85,81,84(99),163,263~271(92);
3.3. 행정·사법적정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피고인 숫자 대비 국선변호사 선정 사건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6),482(92); 자유권NGO보고서 9-3,14-2(15),63~65(06), 42,45,51,52(99),71,72,80,82,87~92(92);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헌법소원심판 사건 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선임건수 및 비율,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 인용율 등 통계	헌법재판소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0(99),95(92);
		국가소송접수 및 처리건수	국가소송 접수, 처리, 승소·패소 건수 및 비율	전국 검찰청	국가소송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69~71(96);
		즉결심판청구 현황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청구한 심판절차의 숫자, 유형별(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숫자 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2(92); 자유권NGO보고서 29,30(99),45,51,59,60,61(92)
		재판 전 구금기간 현황	법원의 승인 조치 없이 구금되는 기간을 포함한 1심 재판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기간 통계	대검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0(92),141(00),16(06); 자유권NGO보고서 15,71(06),258(99), 202~204(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3.2. 사법적 구제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영장 건수 대비 기각된 영장의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47(00); 자유권NGO보고서 27(99),24,28,29,43(92); 국가인권지수(2014)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숫자	법무부 인권구조과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0-8(15);
		사면실시 현황	사면 신청자 숫자 및 사면 허용자 숫자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3.3.3. 피해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무죄재판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 숫자, 이에 대한 실제 형사보상건수 및 인용율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9-7(15); 국가인권지수(2014)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가한 각종 손해에 대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숫자, 인용숫자 등 통계	법무부	국가송무과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고문피해자 사법구제 현황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에 따른 재심현황, 손해배상 소송건수, 결과, 배상금액 현황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비정기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60(97); 자유권NGO보고서 113~121(96),60(06);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고문피해자의 국가기관재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60(97); 자유권NGO보고서 113~121(96),60(06);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운동심의위)’ 인용건수, 명예회복 건수, 보상금지급 액수 등 통계	안전행정부	자료구축 요망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21(06),213(99),116,117(9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범죄로 인한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가 구조한 건수, 구조금액 통계	법무부	검찰통계시스템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97~104(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4. 참정권	3.4.1. 투표할 권리	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노인,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3)
		수형자의 투표참여 현황	투표에 참여한 교정시설별 수형자 숫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3(15);
		공직자선거법위반 현황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숫자의 유형별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2(15),152(06);
		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 현황	주요 국가별 선거 가능한 유권자 대비 등록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2(15), 152(06);
	3.4.2. 선출될 권리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4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48(06),94,108(99);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4(11),23(07);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23(11)
		장애인 후보자 당선 현황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 및 당선인 통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장애인권리최종견해 55(14)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참여재판 현황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들 숫자, 판결 결과 통계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 48(06), 94,108(99);
		행정민원 현황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 서비스 현황	행정자치부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 48(06), 94,108(99);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연구직과 지도직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가,나급)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행정자치부	안전행정 통계연보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4(11),23(07);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23(1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정부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중 법률,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현황 제출 자료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공무원 개방형 임용 추이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3.5. 정보인권	3.5.1. 정보접근권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 (기관별, 종류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64(92);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정보격차수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보유 현황	한국인터넷 진흥원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5(95); 장애인협약NGO보고서 327~330(00);
		가구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이용 현황	한국인터넷 진흥원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5(95); 장애인협약NGO보고서 327~330(00);
		장애인 정보화격차	일반국민 정보화수준 대비 장애인계층 정보화 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 숫자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41(14); 장애인협약NGO보고서 56(14)
		장애인용 언어 표준화 현황	시각 장애인용 원문DB구축, 특수 언어 표준화 작업 건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7(14); 장애인협약NGO보고서 29(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통신심의 의결 현황	정보통신 심의 건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백서	1년	결과	인권통계(2014)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소추사건현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숫자, 기각된 숫자, 및 형사처벌된 숫자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2(15);
		인터넷 게시판 시정요구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와 각하 건수 비율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아침식사 결식률	만 1세 이상의 인구 중 인구학적 특성별(연령, 소득 등)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289(00)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로 인한 결식 비율(%)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식한 학생의 비율에 대한 실태파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289(00)
		아동무상급식지원 현황	매년 말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1)내부행정자료 2)e-나라지표 급식은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무상급식 대상 아동 현황 통계로 수정	1년	과정	아동권리 최종견해 20(11); 아동권리NGO보고서 1-5(10)
		영양섭취부족	만1세 이상의 인구 중 인구학적 특성별(연령, 소득 등)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4.1.2.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역,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 (여성, 장애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5(01); 국가인권지수(2014); 여성, 장애인 세부 통계 필요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비율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처(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 건물공사장의 임시막사, 움막, 토굴 등)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인구주택 총조사 2)사회보장통계	5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5(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월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 중에서 주거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국가인권지수(201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전체 가구 중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1)국토교통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임대주택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전체 가구에서 주거급여 지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내부자료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시도별 주택 자가보유율	각 시도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사회권NGO보고서 300(00); 국가인권지수(2014)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할 때 14일 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	법무부	1)출입국관리법 2)재외동포법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59~261(92)
		주택의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 자유 침해	주택의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위기에 놓은 가구의 수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62(92)
		1인당 주거면적 (성별)	남성대비 여성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 가구원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사회권NGO보고서 300(00)
	4.1.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상수도 보급율	총인구 중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시 및 농촌지역 구분)	1)환경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상수도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하수도 보급율	총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1)환경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하수도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BOD 발생 부하량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BOD)의 정도	환경부	수질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식수 안전	식수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지역의 수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물부족 통계	식수 및 산업용수가 부족한 지역별 통계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단수경험 가구 수	가구특성별 단수경험 가구 수	자료구축 요망	(단, 2005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 단수경험 가구 수 조사)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9(09)
4.2. 사회 보장권	4.2.1. 소득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총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의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3(01); 사회권NGO보고서 226,227(00)
		기초노령연금수급율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4.2.2. 빈곤/ 양극화	실업급여 수급자수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수	1)한국고용정보원	1)고용보험통계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98,99(09)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51(14)
		장애수당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51(14); e-나라지표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가구주소득, 배우자 또는 기타가구원 소득, 주거비/방송/교통/통신, 적금/보험/신용카드, 육아 및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매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4(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2.3. 사회복지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년	결과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6~59(07)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액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68(14)
		상대적 빈곤율	총인구 중 소득빈곤선 이하의 인구수의 비율(아동, 여성가구주, 노인, 장애인 등 인구집단에 따라 제시)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소득5분위 배율	하위20%균등화소득 대비 상위20%균등화소득의 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사회권NGO보고서 103(00),122(09)
		지니계수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사회권NGO보고서 103(00),122(09)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1년	과정	장애인권리최종견해 53(14); e-나라지표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지방비 합계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예산안(재정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3(01); 사회권NGO보고서 226,227(00)
		국가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국가총지출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비중	1)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예산안(재정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197(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생활인원수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결핵/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현황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19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	1)한국장애인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2)사회보장통계	1)5년 2)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이용자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가사간병 방문사업 이용자수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장애인인권, 장애인인식 개선, 이동권 보장 등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현황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시설의 종류)에 의해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된 시설을 의미	통계청	2013 한국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2013 인권통계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농업인안전보험 1인당 보험료 등을 포함	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험백서 등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e-나라지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농어촌 인구 천명당 보육시설 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e-나라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2.4. 사회보험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수 대비 각 급여종류별 가입률 및 수급자의 비율 (성별)	1)국민연금관리공단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국민연금 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건강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건강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고용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산재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이주노동자)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4.3. 노동권	4.3.1. 일할 권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 및 취업자의 비율(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장애여부, 가구주 여부)	1)통계청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경제활동인구조사 2)사회보장통계 3)한국의 사회지표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2013 인권통계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12개월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의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구직단념자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의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01(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기능사양성훈련, 우선직종훈련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114(00)
		경력단절 여성의 수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6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4(11); e-나라지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4(01)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년	과정	장애인권리NGO보고서 81(14)
		평균근속년수의 성별 차이	산업 및 직종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연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4(11); 고용노동통계
		외국인 취업통계	외국인근로자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산업/직종별 취업자수, 월평균 임금 등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1(07), 13(99), 14(96), 15(96), 203(93), 208(93), 22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7(12), 2-24~27(12), 2-41~45(12), 5-115~116,(12)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백서	1년	결과	인권상황실태조사(2013)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수	고용노동부	자료구축 요망	-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20(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근로형태별 주 40시간제 실시 비율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	OECD	OECD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69(00); 국가인권지수(2014)	
	최저임금 미만율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9(01); 국가인권지수(2014)	
	산업별 성별종사자 비율	산업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0(11); 성인지통계 DB	
	직종별 성별종사자 비율	직종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0(11); 성인지통계 DB	
	고용형태별 성별종사자 비율	고용형태(상용직/임시직/일용직)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0(11); 성인지통계 DB	
	여성감정노동자수	산업 및 직종별 여성감정노동자의 수 *현재 정확한 규모 추정 불가능	-	-	-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0(11)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e-나라지표	
	출산전 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산업별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성인지통계 DB	
학력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OECD	Education at a Glance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e-나라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임금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1(95),15(01),12(09); 사회권NGO보고서 94,104(09)
		육아휴직 사용률(성별)	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률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 DB 2)e-나라지표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임금격차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	고용노동부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e-나라지표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 190,206(00)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격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구조	장애인권리최종견해 49(14); 국가인권지수(2014)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월소득실태파악 및 상용임금근로자와의 월소득 비교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최종견해 49(14)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정도	근로감독 사업장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도급, 연소근로자관련 법 준수와 연령차별 및 최저임금관련 법 미준수 사업장 비율의 평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69(00); 국가인권지수(2014)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성별, 연령)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반기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4(11); e-나라지표; 2013 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직무)	직무별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의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72(14)
		산업재해율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17(01),17(09); 사회권NGO보고서 188~190(92),125(00)
		비정규직 고용 동향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 모두 포함	통계청	1)경제활동인구조사 2)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e-나라지표	반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 190,206(00)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 여부와 체불 기간 및 금액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법무부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1(12), 18(07),10(03),12(99),17(96), 20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104~114(12),26(07),30(07), 45~48(07)
		청소년 근로계약 위반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 계약과 다른 초과 근무 및 일을 하였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8-2(10)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 DB 2)e-나라지표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3.3. 노동 조합권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중 노동조합원의 비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285(92); 국가인권지수(2014)
		노사협의회 설치수	산업별/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28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 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조합활동, 고용조건, 단체교섭거부, 경비지원, 단체행동참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신청건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9(95); 사회권NGO보고서 253~257(92),94(00)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 중 노동조합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12(92)
		파업권 규제	근로자의 파업권 규제 여부	해당자료 부재	해당자료 부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8(95); 사회권NGO보고서 161(00),162(00)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제도 여부	해당자료 부재	해당자료 부재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4.4. 건강권	4.4.1. 건강 서비스 접근	시도별 의사 수 및 부족율	시도별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전문의 및 일반의의 수	1)국민건강보험공단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10만 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 수	시도별 등록 병상 수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보건복지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1)국민건강보험공단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의료 미충족률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의료보장 적용인구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인구	1)국민건강보험공단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 2)의료급여통계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12(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4.2. 아동 및 모성 건강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임.	보건복지부	1)국민건강영양조사 2)e-나라지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농어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보건복지부	1)보건복지통계연보 2)e-나라지표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미혼모 산전수진율	임신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 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44세 기혼 여성 임신부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신부의 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3년 2)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저체중아발생률	해당 연도의 전체 출생아 대비 출생체중 2.5kg미만 신생아의 비중	1)통계청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인구동향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조산율	전체 출생아 중 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의 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3년 2)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모성사망률	모성사망 측정을 위해 개발된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의 수로 표시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국가인권지수(2014)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DPT 예방접종률	DPT예방접종률은 만 3세 대상 아동 중 3차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6-1(10)	
	청소년 흡연 및 음주율	청소년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7(11),59(11),48(03),49(03)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4.3. 육체적 건강	청소년 약물경험 비율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경험한 비율	여성가족부	1)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7(11),59(11),48(03),49(03)	
	모자보호시설 입퇴소현황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보호기간3년,2년 연장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여성가족부	1)시도별 자료 2)e-나라지표	1년	과정	아동권리 최종견해 46(03), 47(03)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 실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여성가족부	1)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5-1(10)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1)통계청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생명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건강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WHO	World Health Statistics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조사망률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1년 간 발생한 모든 사망자 수를 동일기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	1)통계청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사망원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 중에서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국민건강영양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조사대상자 중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중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3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4.4. 정신적 건강	주요정신 질환 평생유병률	평생에 한번 이상 질환에 이환되는 비율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1(09); 사회권NGO보고서 6-1(10)
		정신보건센터 도시지역 편중	지역별 정신보건시설 수 및 각 지역별 비율	보건복지부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6-1(10)
		청소년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포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14(99); 아동권리최종견해 62(11),63(11),52(03),53(03)
		우울감 경험률	시군구별 우울감 경험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1(09); 사회권NGO보고서 6-1(10)
		자살생각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청소년 포함)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1(09)
	4.4.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전체 의료비 중에서 정부재원, 사회보장기금의 구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	구조	국가인권지수(201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질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적령 인구 중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중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및 지원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비율	1)보건복지부 2)교육통계연구센터 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어린이집 이용자통계 2)유초등통계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여성차별 NGO 보고서 5(11)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설립주체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직장) 어린이집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과정	여성차별 NGO 보고서 5(11); 성인지통계 DB
		각급 학교 장애인 진학률	초중고 및 대학의 장애인 진학률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년	결과	인권상황실태조사(2013)
	4.5.2. 교육 선택권	평생교육 참여비율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학업 중단자 비율	전체 초·중고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학교급 및 성별 구분)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북한이탈학생의 학업중단자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결혼이주자 자녀의 취학률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 최종견해 28(11), 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8-1(10)
		미혼모학업중단을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의 비율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대안학교 수	대안학교의 수	최근자료 없음	최근자료 없음	1년	구조	아동권리 최종견해 40(03), 41(03)
		홈스쿨링 학생 수	홈스쿨링 학생의 수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구조	아동권리 최종견해 40(03), 41(03)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5.3. 교육의 질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전체 학급 수 가운데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 수의 비중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의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기간제교사비율	초중고교 전체교원 중 기간제교사의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	교육기관에 정부가 직접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장학금, 학비지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	1)OECD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Education at a Glance 2)사회보장통계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65(00)	
	학생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학교교육)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사립대학에서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 대비 등록금의 비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재정통계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64(00)	
	4.5.4. 교육차별 및 불평등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전체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1)교육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총입학자 중 기회균형선발학생의 비율	1)교육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저소득층 학생 중 장학금 수혜를 받는 비율	1)한국장학재단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국가장학금 지급현황 2)사회보장통계	1)6개월 2)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과도한 통학시간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수 및 비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금액 규모	1)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 대비 교원의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1년	구조	국가인권지수(2014)
		남성 대비 여성 대학 취학률	(대학교 재적 학생 수)/(고졸 직후 연령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여성가족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0(95),15(01); 사회권NGO보고서 428(09)
4.6. 문화적 권리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예술 관람률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매우 만족+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GDP대비 문화예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	1)기획재정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문화체육관광 예산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실질 가계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실질 여가문화비 사용 비중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여가문화비 대비 가계지출비중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및 등록사립 대학박물관/미술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장서(인쇄)수, 방문자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6.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학교 문화예술 수혜학교 비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웬·바이러스 피해 현황	국내 주요 백신업체가 개인이용자용 백신제품을 통해 확인한 웬·바이러스 탐지 건 수(2013년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해킹사고 신고 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해킹신고 가운데 국내소재 시스템의 해킹 피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1인 1일 스팸 수신량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하루에 수신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및 음성광고의 평균량 및 국내 이메일 이용자가 하루에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의 평균량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수신량 조사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건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의 불법복제물 유통량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자료 구축 필요	자료 구축 필요	비정기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32(09)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전통예술공연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다양성영화 점유율 현황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다양성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자국영화 점유율 현황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한국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자료 구축 필요	자료 구축 필요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4.7. 기업과 인권	4.7.1. 국가의 보호	공정거래 법률 준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횟수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18. 19. 20; ISO 26000 – 6.6.6절; GRI G3 HR 1.2
		지적재산권 분쟁	기간 내 지적재산권 분쟁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위반 건수	1년	결과	ISO 26000 – 6.6.7절; GRI G3 SO 8
		인권위 정책권고 및 수용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 및 수용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I. B. 26
		인권위 직권 및 방문조사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I. B. 26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3조; ISO 26000 – 6.4.7절
		휴일 연차보장	근로기준법의 휴일·연차보장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	매월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8~20; ESCR 제7조; ISO 26000 – 6.4.4.2절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7.2. 기업의 존중	근로자 재교육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여부	각 기업	연간 보고서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 ESCR 제13조 1항; ISO 26000 - 6.4.7절; GRI G3 LA10, 11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지수	1년	구조	ISO 26000 - 6.6.6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A. 14	
	하도급법 준수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18. 19. 20; ISO 26000 - 6.6.6절; GRI G3 HR 1.2	
	국제기준 준수	ISO26000, UNGC 가입 여부	ISO ,UNGC	ISO 26000, UNGC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A. 12; UNGC 10대 원칙 1항; ISO 26000 6.4.4.2절	
	지역민 채용	지역민 채용 규모 비율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결과	ISO 26000 - 6.8.5절; GRI G3 EC7	
	지역사회 기부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 ESCR 제13조 1항; ICCPR 제18조 4항; ISO 26000 - 6.8.9절	
	지역사회 투자	기간 내 지역사회 총 투자액 규모 비율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1년	결과	ISO 26000 - 6.8.7절; GRI G3 EC1	
	뇌물·부패 방지	뇌물·부패 방지프로그램 유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구조	ISO 26000 - 6.6.3절; GRI G3 SO1, SO4	
	업무관련 교육 이수	업무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교육 이수한 보안담당자 숫자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ICCPR 17조; ISO 26000 - 6.7.7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2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7.3. 구제		공정마케팅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산업자원부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1년	결과	ISO 26000 - 6.7.3절; GRI G3 PR 6,7;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21
		지속 가능 지수	지속 가능 지수의 가입여부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1년	구조	ISO 26000 - 6.7.5절
		노사민정 협의체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유무	고용노동부	노사 브라보	1년	구조	ISO 26000 - 6.8.3절; GRI G3 SO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A.13, B.22, III. B.29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기간 내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횟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1년	결과	ISO 26000 - 6.7.4절; GRI G3 PR2, 8.9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유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구조	UNGC 10대 원칙 10항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협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불순응 횟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II. B. 22, III. B. 29; ISO 26000 - 6.7.6절
		인권담당부서	기업 내 인권담당부서 유무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6; UNGC 10대 원칙 2항
		인권영향평가 실시	해외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100대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6; UNGC 10대 원칙 2항
		차별 방지	국가인권위 기간 내 차별권고 횟수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차별 권고	1년	결과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차별 상담	기업 내 고용 등 차별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세계인권선언 제23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8. 19. 20; ILO 제100호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차별 진정	기업 내 고용 등 차별행위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성희롱 진정	기업 내 성희롱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4.7.4. 환경보존 책임	환경 인증제 도입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A. 13; UNGC 10대 원칙 8항; ISO26000-6.5.6절
		오염측정	오염측정기록보고 유무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5조; ISO 26000 - 6.5.3절; GRI G3 EN 21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계층 유무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원칙 15
		탄소파트너십	탄소파트너십 성과 보고 유무	지식경제부	대중소탄소파트너십 사업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 UNGC 10대 원칙 9항; 기후변화협약 제4조; ISO 26000 - 6.5.5절; GRI G3 EN 3~7, 16~20
		관련 정책 홍보	지속가능개발 정책 홍보 유무	각 기업	기업별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과정	UNGC 10대 원칙 8항; ISO 26000 - 6.5.4절; GRI G3 EN 3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8. 환경권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도시공원면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소음 진동 민원건수	소음 진동 민원건수	환경부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환경보호지출액	환경보호지출액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자연보호지역 비율	국토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자연환경보호지역: 생태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유해인자 측정 및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집계	노동부	작업환경관리 현황	반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멸종위기 종 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행정구역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남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과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안전행정부자료	국가재난정보센터	비정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2014 인권통계

| 인쇄일 | 2015년 12월

| 발행일 | 2015년 12월

| 발행인 | 이 성 호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16번지)
우 04523

전화 / (02) 2125-9793

팩스 / (02) 2125-0913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제 작 | (주)삼일기획 (044) 866-3011

ISSN : 2288-5315

비매품